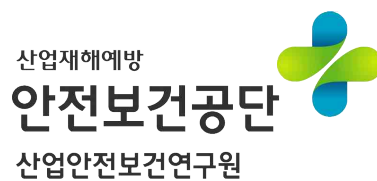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마련 연구

장성록 · 서용운 · 이종빈 · 강성식 · 정인재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년 11 월

연구기관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20.09.15 ~ 2020.11.30

연구책임자 : 장성록(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서용윤(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이종빈(부경대학교 방재연구소 전임연구원)

보조원 : 강성식(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과정)

보조원 : 정인재(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석사과정)

요 약 문

연구기간

2020년 9월 ~ 2020년 11월

핵심 단어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 시스템 개편

연구과제명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마련 연구

1. 연구필요성

- ☐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자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어렵고 산업재해율이 높음
-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및 서비스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음
- ☐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법규나 규칙,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
-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요구

2. 연구목적 및 내용

- ☐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특징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지원사업들의 실적 및 성과를 제고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에 대한 준수 및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및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시스템 개편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 방안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화
 - 사업자등록 시 안전보건활동 계획 포함
 - 사업주와 정부기관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긴밀한 연계
 - 중소기업 맞춤형 자료 제공 및 배포
 -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집중점검 및 처벌사례 전파
-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 기존사업 확대 및 개선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다양화, 공정/시스템 제품 위주 지원, 품목 자율화 및 유연화,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시설 보증사업
 - 신규사업 개발 : 기간산업(뿌리기업) 집중 지원, 단계적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도급-수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
 -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표준 정립
 - 행정, 운영, 홍보 상의 사업시스템 표준 개선
 - 기관역할 정의 및 조정, 협력 표준 정립
 - 안전보건수요통계조사를 통한 수요 중심 지원사업개발 표준 정립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장성록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장현 과장
 - ☎ 052) 7030. 849 (연구상대역 전화)
 - E-mail: jhpark@kosha.or.kr (연구상대역 이메일)

차 례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배경	1
2)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6
3.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8
4. 선행연구 검토결과	11
II. 중소기업 안전보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1. 중소기업 개념 및 시장현황	13
1) 중소기업 법적 정의 및 종류	13
2) 중소기업 시장현황	19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련 특성	22
3.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적용범위	25
4. 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44
1) 중소기업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44

2) 중소기업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49
5. 국내외 안전보건 지원 정책 사례	54
1) 한국	54
2) 미국	55
3) 영국	57
4) 독일	58
5) 일본	60
6. 현행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 정책 현황	64
1) 정부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 계획 및 활동	64
2) 경영계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 연구 및 제언	68
3)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 및 사업	72
7. 소결	133

III.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수준 조사 136

1. 설문조사 개요	136
2. 설문조사 방법	139
3. 설문조사 결과	140
1) 사업장 전체 분석	140
2) 사업장 규모별 비교분석	178
4. 소결	203
1)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	203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도 및 준수도	204
3)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의 성과	205

IV. 중소기업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7

1. 이해관계자 포럼 개요 및 방법	207
2. 포럼 주요 논의내용	210
1) 안전보건활동 노력 및 의지	210
2)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	211
3) 안전보건지원사업 경험 및 만족도	213
3. 소결	217

V.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제언 219

1. 중소기업 안전보건 실태 및 문제점	219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방안	221
1) 안전보건지원사업 강화 필요성	221
2)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방안	222
3)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방안	226
4)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방안	231
3.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제약사항	237
1)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율안전개선노력 의지 촉구	237
2) 자율안전활동을 위한 재정확보 및 투자계획 활성화	238
4.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정립	241
1) 노동자의 역할 정립	241

2) 사용자의 역할 정립	241
3) 정부의 역할 정립	242
5. 소결	244
 VI. 결론	 246
 참 고 문 헌	 249
 부 록	 251
 ABSTRACT	 262

표 차 례

〈표 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16
〈표 2-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7
〈표 2-3〉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	20
〈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법령	26
〈표 2-5〉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27
〈표 2-6〉 보건관리자 관련 법령	30
〈표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35
〈표 2-8〉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령	36
〈표 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7
〈표 2-10〉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	40
〈표 2-11〉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규 규제	43
〈표 2-12〉 전산업 규모별 재해자 수(2016-2018)	45
〈표 2-13〉 제조업 규모별 재해자 수(2016-2018)	46
〈표 2-14〉 전산업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2016-2018) ...	47
〈표 2-15〉 제조업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2016-2018) ...	48
〈표 2-16〉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 재원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및 투자율 ..	62
〈표 2-17〉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64
〈표 2-18〉 경총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표 2-19〉 안전보건지원사업 분류	73
〈표 2-20〉 클린사업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79
〈표 2-21〉 융자지원사업 지원 대상 품목	86

<표 2-22> 위험성평가 컨설팅의 기대 효과	94
<표 2-2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대상	96
<표 2-24> 등급관리혜택	97
<표 2-25> 위험기계기구 심사	99
<표 2-26> 유해위험기계기구 인증과 검사대상	101
<표 2-27>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 지도내용	107
<표 2-28> 클린사업 추진 실적	108
<표 2-29> 클린사업 연도별 주요 변경 내용	110
<표 2-30> 클린사업의 재해 감소 성과	111
<표 2-31> 클린사업 전체 사업장의 연도별 재해감소 효과	112
<표 2-32>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감소 효과(클린사업)	113
<표 2-33> 클린사업 지원 금액 중요도 및 만족도	114
<표 2-34> 클린사업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	118
<표 2-35> 클린사업 산업재해 예방 기여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	121
<표 2-36> 클린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124
<표 2-37>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 추이	125
<표 2-38> 용자사업 전체 사업장의 연도별 재해감소 효과	126
<표 2-39> 용자사업의 재해율 감소 성과	126
<표 2-40>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감소 효과(용자사업)	127
<표 2-41> 용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29
<표 2-42> 용자사업 지원 후 변화 - 산재예방기여	131
<표 2-43> 용자사업 지원 후 변화 - 산재예방 기여 효과	132
<표 3-1> 설문조사 항목 및 세부설문	136
<표 3-2> 설문방법	139
<표 4-1> 중소기업 안전보건 노사정-전문가 포럼 주요내용	208

<표 4-2> 노사정-전문가 포럼 개최 및 구성	209
<표 5-1> 중소기업 안전보건 실태 및 문제점 정리	219

그 립 차 례

[그림 1-1] 연구절차	10
[그림 2-1] 제조업 분야별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8)	50
[그림 2-2] 10인 미만 제조업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8)	52
[그림 2-3] 50인 미만 제조업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8)	53
[그림 3-1] 제조산업 종류	141
[그림 3-2] 제조산업 규모	142
[그림 3-3] 사업장 연간 매출액	143
[그림 3-4] 사업장 소속 지역	144
[그림 3-5]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의 중요성 인지 여부	145
[그림 3-6]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 이유	146
[그림 3-7] 안전보건을 위한 실행하고 있는 사항	148
[그림 3-8] 사업장 운영에 중요한 관리 항목	149
[그림 3-9]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영역	150
[그림 3-10]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여부	151
[그림 3-11]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	152
[그림 3-12]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시 이점	153
[그림 3-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하는 항목	154
[그림 3-14]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노력 여부	155
[그림 3-15]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이유	156
[그림 3-16] 산업안전보건법 전담부서 및 직원 유무	157
[그림 3-1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시 요구혜택	158
[그림 3-18]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시 처벌	159

[그림 3-19]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이해 및 경험	161
[그림 3-20]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 방법	162
[그림 3-21] 지원사업을 알았을 경우 신청 의향	163
[그림 3-22]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164
[그림 3-23]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신청 및 수혜 경험 유무	165
[그림 3-24]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혜 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66
[그림 3-25] 신청 및 수혜 만족도	167
[그림 3-26] 현장관리 및 재무적 측면에서의 도움 여부	168
[그림 3-27]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169
[그림 3-28]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170
[그림 3-29] 안전보건지원사업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172
[그림 3-30]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	173
[그림 3-31]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필요 사항	174
[그림 3-32] 재정지원 중 필요 사항	175
[그림 3-33] 지원 후 미비할 경우 후속 조치 수위	176
[그림 3-34] 지원 후 훌륭할 경우 인센티브 수위	177
[그림 3-35]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 이유	179
[그림 3-36] 사업장 주요 관리항목	180
[그림 3-37] 안전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관리항목	181
[그림 3-38]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	182
[그림 3-39] 산업안전보건법의 운영	183
[그림 3-4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 항목	184
[그림 3-41]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이유	185
[그림 3-42]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담 부서 및 담당 직원 여부	186
[그림 3-43] 사업주가 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지원 혜택	187

[그림 3-44]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따른 처벌 정도	188
[그림 3-45]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189
[그림 3-46]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지원 및 수혜 여부	190
[그림 3-47]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91
[그림 3-48]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92
[그림 3-49] 지원사업의 도움 정도	193
[그림 3-50]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과 지원형태	194
[그림 3-51] 지원사업의 방향	195
[그림 3-52] 안전보건지원사업의 필요 여부	196
[그림 3-53]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활동	197
[그림 3-54]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198
[그림 3-55]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중 필요 사항	199
[그림 3-56] 안전보건활동의 후속조치 수위 정도	200
[그림 3-57] 안전보건활동의 인센티브 수위 정도	201
[그림 5-1] 단계별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230
[그림 5-2]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문제점 및 강화방안	244
[그림 5-3]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안) - 기존사업 개선 및 확대	244
[그림 5-4]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안) - 신규사업	245
[그림 5-5]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안)	245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국내 중소기업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강화는 매년 정부 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오던 중소상공인 지원을 따로 분리해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으며, 과거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던 것을 현재(2015년 1월 1일 개정 이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규모와 [별표 3]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평균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업종별로 제한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1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약 380만개로 전체 산업의 약 99.9%를 차지해오고 있으며, 종사자 수 역시 1,588만 명 정도로 평균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경제주체²⁾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1) 추후 언급하겠지만, 현재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을 정의하다기 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로 고려하여 정의한다. 즉, 2015년 이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고려하며, 주요 연구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2)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

수립하며,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 및 고용정책에 비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도 주요사항으로 ① 서비스종사자, ②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방안, 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안, ④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20.4.27.)하였다시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강화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사노위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기획하여, 노·사단체 및 경사노위 등에서 참여 인원을 추천받고, 정기적인 노사정 포럼을 운영하여 정부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보건강화에 대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노·사·정 및 전문가 참여 TF 구성·운영,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규모 매년 확대에 대해 토의하고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서, 현장기술지원·재정지원·안전보건교육·관리시스템 제고 등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사업장 규모, 조직관리, 기술수준, 작업교육 등 재정과 인력수준 등의 한계로 인해, 사업장마다 다양한 원인으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전산업의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31.83%(2018년), 32.94%(2017년),

32.58%(2016년)으로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살펴보면 78.32%(2018년), 80.72%(2017년), 81.84%(2016년)로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 정도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2017, 2018, 2019). 국내 제조업만을 살펴봐도, 전산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1.52%(2018년), 21.83%(2017년), 22.62%(2016년)로 전체 산업재해의 약 20%를 차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72.13%(2018년), 74.61%(2017년), 76.44%(2016년)로 전체의 약 74%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2017, 2018, 2019). 전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산업재해율은 적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전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오히려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강화와 정부의 안전보건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특히 요구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다.

2) 연구필요성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어려워 대기업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보건 강화 지원 사업 수요 파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경영계의 현장 문제점(한국경영자총협회, 2014)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의 산업재해예방성과가 조사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및 서비스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 혹은 근로자가 필요

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기술 혹은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공급하고 있는 컨설팅 혹은 지원사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지원사업의 수요-공급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법규나 규칙,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소기업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이해도 및 준수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향상시키고 개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지원분야(조직, 규정, 안전보건조치 등)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안전수요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 성과 및 만족도,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현행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을 사업주와 현장에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경험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강화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현장 노력과 동기를 고취시켜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강화 지원사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특징에 따른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실수요를 조사하여 실제 중소기업이 원하는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노사정 협의체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에 의한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토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율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연구

필요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지원 및 산재예방정책의 특징 및 성과 조사를 통한 현행 지원사업 개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도·준수도 제고를 위한 법 기준 개선 적극 추진 필요
- 물량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효과성·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시스템 적극 개편 필요
-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 개선 및 고도화 필요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특징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지원사업들의 실적 및 성과를 제고하고, (2)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에 대한 준수 및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3)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및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시스템 개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 지원사업의 특징과 적정성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이나 기술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성과를 조사한다. 이는 현행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의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성과위주로 분석하여 제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도·준수도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강화지원 사업의 경험여부와 인지여부 등을 조사하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준수 정도를 파악하고, 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및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 노사정-전문가포럼과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산재예방정책 및 안전보건강화사업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 개선과 향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간소화, 홍보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에 앞서, 연구내용 대상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는 기존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특정 사업장을 가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고, 중소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먼저,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적용 적정성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분야의 조사를 병행하여 연구한다. 기존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의 산업재해예방성과분석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 등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한 적정사업을 탐색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외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유사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중소기업 관련자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하고 시급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항목을 분석하여 정리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규 이해도 및 준수도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조직, 규정, 교육, 안전 및 보건조치, 유해위험기구 및 물질, 재해보고, 범칙금 등) 이해도 및 준수도를 조사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경험유무, 만족도,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이 안전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지녔는지에 대해 인지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 제고와 전반적인 안전보건 강화지원 사업의 이해도 및 인지도, 경험 등을 파악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와 노력을 촉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현행 물량 중심의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도출하여, 현행 지원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적, 효과성 및 효율성을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포럼을 통해 직접 문의하고 현장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안전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 차이를 비교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대상산업·서비스범위·혜택 등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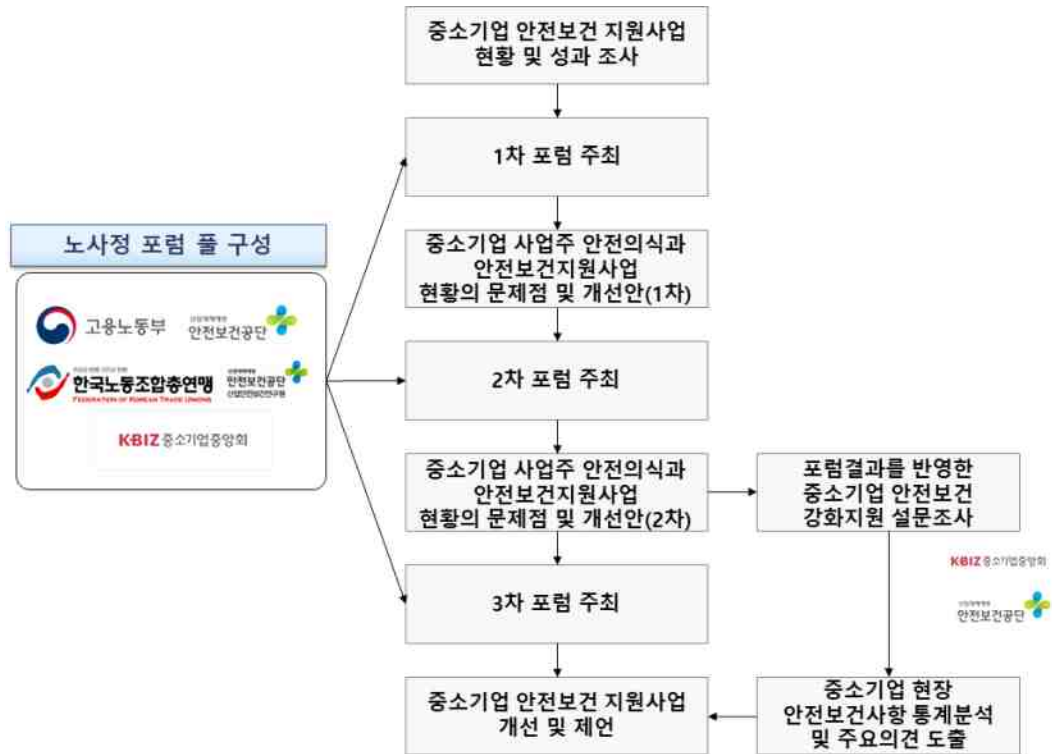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문헌조사·포럼·설문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과 실무적 접근을 동시에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및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고,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성과를 조사한다. 또한, 노사정 측에서 발간한 기존 안전보건지원사업 필요성, 안전보건 강화지원사업 효과 및 실적, 산업재해예방성과분석 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현황 및 추진성과 등을 조사하고, 국외 유사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정리하여 국내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3차에 걸친 노사정-전문가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규 인식과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장단점을 진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토의한다. 다수의 순차적인 포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섭외하고 토의한다. 또한, 포럼은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노사정(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사업주, 노동조합 및 학계 등)이 기초적인 내용공유와 시행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공유와 토의를 수행하도록 준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50인 미만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포럼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행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대한 장단점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견을 공유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포럼을 수행한다. 포럼은 하나의 집중집단면접(FGI: Focus-Group Interview)의 성격으로, 노사정-전문가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도출하도록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설문조사(중소기업 대상 30건 내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를 조사하고, 안전보건강화지원의 이해, 경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분석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리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강화 지원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또한, 현행 안전보건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혜택 또는 불만사항,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목소리(VOC: Voice of Customers)를 분석하여 안전 서비스 수요 항목까지 확장하여 설문을 수행한다.



[그림 1-1] 연구절차

4. 선행연구 검토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정책과 관련한 계획 및 성과평가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관련된 연구 또한 중소기업 산업재해 분석,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 목표와 당위성, 산업재해예방성과분석 등에 대한 기존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작성주체에 따라서 중소기업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연구원에서는 근로복지 및 고용(한국노동연구원, 2014)을 중심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기업운영과 사업주 및 근로자안전을 중심(한국경영자총협회, 2014)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에서는 안전보건지원사업 추진과 성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사고성재해예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평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6)도 이루어졌다. 또한, 경사노위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보고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에서는 2019년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에 대해 3차례 논의를 거쳐 경총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및 지원방안,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관련 산업예방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그리고 전문가들의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고성재해 예방사업 평가,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즉,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애로사항이나 안전보건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현행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현행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활동 노력이나 법규이해 및 준수 노력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조사한 연구와 이를 통해 현행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의 개편방향이나 개선안을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수요형으로 도출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에서부터 안전보건활동의 어려움이나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 신청이나 혜택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노사정-전문가가 함께 살펴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안전보건정책 사례와 지원사업 개요나 성과 등 현황을 기본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법규 이해도 및 준수도,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의 경험이나 애로사항, 필요한 지원사업발굴 등을 설문조사와 노사정-전문가 포럼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정부 주도의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이 아닌 안전보건강화에 대한 현장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VOC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련법규에 대한 관심과 준수노력을 확인하고, 현장 수요 중심으로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 안전보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중소기업 개념 및 시장현황

1) 중소기업 법적 정의 및 종류

중소기업 정의와 분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는 바, 과거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던 것을 “평균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업종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그 정의와 유형³⁾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으로 정의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1호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산총액이 고정조건이며, 평균매출액⁴⁾은 업종에 따라 변동되는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그 외에 타법에 의해 중소기업 유형이 정의된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3)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강소기업의 경우는 정책적 용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연구개발역량이 뛰어나거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로 중소기업벤처부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업종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의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⁵⁾을 중소기업으로 포함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서비스로는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앞서 말한 사회적기업의 요소를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한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앞서 말한 사회적기업의 요소를 갖춘 자도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5)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1호에 해당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21.4.21. 시행)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의해 중기업(中企業)과 소기업(小企業)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하여 [별표 1]을 통해 <표 2-1>과 같이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에서 1,500억 원 이하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령 제8조제1항 관련하여 [별표 3]은 <표 2-2>와 같이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에 대해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 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00억 원 이하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표 2-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 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 중소기업 시장현황

현재 중소기업 법적 정의에 따라 시장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표 2-3>과 같이 사업체 수는 2015년 약 360만 개소에서 2018년 약 380만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 역시 2015년 1,513만 명 정도에서 2018년 1,588만 명 정도로 70만 명이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비율은 전체 시장의 약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2015년 90.2%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89.7%로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으며, 고용안정에 있어서도 근로자 취업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다양한 재정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부처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 혹은 생산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표 2-3>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

전산업기준(1인이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수 (개)	전체	3,604,773	3,676,499	3,737,465	3,813,723
	중소기업 (비중,%)	3,600,882 (99.9)	3,672,327 (99.9)	3,732,997 (99.9)	3,809,011 (99.9)
	대기업(비중,%)	3,891(0.1)	4,172(0.1)	4,468(0.1)	4,712(0.1)
종사자수 (명)	전체	16,774,948	17,051,453	17,294,316	17,711,917
	중소기업 (비중,%)	15,127,047 (90.2)	15,392,246 (90.3)	15,527,605 (89.8)	15,882,760 (89.7)
	대기업(비중,%)	1,647,901(9.8)	1,659,207(9.7)	1,766,711(10.2)	1,829,157(10.3)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⁶⁾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기업 법적 정의가 개정과정에서 달라짐에 따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혜택 범위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러 법규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건설업 외는 여전히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역시 과거부터 여전히 근로자 수로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법적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도 언

6)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

급했지만, 현재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의는 과거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이면서,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먼저 주지한다.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련 특성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생산지원활동, 성공요인, 국제화 등과 관련해서 많은 국내외 연구(산업연구원, 2009; Suh and Kim, 2013; 최종민, 2018; 우지환, 김영준,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기술기획, 연구개발활동이나 시장개척, 국제화 등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역량을 평가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연구조사나 활동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나 평가 등만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4; 한국노동연구원, 20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학술적으로 중소기업의 태생적 차이부터 대기업과 비교하면서, 안전보건노력의 어려움이나 지원방향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정부,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대부분에서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필요성을 동의하고 정책개선(한국경영자총협회, 2014)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론이나 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고용노동부, 2020).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련 특성을 중소기업 자체의 차이에서부터 서술하고, 생산과 혁신활동과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적 특성

-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가 적어,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특징이 있음
- 특히,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을 가르치고 직접 일하는 도제식 작업 특징이 있음에도, 사업주는 오히려 산업재해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 있음
- 사업주도 근로자 작업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음

○ 생산활동 중심 운영에 따른 안전활동 미비

- 기업활동의 기본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절감·이익증대를 위한 활동이 대부분임(최종민, 2018; 우지환, 김영준, 2018)
- 비용절감 및 이익증대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장개척(국제화)에 많은 정부정책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의 역량을 올리고 있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민첩한 기술개발과 신속한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많은 투자예산을 책정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함(Suh and Kim, 2013)
-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요인을 같이 포함해 중소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연구는 미비함
- 비용절감 위주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 안전보건활동투자가 생산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복지활동예산 등도 적어 근로자 환경이 취약할 수 있음

○ 원청-하청/도급-수급 관계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어려움

- 보통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부품을 계약납품하거나 물량을 하청받는

계약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대기업 수요 및 일정에 따라 생산활동이 크게 좌우됨

- 도급-수급과 같이 한 사업장 내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이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있는 경우, 생산활동 대부분이 도급인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작업 및 일정관리가 어려워 무리한 작업으로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음
- 도급-수급 관계에서는 중소기업 수급인 역시 계약 근로자 입장이므로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여러 법규를 통한 도급인 안전관리가 도급인의 지원체계없이 안전관리지만 수급인에게 내려 업무가 미뤄지고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기업규모, 생산, 계약 등에 따라 경제이익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자율적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많은 안전관리지원정책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안전관리에 비용책정이 어렵고, 법정 안전보건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는 안전관리전담이 미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안전보건관리활동 지원을 통해 생산활동을 보완하면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원활동이 성숙화된 뒤 중소기업이 성장한 뒤, 중소기업 사업주가 정부를 통해 받았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목표를 지녀야 한다.

3.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법규들이 나뉘어져 있다. 그 종류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규모 별로 규제하고 있는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100-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규제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22조(산업보건의),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가 있다. 각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50인 이상에서만 선임 기준이 있으며,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는 5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장, 그 외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해당된다.

**<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u>50인 이상</u>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u>300인 이상</u>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u>100인 이상</u>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1항)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5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선임해야하고,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2인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외에, 농업, 임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선임하고,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5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2인 이상, 그 외 농업, 임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 그리고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2인 이상을 선임해야한다.

<표 2-5>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u>50인 이상</u> <u>500인 미만</u>	1인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상시 근로자 <u>500인 이상</u>	2인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제9호 및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 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 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산업 안전산업기사의 자 격을 취득한 사람 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 의 사업을 제외한 제 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 기조절 공급업(발전업 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 21호에 해당하는 사 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u>50인 이상</u> <u>1,000인 미만</u> . 다만, 제34 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 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 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 에는 상시 근로자 <u>100인</u> <u>이상 1,000인 미만</u> 으로 한 다.	1인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제 26호·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 까지의 사업의 경 우 별표 4 제3호에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 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 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 관리, 조리 등 현업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람으로 한정하 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 등·중등·고등 교육 기관, 특수학교·외국 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람으 로 한정한다)	상시 근로자 <u>1,000인 이상</u>	2인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별표 4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이 1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광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 제조업 등 대부분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1인 이상,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인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 해당 되지 않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인 이상,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인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농업, 임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인 이상, 5,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인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보건의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을 살펴보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표 2-6>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표 2-6>에 따른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표 2-6> 보건관리자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상시근로자 <u>50인 이상</u> <u>500인 미만</u>	1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상시근로자 <u>500인 이상</u> <u>2,000인 미만</u>	2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상시근로자 <u>2,000인 이상</u>	2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근로자 <u>50인</u> 이상 <u>1,000인</u> 미만	1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u>1,000인</u> 이상 <u>3,000인</u> 미만	2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u>3,000인</u> 이상	2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u>50인 이상 5,000인 미만</u> . 다만,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u>100인 이상 5,000인 미만</u> 으로 한다.	1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	상시 근로자 <u>5,000인 이상</u>	2인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리, 조리 등 현업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 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제21호에 해 당하는 사업은 제 외한다) 43. 세탁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그 외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 2-7>에 명시되어있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그 외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표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u>50인 이상</u>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상시근로자 <u>300인 이상</u>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살펴보면,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사업들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표 2-8>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u>300인 이상</u>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u>100인 이상</u>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표 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상시 근로자 수 50-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0-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22조(산업보건의),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9조(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가 있다.

3) 상시 근로자 수 20-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20-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29조(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7조(유해요인조사)가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1인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4) 상시 근로자 수 5-2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29조(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유해요인 조사)가 있다.

5)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29조(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가 있다. 규제를 가하는 법규 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 체제),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9조(도급의 승인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과 50인 미만의 어업, 농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의 기업규모에 따라 건설업 외 중소기업(300인 미만)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항)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u>50인 미만</u> 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2. 상시 근로자 <u>5인 미만</u> 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중소기업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법규 정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에 따라 5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30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직구성으로 넘어가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농업, 임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부터 선임하게 되어있으므로 <표2-11>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조업의 경우, <표 2-4>의 제1호부터 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부터 선임하고, 그 외 제조업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부터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리감독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3) 안전관리자는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부터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 임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부터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4) 보건관리자는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부터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 임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부터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6)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위탁검사 및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산업보건원은 5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준수는 농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표 2-8>의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들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부터 수립 및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의 기업규모에 따라 건설업 외 중소기업(300인 미만) 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11>과 같다.

<표 2-11>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규 규제

법규 \ 규모	5인 미만	5-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제14조)	X	X	X	X	X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X	X	X	○ (제조업)	○ (제조업)
관리감독자(제16조)	X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안전관리자(제17조)	X	X	X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보건관리자(제18조)	X	X	X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X	X	○ (제조업)	X	X
안전관리전문기관(제21조)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산업보건의(제22조)	X	X	X	○ (제조업)	○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X	X	X	○ (제조업)	○ (제조업)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X	X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제29조)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작업환경측정(제125조)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 (제조업)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제39조)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 (제조업, 서비스업)

4. 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1) 중소기업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창출과 안정에 큰 역할을 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강화는 매년 정부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사업장 규모, 자본, 조직관리, 기술수준, 작업교육 등 재정과 인력수준 등의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표 2-12>의 전체 산업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자 수가 많아짐을 살펴볼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전체 산업재해의 31.83%(2018년), 32.94%(2017년), 32.58%(2016년)로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다.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78.32%(2018년), 80.72%(2017년), 81.84%(2016년)로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중소기업의 법적 기준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약 90% 정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함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12> 전산업 규모별 재해자 수(2016-2018)

년도	총계	5인 미만	5-9	10-19	2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2018	102,305	32,568	15,992	15,196	8,151	8,215	7,116	7,217	2,317	2,183	3,350
	비율	31.83%	15.63%	14.85%	7.97%	8.03%	6.96%	7.05%	2.26%	2.13%	3.27%
2017	89,848	29,597	15,037	13,555	7,043	7,294	6,066	5,408	1,624	1,521	2,703
	비율	32.94%	16.74%	15.09%	7.84%	8.12%	6.75%	6.02%	1.81%	1.69%	3.01%
2016	90,656	29,540	15,685	13,884	7,432	7,653	6,249	5,160	1,433	1,218	2,402
	비율	32.58%	17.30%	15.32%	8.20%	8.44%	6.89%	5.69%	1.58%	1.34%	2.65%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7, 2018, 2019)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전산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을 <표 2-13>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21.52%(2018년), 21.83%(2017년), 22.62%(2016년)로 전체 산업재해의 약 20%를 차지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72.13%(2018년), 74.61%(2017년), 76.44%(2016년)로 전체의 약 74%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전산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산업재해 비율은 적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전산업에 비해 오히려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3> 제조업 규모별 재해자 수(2016-2018)

년도	총계	5인 미만	5-9	10-19	2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2018	27,377	5,892	4,471	4,421	2,338	2,625	2,368	2,203	477	312	2,270
	비율	21.52%	16.33%	16.15%	8.54%	9.59%	8.65%	8.05%	1.74%	1.14%	8.29%
2017	25,333	5,529	4,364	4,283	2,244	2,482	2,042	1,714	367	222	2,086
	비율	21.83%	17.23%	16.91%	8.86%	9.80%	8.06%	6.77%	1.45%	0.88%	8.23%
2016	26,142	5,914	4,595	4,538	2,513	2,423	2,075	1,754	318	213	1,799
	비율	22.62%	17.58%	17.36%	9.61%	9.27%	7.94%	6.71%	1.22%	0.81%	6.88%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7, 2018, 2019)

산업재해의 업무상 위험성을 더 살펴보기 위해, <표 2-14>과 같이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을 조사하면 2016년에서 2018년 전산업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6년 : 0.53, 2017년 : 0.52, 2018년 : 0.51)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모두 2배 이상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6년 : 1.1, 2017년 : 1.04, 2018년 : 1.06)을 기록하고 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라가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크게 감소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14> 전산업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2016-2018)

년도	내용	총계	5인 미만	5-9	10-19	2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2018	사망자 수(명)	971	322	137	126	81	79	53	104	25	21	23
	업무상 사고 만인율 (‰)	0.51	1.06	0.56	0.49	0.53	0.44	0.27	0.41	0.29	0.25	0.15
2017	사망자 수(명)	964	292	148	156	66	74	77	85	22	25	19
	업무상 사고 만인율 (‰)	0.52	1.04	0.63	0.64	0.44	0.42	0.4	0.34	0.25	0.3	0.12
2016	사망자 수(명)	969	301	125	127	72	80	95	97	21	30	21
	업무상 사고 만인율 (‰)	0.53	1.1	0.54	0.53	0.49	0.46	0.5	0.39	0.24	0.35	0.13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7, 2018, 2019)

그러나 제조업만으로 한정하여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을 조사해보면 <표 2-15>과 같이 전산업에서 비교한 것보다 격차가 더 커짐을 볼 수 있다. 2016년에서 2018년 제조업 전체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6년 : 0.55, 2017년 : 0.5, 2018년 : 0.52)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배 이상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6년 : 1.26, 2017년 : 1.03, 2018년 : 0.99)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라가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여전히 전체 제조업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체 제조업 업무

상사고 사망만인율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재해의 위험도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규 준수 지원과 안전보건강화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2-15> 제조업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2016-2018)

년도	내용	총계	5인 미만	5-9	10-19	2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2018	사망자 수(명)	217	40	35	33	23	24	13	28	5	10	6
	업무상 사고 만인율 (‰)	0.52	0.99	0.79	0.61	0.65	0.53	0.24	0.46	0.31	0.79	0.11
2017	사망자 수(명)	209	40	32	48	12	23	28	14	4	3	5
	업무상 사고 만인율 (‰)	0.5	1.03	0.71	0.91	0.34	0.51	0.53	0.23	0.25	0.23	0.09
2016	사망자 수(명)	232	48	30	39	21	25	23	25	5	6	10
	업무상 사고 만인율 (‰)	0.55	1.26	0.65	0.72	0.59	0.54	0.43	0.4	0.32	0.43	0.18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7, 2018, 2019)

우선,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5인 미만과 20인 미만, 50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라 많은 법규에 제외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임

- 5~20인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는 물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선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사업주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안전보건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20~49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나 이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관심과 노력이 적고, 산업재해를 많이 일으키게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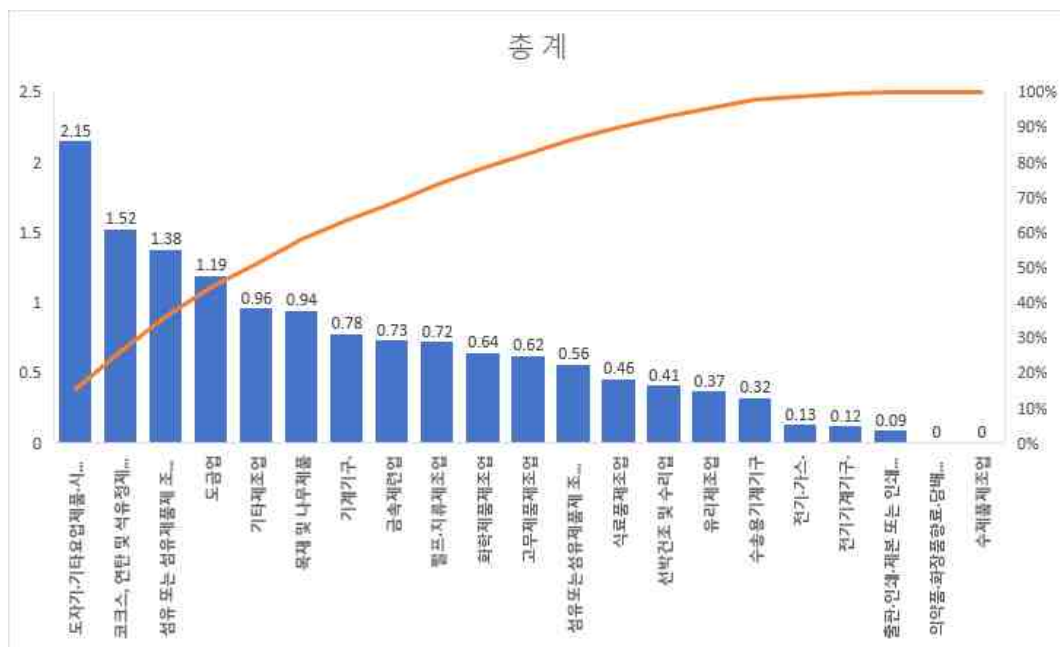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작은 규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생산활동에도 애로사항이 많아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도 안전보건 관련 법규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안전보건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무시하지 못하며,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중소기업은 다양한 산업에 산재함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은

산업특성에 따라 거대설비산업, 기술중심산업, 뿌리산업과 같이 설비의 규모, 기술수준, 인력 노하우 및 스킬, 작업경험 등에 따라 생산활동이나 안전보건활동이 차별화된다. 특히, 조선업이나 화학업종 등 위험성이 높은 산업에 하도급 수준의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생산활동과 함께 안전보건 지원사원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제조산업별 전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을 [그림 2-1]와 같이 살펴보면 도자기·기타요업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도금업 등 화학업종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높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도자기·기타요업제품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15)은 2018년 전체 제조업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0.52)의 4배보다 높은 수치이다.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9)

[그림 2-1] 제조업 분야별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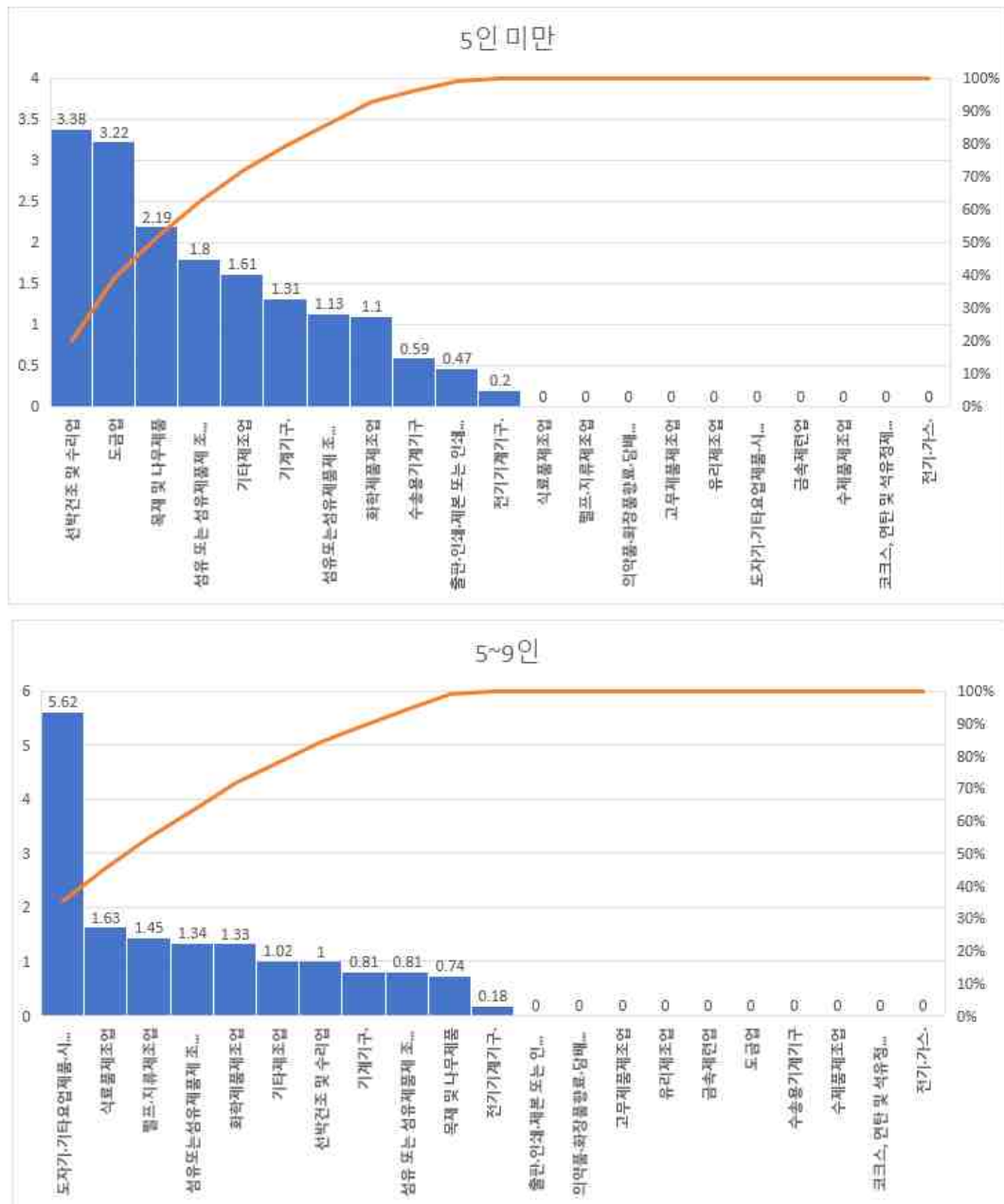
그러나 전체 제조업 외 중소기업 단위로 나누어보면, 산업재해현황의 경향이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2-2]와 [그림 2-3]에 따라 5인 미만, 5~9인 이하, 10~19인 이하, 20~29인 이하, 30~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높은 상위 3개 산업은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 5인 미만 : 선박건조 및 수리업(3.38), 도금업(3.22),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2.19)
- 5인~9인 이하 : 도자기·기타요업제품(5.62), 식료품제조업(1.63), 펄프,지류제조업(1.45)
- 10인~19인 이하 : 금속제련업(19.8),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10.9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2.04)
- 20인~29인 이하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10.27), 도자기·기타요업제품(4.77), 전기가스수도업(3.41)
- 30인~49인 이하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1.84),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1), 고무제품제조업(1.38)

도자기·기타요업제품이나 금속제련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 등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대부분의 규모에 대해서 높게 도출됨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화학원료 또는 고열을 사용하는 뿌리기업 업종⁷⁾으로 그 위험성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⁸⁾. 이는 근로자 수가 많음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나 절대적인 안전성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산업도 같이 안전보건지원강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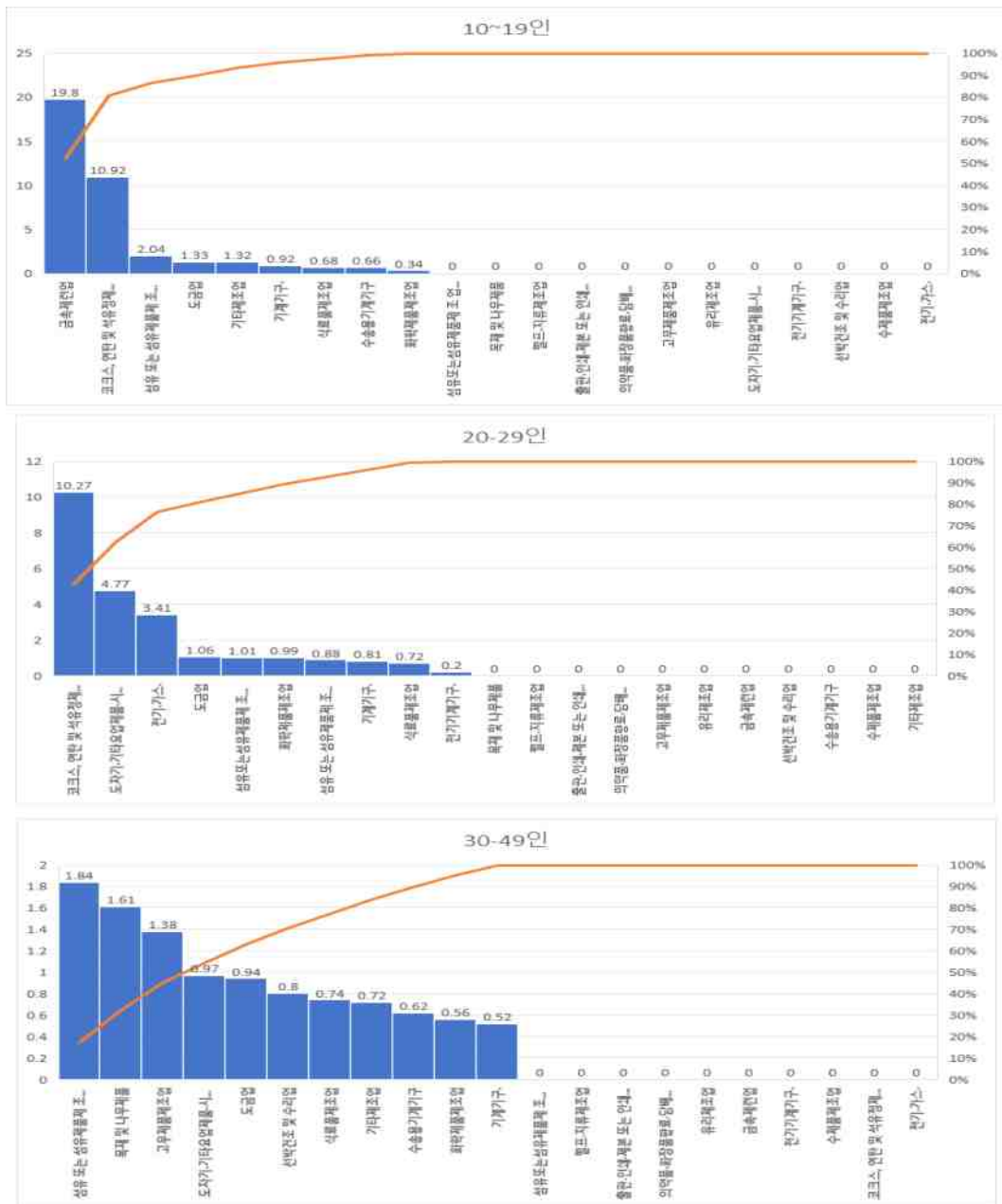
7) 기간산업에 포함된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의 제조업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8)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5인 미만 18명, 5~9인 12명, 10~19인 15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많이 도출되었다.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9)

[그림 2-2] 10인 미만 제조업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8)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안전보건공단, 2019)

[그림 2-3] 50인 미만 제조업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2018)

5. 국내외 안전보건 지원 정책 사례⁹⁾

1) 한국

(1)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와 재원 방식

한국의 산재예방투자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와 산재보험법 제96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각각 일반회계와 산재보험기금회계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고 있다. 산재예방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산재예방투자율은 고정율로 산재보험 세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이다.

(2) 산재예방관리 운영체계

한국 산재예방사업은 정부(고용노동부)에 의해 산재 예방, 보상 및 재활관련 사업을 중앙 집중관리 하되, 산재예방 차원의 산업안전보건과 산재발생 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산재사망자·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사업의 주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나뉘어져 있다(산재예방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정부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 의한 주요 사업은 안전보건책임 명확화,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에 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산업보건사업, 안전·건설·서

9) 한국지식경영연구원(2010) 및 한국사회정책연구원(2016)의 자료 중 국내외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비스·분야 사업, 교육·홍보 분야 사업이다.

(3) 산재예방사업 중점 사항 및 예산 배분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서 혁신 목표를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으로 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2013년 0.71에서 2019년 0.3대로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① 안전보건 주체별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② 인프라 확충과 대응능력 보강을 통한 안전보건정책 역량 강화, ③ 교육 강화와 인식제고를 통한 실천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의 세 가지이다.

혁신 필요성으로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 부족한 안전보건 역량, 취약한 안전보건 인프라를 들고 있다. 지향하는 방향은 안전보건정책의 현실적합성 제고, 안전보건 참여 확대와 책임의 명확화,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과 문화 정착의 네 가지이다.

2) 미국

(1)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와 재원 방식

미국의 산재예방투자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OSHA Act)에 근거하고 있다. 재원방식은 연방 산업안전관리국(U.S. OSHS)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별 일반회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일정 규모의 기금으로 재원이 조성된다.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이며, 주 단위 산재보험의 경우, 그리고 일부 주의 경우는 보험사에서도 산재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산재예방투자율의 고정율은 없으며 2013년 연방노동성 전체 예산의 4.3%를 투자하였다.

(2) 산재예방관리 운영체계

미국의 재해예방 관리운영주체는 연방정부 산업안전보건국과 주 단위 산업안전관리국으로 볼 수 있다. 23개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주 단위 산업안전관리국에서 독자적으로 산재예방프로그램 관리 및 작업장 안전수준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29개 주는 연방 산업안전보건국의 감독과 협력지원 하에 주 단위 산업안전관리국에서 사업장의 관리 감독 및 자문지원 사업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3) 산재예방사업 중점 사항 및 예산 배분

미국 연방 OSHA의 사명은 훈련제공, 현장지도, 교육 및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작업장 재해, 질병 및 사망을 줄임으로서 작업장 안전을 향상, 작업장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근로자와 고용주의 문제의식을 함양, 산업안전보건관리국의 다양한 사업을 개발 등의 3대 전략목표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 OSHA의 주요 안전예방 사업은 크게 감독, 교육, 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감독 사업과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예방협력사업을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작업장 안전예방 협의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OSHA사업의 예반 배분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감독사업은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문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방 OSHA는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기준집행, 산업안전보건기준, 내부고발 보장 및 집행,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지원 및 현장지도 등 네 가지의 포괄적인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연방 OSHA의 안전기금은 비영리 기관에 대해 훈련, 교육 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 미연방 각 주에 대한

각 주 단위의 안전프로그램 관리감독 및 강화 지원, 미연방 각 주에 대한 각 주 단위의 안전보건 기술 지원 및 자문 컨설팅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융자금의 성격은 띄고 있지 않다. 연방 OSHA는 안전관리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3개주에서 독자적으로 산업안전예방 프로그램 관리 및 작업장 안전수준의 지도 감독을 주 단위의 산업안전관리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영국

(1)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와 재원 방식

영국의 산재예방투자 법적근거는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근거하고 있다. 재원방식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HSC 및 HSE에 예산을 배정하고, 예방사업의 주체는 HSE와 353개의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산재예방투자 관련하여 별도의 투자율 규정은 없으며, 2013,2014년 정부 총지출의 0.31%를 투자하였다.

(2) 산재예방관리 운영체계

영국 HSE의 정책 집중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우선 과제
- ② 고위험 작업장 및 위험 통제가 어려운 작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 가이드 개발
- ④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 ⑤ 산업안전보건규정의 단순화 및 용이성 확보
- ⑥ 영국 산업을 위한 유럽연합과 협력
- ⑦ 농약, 세제,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⑧ 작업관련성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조사

⑨ 중대위험 작업자와 사업주에 대한 규정

⑩ 위험물질과 사용에 대한 지원

4) 독일

(1)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와 재원 방식

독일의 산재예방투자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과 사회법전 제7권(SGB VII, 산재보험법)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원방식은, 정부기관은 정부 예산에서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예방예산은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 이사회에서 작성, 대표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조달한다. 산재예방사업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사업장 지도·감독과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산재예방사업이다. 산재예방투자율은 고정율은 없었으나 2013년 연간 산재보험 지출총액의 7.7% 정도를 투자하였다.

(2) 산재예방관리 운영체계

독일 산재예방사업은 정부(연방정부, 주정부)와 산재보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원화 체계이다. 정부는 법령의 제정 및 이행의 감독, 사업장 감독·자문을 한다. 산재보험은 산업부문, 공공부문, 농업부문으로 구분되어 각각 조합별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체계이다. 예방, 재활, 보상이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 운영된다. 주요 산재예방 사업은 ① 산재예방 규정(UVV)의 발간, ② 사업장 감독·자문, ③ 교육훈련, ④ 산재예방 관련 연맹/협회 지원, ⑤ 산업의서비스기관 운영, 안전공학서비스기관 운영, ⑥ 검사·인증, ⑦ 응급처리요원 교육 등이다.

(3) 산재예방사업 중점 사항 및 예산 배분

독일 정부와 산재보험 공동의 제1차 독일의 공동산업안전보건정책 (2008-2012)의 계획단계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 3자는 노동에 있어서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초로 3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3가지의 산업안전보건 목표와 수행분야를 합의하였다.

- ① 산업재해 빈도와 강도의 감소
- ② 근골격계 부담 및 질환의 감소
- ③ 피부질환의 빈도와 강도의 감소

이와 같은 산업안전 목표들과 수행분야들로부터 11개의 작업프로그램이 있다.

- ① 건설작업 및 건설 조립작업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 ② 파전근로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 ③ 안전한 운행과 운반 (사업장내 및 공공부문)
- ④ 간호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보호
- ⑤ 사무실에서의 건강과 성공적 작업
- ⑥ 습기 하에서의 작업 및 피부손상물질을 사용하는 업무에서 건강보호
- ⑦ 학교 내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주제에 대한 민감화
- ⑧ 정밀기계 조립업무 분야에서 일방적인 부하업무 및 신체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생산작업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 ⑨ 식료품산업에서 일방적인 부하업무 및 신체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생산작업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 ⑩ 음식숙박업에서 일방적인 부하업무 및 신체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생산작업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 ⑪ 단거리 공공교통업(철도 및 전철) 분야 승객운송에서 일방적인 부하업

무 및 신체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생산작업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보호

제2차 독일의 공동산업안전보건정책(2013-2018)의 계획단계에 연방정부, 주정부,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 3자는 2011년 8월 30일 국가산업안전보건회의(NAK : National Arbeitsschutzkonferenz)의 결의에 의거하여 산재예방활동들을 요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산업안전보건목표의 실행방향을 제시하였다.

-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개선
- ② 근골격계 분야에서 노동에 기인한 건강위험성 및 질환 감소
- ③ 노동에 기인한 심리적 부담 방지 및 건강 강화

5) 일본

(1)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와 재원 방식

일본의 산재예방투자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재원방식은 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노동보험 산재보험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산재예방비용은 거의 노동보험 산재보험계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산업예방사업의 주체는 정부로, 주무관청은 후생노동성이다. 산재예방투자율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2015년 산재보험계정 전체 예산의 3.37%를 산재예방 목적으로 계상하였다.

(2) 산재예방관리 운영체계

일본의 산업예방사업은 정부(후생노동성)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주무관청인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법에 근거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29조는 정부로 하여금 근로자의 재해방지에 관한 사업을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근로자건강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건강복지기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건강복지기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단체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산재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방지단체법은 정부가 노동보험 특별회계의 산재계정으로부터 이들 단체가 행하는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산재예방 중점 사항 및 예산 배분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5년마다 수립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산업재해예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 시책 별 세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15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면, 산업재해방지대책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모두 제12차 산업재해방지계획의 6대 중점 시책 및 시책별 세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들이다. 6대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발생 상황의 변화에 맞춘 대책의 중점화
- ② 행정, 산업재해방지단체, 업계 단체 등의 연계·협동에 의한 산업재해방지
- ③ 사회, 기업, 근로자의 안전·건강에 대한 의식 개혁의 촉진
- ④ 과학적 근거, 국제적 동향에 기반한 시책 추진
- ⑤ 발주자, 제조자, 시설 등의 관리자에 관한 대응 강화
- ⑥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응

<표 2-16> 산재예방투자의 법적 근거, 재원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및 투자율

국 가	법적근거, 재원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산재예방 투자율
한 국	1.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에 의거하여 정부(고용노동부)는 산업 재해예방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짐. ● 산재보험법 제96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제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2. 재원방식 : ● 일반회계, ● 기금회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 3. 예방사업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6조(업무의 위탁)에 의한 산업안전공단. 4. 산재예방투자율 : 제96조 제2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독 일	1.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에 의거하여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명령 제정권, 감독권 ●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2편(예방, 제14조~제25조)에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2. 재원방식 : 연간 예산계획은 산재보험조합의 이사회에서 작성, 대표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함. 3. 예방사업의 주체 : 산재보험조합, 연방정부, 주정부 4. 산재예방투자율 :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연간 총예산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명시된 규정은 없음. 2013년의 경우 산재보험 세출예산의 7.7%를 투자하였음.
미 국	1.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1970.12.29. 제정) 2. 재원방식 : 미국 연방 산업안전관리국(U.S. OSHA)의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별 일반회계(general account)를 통해 관리되는 일정 규모의 기금(dedicated fund)으로 재원이 조성됨. 3. 예방사업의 주체 : 연방정부, 주정부(주 단위의 산재보험의 경우 텍사스 등, 일부 주의 경우는 사기업 부문 보험사) 4. 산재예방투자율 :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연간 총예산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명시된 규정은 없음. 2013년의 경우 연방 노동성 전체 예산의 4.5%를 투자하였음. (노동성 예산은 전체 미연방 예산의 4.2%임)
일 본	1.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국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과 자문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 국가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29조는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산재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재원방식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노동보험 산재보험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산재예방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보험 산재보험계정으로부터 충당되고 있음.

	3. 예방사업의 주체 : 국가 4. 산재예방투자율 : 노동보험 특별회계 중 산재보험계정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연간 총 예산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2015년 산재보험계정의 전체 세출에서 산재예방목적으로 계상된 액수의 비율은 1.9%임.
영 국	1. 법적근거 : 작업장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계법 일원화된 행정체계 2. 재원방식 : 중앙정부 예산으로 HSC 및 HSE에 예산을 배정 3. 예방사업의 주체 : HSE와 353개의 지방정부에서 수행 4. 산재예방투자 : 별도 투자율규정은 없으며, 2013년,2014년 정부 총 지출의 0.31% 투자)

6. 현행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 정책 현황

1) 정부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 계획 및 활동

(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주요 목표로 잡고 <표 2-17>와 같은 계획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클린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망사고에 효과적인 재정지원 품목을 개발하고 사업장 선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산재예방기관 기술지원 역시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정부에서는 사망재해와 같은 중대재해를 먼저 감소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재예방요율제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 재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표 2-17>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세부목표 및 사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 클린사업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개편
	· 사망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 개발
	· 재정지원 사업장 선정 방식 개편 및 우선 지원
	· 능동소음제거 귀마개 등 개발
	· 민간 산재예방기관 기술지원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개선
	·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및 금액 상향
	·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설치

세부적인 정책계획을 살펴보면,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안전보건 관리지원, 근로자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각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틀 아래에서 혜택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유해·위험요인 개선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시설지원(클린사업)을 사망사고 다발 고위험업종 사고 예방 및 방호장치 지원으로 사업방식 개편(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우선 선정 및 지원비율 확대)
 - 사망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 지속 개발
 - * 일체형 작업 발판, 추락 방지 매트,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발판 등 개발·지원 등
- 지원사업 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하여 지도·점검(지방노동관서) 및 기술지원(안전공단) 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우선 지원
 - * 사업장 지도·점검(기술지도) 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투자계획, 자금심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지원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보호구(능동소음제거 귀마개 등) 개발

□ 안전보건관리 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교육할인 기간 확대*(1년 → 3년) 및 산재예방계획 이행여부 점검
 - * 現) 사업주 산재예방교육 이수 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할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3년으로 확대 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강화

- ① 300인 이상 : 외부 위탁 제한, 직접 채용토록 개편(기특법 개정)
 - ② 50~300인 : 직접 채용 시 지원 방안 강구
 - ③ 50인 미만 : 고위험제조사업장 집중 지원(年 2~3회 → 年 12회* 등)
- * 민간위탁 산재예방기관 기술지도 지원을 年 2~3회에서 월 1회로 확대

□ 근로자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 확대

* (예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특수건강진단 출장검진 비용 지원 등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청와대 위원회 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노사정-공익위원이 모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강화 방안 토론으로는 경영계 대표로 경총, 정부 대표로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경총에서는 안전관리 체제 및 지원 강화(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 시 하청업체 역할 명확화, KOSHA-MS 인증 취득 지원),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확대(세재혜택, 안전체험교육), 중소기업 산재예방정책 개선을 토의(2019.3.28.)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산재예방사업 현황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대해 발제(2019.4.11.)하고, 전문가 위원에서는 사고성재해예방사업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기관 전문성 제고(2019.5.15.)와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9.5.15.)에 대해 기술지원,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자율안전관리활동·기법 개발 등을 발제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4월, (1)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강화 방안,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3)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안, (4)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의하였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中 (2020.4.27.)>

-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정부는 위험성평가·감독·교육 등에 대해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법규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도·준수도 제고를 위한 법 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물량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시스템을 적극 개편한다.
-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산재예방정책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노·사·정·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 정부는 2006년과 2008년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2) 경영계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 연구 및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2014)는 산업안전규제가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목하고, 다음과 같이 크게 8가지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노사정이 서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각각의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 ① 현장중심적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과도한 규제 및 처벌제도, 부처간 칸막이 규제해소, 장기적 예방의무 제도의 실효성(효과 및 비용 등) 확보, 업종별 안전보건법령 체계 마련),
- ② 사업장 관리감독 집행방식의 합리화,
- ③ 산재예방 주체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 ④ 산재예방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취약, 소규모사업장 중심의 예방정책 추진, 공단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 ⑤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 ⑥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 ⑦ 산재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
- ⑧ 기타 예방정책 개선

이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④ 산재예방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취약, 소규모사업장 중심의 예방정책 추진, 공단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의 사항은 현재 연구목적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등 생산에 바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행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와의 긴밀한 협

의와 효과적인 계획을 통해 실질적이고 즉시 효력이 있을 만한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표 2-18> 경충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분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현장중심적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반복규제의 신설로 인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의 숫자가 방대해지고, 처벌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관련기업들이 법령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업종의 특성 등 다양성을 고려치 않고 전산업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일반제조 업종과는 상이한 조선 및 건설업 등 비정형화 작업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포함하지 못함	-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규제의 현장작동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작업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는 업종별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해야 함
사업장 관리감독 집행방식의 합리화	- 현행 직업병 관련 감독기준은 현재시점의 작업환경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직업병 산재승인자 또는 유소견자 건수를 토대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작업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규적용이 필요하나, 안전보건기준의 내용을 원칙대로만 적용하고 있어, 법고 준수를 둘러싼 논란이 많음	- 직업병 발생 사유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병 예방 법규 위반에 한정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감독실시의 선정기준을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업종, 작업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주관적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산재예방 주체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현재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0.32% 수준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관심이 낮은 실정이며,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예산 규모를 확대키로 한 만큼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보험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3%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함

분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산재예방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여건 취약,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산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황.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수는 전체재해의 81.5%를 차지하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정책 마련, 산재예방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는 등 예방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 예방정책의 대부분이 사업주 의무에 중심을 두었으나, 향후 정부의 안전규제 입법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안전의식 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업주 의무를 신설·강화하거나, 정부 및 공단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매몰되어 있음	-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함 - 근로자 안전의식수준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의 전개 필요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 산업전반에 안전경영문화가 확산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최고경영자의 인식전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안전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됨	-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안전경영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인센티브 정책 개발
산재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	- 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체험교육은 건설업 중심으로 교육시설이 갖춰져있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맞춤형 체험교육이 필요 - 대립적 노사관계 틀에서 탈피하여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노사가 적극 협력해야함	- 교육장 추가설치에 필요한 자원마련, 기존 교육장의 실효성 제고, 민간교육장 활용방안 강구 등 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안전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활동과 안전문화 정착을 적극 노력 중인 기업에 대한 정부 및 공단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필요

3)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 및 사업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와 성과 분석은 내외부적으로 과거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한국노동연구원, 2014;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한국노동연구원(2014)에서는 안전보건지원사업 중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작업환경개선과 산재감소 등이 고용의 질 향상 등에 미친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재해예방 성과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공단의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사업실적 및 성과를 다시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도출한다.

(1) 사업개요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은 재정지원사업과 기술지원사업으로 <표 2-19>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사업, 민간 위탁사업(안전분야, 보건분야, 건설분야, 화학분야, 서비스분야)과 같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기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개선 및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컨설팅사업과 같이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험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등이 있다.

<표 2-19> 안전보건지원사업 분류

분류	명칭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통해 사고 빈도와 강도를 추정·결정	건설공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150억 원 미만의 토목공사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산재보험료 절감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정부규제 완화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경감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모기업 주도로 협력업체와 함께 위험성평가 및 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	전 업종 50인 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현장 기술지도 프로그램 추진실적 확인 확인 기술지도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정부포상 우대 KOSHA18001 및 KOSHA-MS 사후 연장심사비 감면, 컨설팅비용 지원, 실태심사비 면제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분류	명칭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업무별 기술지도 및 패트룰, 업무별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조선업체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패트룰 안전보건 파트너십 강화 밀폐공간 작업 안전체계 구축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사업장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화학사고 사업장 ② 30년 이상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③ PSM 대상 적용물질 규정수량 10% 이상 사업 ④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업종 사업장 ⑤ 기타 사업수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대상 사업장 선정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중심의 기술지도	

분류	명칭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위험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2년마다)	
재정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	○ 클린사업장인정(제조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9년~' 20년 -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 사업장(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품목 안전상의 조치 지원설비품목 작업환경개선 지원설비품목 작업공정개선 지원설비품목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분류	명칭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 원도급업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2개 -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1.5%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민간위탁사업 : 안전분야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사고사망 재해예방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원인 및 대책 제시, 사고성 재해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	

분류	명칭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민간위탁사업 :보건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 보건관리 기술지원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 교육지원과 위험성평가 인정참여 유도 - 사업장 업무상질병 등 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작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건설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기술지원을 통한 건설재해 예방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	- 사고성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기술자료 등 제공 및 안전교육 실시 - 현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계도	
	민간위탁사업 :화학분야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	화재 · 폭발 · 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 폭발 · 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 설비 안전조치 및 근로자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 - 유해 · 위험물질 취급량 실태파악	

분류	명칭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
	민간위탁사업 :서비스분야	사망사고 및 중상해재해 다발 시설물·설비 등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장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재해 다발 시설물, 설비 중심으로 기술지원 - 사업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술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기술자료 보급	

(2) 재정지원사업

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를 목표로 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프로그램별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최대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다음 <표 2-20>과 같다.

<표 2-20> 클린사업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일부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일부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대상	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감동·점검·기술지 원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근로자수 50인 미만 -감독·기술지원 사업장(건설업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 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업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단체
지원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망사고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대·설치·해체하 거나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이용할 수 있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지원금 액 및 지원비율	사업장당 2,000만원까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사업장당 2,000만원까지	건설현장당 2,000만원까지	산업단지당 10억원까지
	소요비용의 50%까지 ※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소요비용의 70%까지	소요비용의 50%까지 ※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소요비용의 65%,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은 60% 지원	소요비용의 50%까지

사업추진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전 업종 50인(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무추진절차(제조·서비스업 등)는 사업참여 신청부터 대상 사업장 선정, 투자 컨설팅, 보조지원 신청, 보조금 결정, 시설 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업참여 신청과 보조지원 신청, 시설 개선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며, 나머지 절차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한다. 클린사업장의 재인정은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할 경우,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할 경우, 재인정 신청하며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한다. (단,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적정여부는 적정, 개선필요, 해당없음으로 구분하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품목과 안전상의 조치 지원설비품목, 작업환경대선 지원설비품목, 작업공정개선 지원설비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품목

공단의 기술지원(또는 투자계획건설팅)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 건설기계(백호, 로우더)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경광등, 영상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이고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추락사고사망 예방 에어매트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 기타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
(프레스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 원격제어기, 로울러기 역회전장치, 주조조형기·다이캐스팅기 원료송급제품 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사출기 금형교환장치, 사출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파쇄·분쇄기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지게차 전후방 전조등, 안전난간·안전방책·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안전대 부착설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스폿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안전상의 조치 지원설비품목

공단의 투자계획컨설팅(또는 기술지원) 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20년 7월 지원설비 변경될 수 있음)

1. 안전상의 조치품목
2.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3. 위험공정 안전조치
4. 작업공정 개선조치
5. 화학설비 안전조치
6. 전기설비 안전조치
7. 전도방지 안전조치
8. 추락방지 안전조치
9. 용접설비 안전조치
10. 운반설비 안전조치
11. 기타안전보건상의 조치

작업환경개선 지원설비품목

공단의 기술지원(또는 투자계획컨설팅)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20년 7월 지원설비 변경될 수 있음)

1. 고온·한냉·다습환경 개선시설
2. 관리대상유해물질 제거시설
3. 허가대상유해물질 제거시설
4. 분진제거시설
5. 방사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설비
6. 소음방지시설
7. 개인위생을 위한 보관함
8. 세척·세안시설
9. 유해물질 확산방지 안전조치

작업공정개선 지원설비품목

공단의 기술지원(또는 투자계획컨설팅)시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류에 따른 설비 지원('20년 7월 지원설비 변경될 수 있음)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이동식 대차
- 컨베이어
- 사출성형기 호퍼로더
- 에어발란스
- 전동이동식 대차 등 중량물 운반설비(최대 적재하중 500kg 이하)
- 높이 또는 각도조절 가능 작업대(적재하중 500kg 미만)
- 카운터발란스(평형기)
- 턴테이블 등 작업방향 조절설비
- 입식작업 근로자용 입좌식 의자
- 좌식작업 근로자 스톨(이동식 포함)
- 인력작업에 의한 중량물 취급을 대체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
- 탄력성 및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재(높낮이조절 포함)
- 높낮이조절 컴퓨터 작업대 및 의자
- 인력운반 보조설비(환자 등)
- 인쇄기 용제 자동투입기

고위험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원을 통하여 근원적 안전경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예방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확산되어 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은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용자금을 지원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며,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 원 초과 사업장은 제외한다.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사업장 당 10억 원 한도로 연리 1.5%의 대출금리를 가지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용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약정을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하며,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용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 간의 대출약정체결의 의해 진행된다. 지원 절차는 자금 신청 후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자금지원심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 시설투자와 개선완료확인을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대출이 지원된다. 용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품목과 근거는 <표 2-21>과 같다.

<표 2-21> 용자지원사업 지원 대상 품목

품목	근거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산안법 제23조, 제24조 및 안전보건 규칙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산안법 제27조제1항제2호
유해·위험기계·설비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산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과 산안법시행령 제27조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 및 산안법 기행령시행규칙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기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7조제4호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7조제5호
보호구	산안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제3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도는 규칙 제93조제1항
고시 제6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7조제8호
산안법 제36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7조제9호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및 보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7조제10호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0호 제7조제11호

다) 민간 위탁사업 : 안전분야

안전분야의 민간 위탁사업은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한다.

사업 추진방침은 고위험작업·공정을 보유한 업종, 사고사망 중상해 재해율 등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며,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유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하며, 사고사망, 중상해 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실태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선 실행력 강화, 산재예방자원 투입 효율성 강화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수행요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 제고한다.

사업추진절차는 본부의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광역본부 등에서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일선기관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장 선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개선하며, 미개선 되었을 경우, 공단 확인 기술지도(Patrol)를 실시한다.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 지원 내용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원인 및 대책 제시, 사고성 재해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

도를 실시한다. 사업 물량으로는 총 46,0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라) 민간 위탁사업 : 보건분야

보건분야의 민간 위탁사업은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종합적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및 질식 재해 예방한다.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며, 사업 추진방침으로는 질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화학물질 보유취급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재해감소 성과 제고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유도 등 실시하고,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와 사업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수행요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개선실행력 강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년 계약 유지하며, 사업장 실태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선 실행력강화, 산재예방자원 투입 효율성을 강화한다.

사업추진절차는 본부의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광역본부 등에서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일선기관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장 선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개선하며, 미개선 되었을 경우,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 지원 내용은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지원과 위험성평가 인정참여

를 유도하며, 사업장 업무상질병 등 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작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작업을 실시한다. 사업 물량으로는 총 30,0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 민간 위탁사업 : 건설분야

건설분야의 민간위탁사업은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하고,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원한다. 사업 추진방침은 추락 등 사고사망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 공중 등을 우선 기술지원하며,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및 사업장 자율안전활동을 통해 현장 안전시설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지역책임제를 기반으로 재해예방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여 재해감소효과 극대화 및 위탁기관 경쟁력 강화하고,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 고용노동부와 정책 연계성 강화와 사업 프로세서의 합리적 개선, 수행요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를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실태평가를 통해 개선 실행력강화, 산재예방자원 투입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하고 소규모 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불량건설업체 선별한다.

사업추진절차는 본부의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광역본부 등에서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일선기관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장 선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개선하며, 미개선 되었을 경우, 공단 확인 기술지도(Patrol)를 실시한다.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를 의뢰

하여 사업을 종결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고성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기술자료 등 제공 및 안전교육 실시하며 현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을 계도한다. 건설분야 민간 위탁사업의 사업물량은 60,0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바)민간 위탁사업 : 화학분야

화학분야의 민간 위탁사업은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방침은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사고사망 중상해 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지도한다. 또한 유해·위험물질 취급량을 파악하여 공단의 화학물질 DB 구축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유도 등의 실시와 산재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수행요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장 실태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선 실행력 강화, 산재예방자원 투입 효율성 강화한다,

사업추진절차는 본부의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광역본부 등에서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일선기관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장 선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개선하며, 미개선 되었

을 경우,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사업을 종결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 설비 안전조치 및 근로자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실태를 파악한다. 사업물량은 15,000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 민간 위탁사업 : 서비스분야

서비스분야의 민간 위탁사업은 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도가 높은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법인을 활용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 재해 다발 시설물·설비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동종 분야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전체 서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방침은 6개 광역본부에서 대상 업종 비영리법인을 공모하여 수행기관 선정하고, 권역 내 일선기관별 수행기관 및 물량은 본부 주관 조정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6개 광역본부는 배정 물량으로 수행기관과 계약 및 수수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각 일선기관은 세부적인 사업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재해 다발 시설물, 설비 중심의 기술지원과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횟수를 1~3회로 조정하여 차등 지원하고, 사업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기술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사업추진절차는 본부의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광역본부 등에서 신청접수 및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일선기관에서 계약체결 및 사업장 선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을 개선하며, 미개선 되었을 경우,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공단 확인 기술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물량은 50,000개소에 대하여 지원한다.

(3) 기술지원사업

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가 있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두 가지다. 첫째, 건설공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둘째,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50억 원 미만의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5개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위험성평가 절차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

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으로는 산재보험료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이 있다.

이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직접적 기대 효과와 간접적 기대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기대효과로는 산재보험료 절감,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이다. 간접적 기대효과로는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단계적 투자에 의한 재해예방 투자총액 감소, 노·사 재해 예방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이다.

<표 2-22> 위험성평가 컨설팅의 기대 효과

직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간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 산재보험료 절감 -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 단계적 투자에 의한 재해예방 투자총액 감소 - 노·사 재해 예방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 -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

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원청) 주도로 협력업체(하청)와 함께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업체에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등, 원·하청 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는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원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전 업종 50인(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23>과 같다.

<표 2-2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대상

프로그램	지원 대상
안내 · 설명회	- 대상 사업장에 설명회 개최 안내(고용노동부,공단) - 사업취지, 추진절차 및 내용 등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공단)
프로그램 작성	- 협력업체(사내 · 사외)와 공생협력단 구성 [모기업] - 프로그램 추진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승인 신청 · 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 [모기업] -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 [고용노동부, 공단] - 당해연도 신규 참여 사업장에 희망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 [공단]
위험성 평가	-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 지원 [모기업] -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 · 이행	-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모기업] - 협력업체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지원 [모기업]
현장 기술지도	- 프로그램 세부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 [공단]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모기업]
확인 기술지도	- 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확인 [공단]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 부여 [고용노동부, 공단]

사업내용은 안내 및 설명회부터 프로그램작성, 프로그램 승인 신청 · 심사(계획수립 컨설팅), 위험성평가,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 · 이행, 현장 기술지도,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확인 기술지도,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기대효과는 평가등급에 따라서, 정기감독 일부 유예 및 연기요청권, 정부포상 우대, KOSHA18001 및 KOSHA-MS 사후 연장심사비 감면,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 및 실태심사비 면제, 클린사업 재정

우선지원,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 여신혜택 부여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24>와 같다.

<표 2-24> 등급관리혜택

평가등급	등급별 혜택	적용시기	적용 대상	
			모기업	협력업체
A등급 (상위 10%)	- 정기감독 일부 유예 및 연기요청권(90일) - 정부포상 우대 - 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 연장심사비 1/2 감면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64호) 제10조1항제6호에서 정하는 사업장	참여다음년도	O	O
A등급	- 정부포상 우대 - 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 연장심사비 1/2 감면	참여다음년도	O	O
모든등급	-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 (50인 미만)	수시	X	O
	- KOSHA-MS 실태심사비 면제	참여 당해연도 및 다음년도	X	O
	- 클린사업 재정 우선지원 -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	참여 당해연도 및 다음년도	X	O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혜택 부여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보증비율 0.2%p 감면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참여 다음년도	O	O
※비고 :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90점미만-80점 이상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				

또한, 모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 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등 원·하청 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은 조선업 사고사망 예방을 위하여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업무별 기술지도 및 패트롤, 업무별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는 것이며, 전국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포함)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와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패트롤, 안전보건 파트너십 강화, 밀폐공간 작업 안전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 전국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사내 협력업체 포함)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원·하청 수준평가 기술지도 및 평가등급 부여
- ②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패트롤 : 조선 블록제작업체 및 수리조선소를 중심으로 3대 악성사고(떨어짐, 화재·폭발, 부딪힘)를 예방하고자 원·하청의 안전보건활동이 체계적이고 실행력이 있도록 기술지도 및 패트롤 실시
- ③ 안전보건 파트너십 강화 : 조선업 리더 안전보건 리더그룹 간담회, 지역별 안전보건협의회, 토론회 개최 등 조선업 안전보건 파트너십 강화
- ④ 밀폐공간 작업 안전체계 구축 : 완성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밀폐공간 보유 및 작업현황 조사·기술지도

라) 위험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위험기계기구의 인증은 서면(수입품)심사와 기술능

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가 있으며, 다음 <표 2-25>와 같다.

<표 2-25> 위험기계기구 심사

분류		내용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제품심사	개별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작중 검사 (개별)	-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형식별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또한, 위험기계기구의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등을 의무자로 하며, 위험기계기구 인증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를 의거하고 있고, 위험기계기구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를 따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제93조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인증 및 검사대상의 적용범위는 다음의 <표 2-26>과 같다.

<표 2-26> 유해위험기계기구 인증과 검사대상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편칭프레스, 다
전단기*	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 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 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 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cm ²)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 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m³)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cm² 미만인 압력용기 나. (삭 제) < 2009.12.23 >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탭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국소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디아니신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

	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 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테일 리프트(tail lift) 나.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다.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마.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 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카.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타. 스택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다.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 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라.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 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 우에 한한다. 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 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 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아.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 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으로는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서면심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처리기간 15일)한
다. 다음으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처리

기간 30일)한다. 또한, 제품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처리기간 30일(형식별), 15일(개별))한다. 마지막으로,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매2년 마다)이다.

안전검사의 처리절차는 안전검사 신청과 안전검사,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한다. 안전인증 기관을 통해 안전인증·검사를 진행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공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마) 중소기업 화학공장 기술 지도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 지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 및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응기 등 공정·설비 또는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추진 배경설명 및 화학사고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물질·설비별 사업장 맞춤형 교재 등을 개발·보급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하며, 사업장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업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화학사고 사업장
- ② 30년 이상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 ③ PSM 대상 적용물질 규정수량 10% 이상 사업
- ④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업종 사업장
- ⑤ 기타 사업수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의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1차 기술지원과 2차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 개선이 완료되면 종결하며, 미개선일 경우, 고용부에 보고한다. 기술지도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과 기술지도 사항은 다음 <표 2-27>과 같다.

<표 2-27>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 지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기술지도 사항
제37조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신규 근로자 포함)
제84조, 제93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제125조, 제130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여부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 여부
- 반응기 등 화학설비 보유업체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법적 공통사항에 대한 지도 병행) - 기술지도 내용 -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 화기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 화학물질 운반방법의 안전조치 사항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위험방지조치 사항 - 기타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상태 등 - 기술지도 시 법정 공통 지도사항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 안전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주요사업 실적 및 효과

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클린사업의 예산과 사업장 수, 지원 금액은 <표 2-28>과 같다. 클린사업 전체 재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도에는 989억 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원했지만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표 2-28> 클린사업 추진 실적(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

(단위 : 백 만원, 개소)

년도	재원	참여신청 사업장수	결정 사업장수	결정금액	지급 사업장수	지급금액
계	1,294,872	308,776	129,510	1,394,613	121,790	1,281,072
2018년	66,640	16,080	7,948	80,138	6,952	66,640
2017년	62,807	17,366	6,719	68,864	6,181	61,877
2016년	75,400	21,761	6,379	74,923	6,566	75,400
2015년	79,500	20,822	7,162	85,850	6,750	79,500
2014년	89,400	18,919	7,986	99,569	7,581	89,400
2013년	98,900	16,596	9,652	107,661	8,888	98,898
2012년	72,000	15,109	7,916	76,330	7,596	72,000
2011년	62,725	16,770	8,723	71,666	7,884	62,725
2010년	57,000	8,756	5,073	53,749	4,882	52,098
2009년	74,000	5,634	3,837	66,681	4,831	74,000
2008년	100,000	32,640	10,818	113,062	9,794	100,448
2007년	100,000	27,335	10,174	103,305	9,847	99,427
2006년	100,000	20,491	7,834	91,492	9,508	100,000
2005년	100,000	31,997	12,533	133,170	10,428	111,046
2004년	70,000	15,179	6,763	75,474	5,236	56,266
2003년	36,500	8,051	3,848	38,985	3,266	31,904
2002년	50,000	15,270	6,145	53,694	5,600	49,443

클린사업의 연도별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 <표 2-29>와 같다. 지원대상에 대하여 2002년 10억 원 미만 건설업사업장에서 50억 원 미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축공사를 포함한 20억 원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원 금액도 지속적인 변경이 있었다.

<표 2-29> 클린사업 연도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원 (억원)	500	365	700	1,000				740	570	627	720	989	894	795	754	628	
지원 대상																	
	10 억 미 만 건 설 업	50억원 미만 제조업						서 비 스 업 (5대)				10억원 미만 건축공사포 함	20억원미만 건축공사 포함				
지 원 금 액	3,0 00 만 원	2,000만원	3,000만원				3,0 00 만 원	2,000만원									
	1,000만원 전액							소요비용			소요비용 70%(10인 이상 50%)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70%						
								80 %	70 %	50 %							
	추 가 200 0만 원	추가 1000만원	추가 2000만원				3대 다 발	사 고 성	산 업 재 해	건설업 70%			건 설 업 3억 미 만 65 %, 10 억 원 미 만 60 %, 20 억 원 미 만 50 %				
	1000만원																
	50% 부담										10억원 이상 50%						
	-					10인 이상		-		유 해 공 정 개 선 통 합							
						80 %	70 %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지원품목 가격적정성 검토연구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성과를 사고사망만인율 추이와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이중차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DID분석이란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분석기법으로, 지원사업을 제공받은 사업장이 처리집단(treatment group),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할 때, 시간의 경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

먼저, 클린사업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표 2-30>과 같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재해율 대비 후년도 사망만인율은 평균 -0.80%p 감소하였으며, 대조군 사업장에 비해 재해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클린사업을 통한 사망만인율의 감소는 2012년 -1.59%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재해율 감소 성과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표 2-30> 클린사업의 재해 감소 성과
(전년도 사망만인율 대비 후년도 사망만인율 : %, %p)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클린 사업장	%	75.87	54.99	50.95	43.33	50.65	61.01	55.06	64.75	81.27	56.02	59.39
	%p	-0.52	-1.24	-1.14	-1.59	-1.06	-0.66	-0.70	-0.47	-0.22	-0.43	-0.80
대조군 사업장	%	97.36	88.91	88.91	82.89	86.44	82.91	91.60	92.82	101.80	53.88	86.75
	%p	-0.03	-0.11	-0.19	-0.15	-0.10	-0.15	-0.06	-0.05	0.01	-0.30	-0.11

다음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재해율 감소 성과에 대한 DID 분석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클린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클린사업 지원 전보다 사업지원 이후에 재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사망만인율 분석과 같이 재해감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클린사업 전체 사업장의 연도별 재해감소 효과(DID 분석)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근로자수	9.60	7.30	18.20	13.92	16.70	10.15	15.88	6.93	21.97	13.64
재해율	-1.50	-1.13	-0.95	-1.45	-0.95	-0.52	-0.64	-0.42	-0.23	-0.13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표 2-32>와 같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사업시행 전보다 사업시행 이후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5~9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 효과가 우수하며, 나머지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사업시행 이후 재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사업시행 이후 재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재해율 감소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2>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감소 효과(클린사업, DID)

년도	사업장 규모	근로자수	재해율
2009	5인 미만	27.85	-1.88
	5-9인	-30.20	-0.73
	10-29인	-3.40	-0.33
	30-49인	15.69	-0.05
	50인 이상	913.32	0.10
2010	5인 미만	-19.58	-4.17
	5-9인	-0.35	-1.04
	10-29인	9.82	-0.74
	30-49인	12.12	-0.49
	50인 이상	207.26	-0.95
2011	5인 미만	-22.18	-3.72
	5-9인	-2.86	-1.11
	10-29인	6.44	-0.60
	30-49인	38.20	-0.23
	50인 이상	488.41	-0.43
2012	5인 미만	-17.16	-4.97
	5-9인	10.32	-1.56
	10-29인	12.67	-0.66
	30-49인	30.35	-0.11
	50인 이상	593.22	0.12
2013	5인 미만	-24.77	-2.02
	5-9인	14.44	-1.27
	10-29인	22.40	-0.27
	30-49인	40.27	-0.44
	50인 이상	35.99	-0.15
2014	5인 미만	-28.10	-1.35
	5-9인	-4.37	-0.55
	10-29인	20.73	-0.09
	30-49인	29.43	-0.31
	50인 이상	238.17	0.38

년도	사업장 규모	근로자수	재해율
2015	5인 미만	-22.39	-1.58
	5-9인	-11.12	-0.57
	10-29인	17.82	-0.40
	30-49인	38.32	-0.34
	50인 이상	240.34	0.11
2016	5인 미만	-23.85	-1.29
	5-9인	-5.25	-0.36
	10-29인	10.96	-0.25
	30-49인	15.12	-0.18
	50인 이상	138.58	-0.13
2017	5인 미만	-2.96	-0.21
	5-9인	12.59	-0.15
	10-29인	43.55	-0.32
	30-49인	37.10	0.19
	50인 이상	16.55	-0.36
2018	5인 미만	-9.24	-0.23
	5-9인	-0.63	-0.47
	10-29인	19.88	-0.64
	30-49인	19.25	-0.24
	50인 이상	127.25	-0.21

클린사업의 지원 금액 중요도 및 만족도는 다음 <표 2-33>과 같다. 이 분석은 추진과정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클린사업의 가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2018년 클린사업을 수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클린사업 지원 금액 중요도 및 만족도를 각각 5가지 항목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제조·서비스업에서 평균 4.48점, 건설업에서는 평균 4.68점으로 클린사업을 진행하며 받게 되는 지원 금액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는 제조·서비스업에서 3.67점, 건설업에서 3.95점으로 나타나 지원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2-33> 클린사업 지원 금액 중요도 및 만족도

중요도

구분		표 본 수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 균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제조, 서비스		197	1	0.5	2	1.0	16	8.1	61	31.0	117	59.4	4.48
규 모 별	5인 미만	87	0	0.0	2	2.3	7	8.0	29	33.3	49	56.3	4.44
	5~1 9인 미만	79	0	0.0	0	0.0	6	7.6	21	26.6	52	65.8	4.58
	20인 이상	31	1	3.2	0	0.0	3	9.7	11	35.5	16	51.6	4.32
계		197	1	0.5	2	1.0	16	8.1	61	31.0	117	59.4	4.48
업 종 별	제조 업	149	1	0.7	1	0.7	11	7.4	44	29.5	92	61.7	4.51
	서비 스업	48	0	0.0	1	2.1	5	10.4	17	35.4	25	52.1	4.38
계		197	1	0.5	2	1.0	16	8.1	61	31.0	117	59.4	4.48
지 역 별	경기 권역	26	0	0.0	0	0.0	4	15.4	10	38.5	12	46.2	4.31
	광주 권역	90	0	0.0	2	2.2	5	5.6	25	27.8	58	64.4	4.54
	대구 권역	27	0	0.0	0	0.0	3	11.1	8	29.6	16	59.3	4.48
	대전 권역	29	1	3.4	0	0.0	1	3.4	11	37.9	16	55.2	4.41
	부산 권역	12	0	0.0	0	0.0	2	16.7	1	8.3	9	75.0	4.58
	서울 권역	13	0	0.0	0	0.0	1	7.7	6	46.2	6	46.2	4.38
계		197	1	0.5	2	1.0	16	8.1	61	31.0	117	59.4	4.48
건설업		22	0	0.0	0	0.0	1	4.5	5	22.7	16	72.7	4.68
규 모 별	5인 미만	1	0	0.0	0	0.0	0	0.0	0	0.0	1	100	5.00
	5~1 9인 미만	19	0	0.0	0	0.0	1	5.3	5	26.3	13	68.4	4.63
	20인 이상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계		22	0	0.0	0	0.0	1	4.5	5	22.7	16	72.7	4.68

만 족 도	지 역 별	경기 권역	5	0	0.0	0	0.0	0	0.0	1	20.0	4	80.0	4.80
		광주 권역	7	0	0.0	0	0.0	1	14.3	3	42.9	3	42.9	4.29
		대구 권역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대전 권역	1	0	0.0	0	0.0	0	0.0	0	0.0	1	100	5.00
		부산 권역	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서울 권역	7	0	0.0	0	0.0	0	0.0	1	14.3	6	85.7	4.86
		계	22	0	0.0	0	0.0	1	4.5	5	22.7	16	72.7	4.68
	제조, 서비스		197	3	1.5	17	8.6	68	34.5	63	32.0	46	23.4	3.67
	규 모 별	5인 미만	87	1	1.1	12	13.8	29	33.3	26	29.9	19	21.8	3.57
		5~1 9인 미만	79	1	1.3	4	5.1	25	31.6	28	35.4	21	26.6	3.81
		20인 이상	31	1	3.2	1	3.2	14	45.2	9	29.0	6	19.4	3.58
	계		197	3	1.5	17	8.6	68	34.5	63	32.0	46	23.4	3.67
	업 종 별	제조 업	149	2	1.3	9	6.0	50	33.6	49	32.9	39	26.2	3.77
		서비 스업	48	1	2.1	8	16.7	18	37.5	14	29.2	7	14.6	3.38
	계		197	3	1.5	17	8.6	68	34.5	63	32.0	46	23.4	3.67
지 역 별	경기 권역	26	1	3.8	4	15.4	9	34.6	7	26.9	5	19.2	3.42	
	광주 권역	90	0	0.0	5	5.6	33	36.7	27	30.0	25	27.8	3.80	
	대구 권역	27	1	3.7	4	14.8	8	29.6	9	33.3	5	18.5	3.48	
	대전 권역	29	1	3.4	1	3.4	12	41.4	9	31.0	6	20.7	3.62	
	부산 권역	12	0	0.0	2	16.7	3	25.0	3	25.0	4	33.3	3.75	
	서울 권역	13	0	0.0	1	7.7	3	23.1	8	61.5	1	7.7	3.69	
계		197	3	1.5	17	8.6	68	34.5	63	32.0	46	23.4	3.67	
건설업		22	0	0.0	0	0.0	6	27.3	11	50.0	5	22.7	3.95	
규 모 별	5인 미만	1	0	0.0	0	0.0	1	100	0	0.0	0	0.0	3.00	
	5~1 9인	19	0	0.0	0	0.0	3	15.8	11	57.9	5	26.3	4.11	

		미만												
		20인 이상	2	0	0.0	0	0.0	2	100	0	0.0	0	0.0	3.00
	계		27	0	0.0	0	0.0	6	22.2	11	40.7	5	18.5	3.22
	지 역 별	경기 권역	5	0	0.0	0	0.0	2	40.0	2	40.0	1	20.0	3.80
		광주 권역	7	0	0.0	0	0.0	1	14.3	5	71.4	1	14.3	4.00
		대구 권역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대전 권역	1	0	0.0	0	0.0	1	100	0	0.0	0	0.0	3.00
		부산 권역	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서울 권역	7	0	0.0	0	0.0	2	28.6	4	57.1	1	14.3	3.86
계		22	0	0.0	0	0.0	6	27.3	11	50.0	5	22.7	3.95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중요도의 경우, 제조·서비스업에서 평균 점수 4.42점, 건설업에서 4.41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제조·서비스업은 평균 점수 4.17점, 건설업의 경우 4.14점으로 제조·서비스업과 건설업 모두 중요도나 만족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설문 결과는 <표 2-34>와 같다.

<표 2-34> 클린사업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구분		표 본 수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 균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중 요 도	제조, 서비스		197	1	0.5	1	0.5	15	7.6	78	39.6	102	51.8	4.42
	규 모 별	5인 미만	87	0	0.0	0	0.0	6	6.9	38	43.7	43	49.4	4.43
		5~1 9인 미만	79	0	0.0	1	1.3	5	6.3	32	40.5	41	51.9	4.43
		20인 이상	31	1	3.2	0	0.0	4	12.9	8	25.8	18	58.1	4.35
	계		197	1	0.5	1	0.5	15	7.6	78	39.6	102	51.8	4.42
	업 종 별	제조 업	149	0	0.0	1	0.7	10	6.7	54	36.2	84	56.4	4.48
		서비 스업	48	1	2.1	0	0.0	5	10.4	21	50.0	18	37.5	4.21
	계		197	1	0.5	1	0.5	15	7.6	78	39.6	102	51.8	4.42
	지 역 별	경기 권역	26	0	0.0	0	0.0	2	7.7	9	34.6	15	57.7	4.50
		광주 권역	90	1	1.1	0	0.0	5	5.6	40	44.4	44	48.9	4.40
		대구 권역	27	0	0.0	0	0.0	3	11.1	10	37.0	14	51.9	4.41
		대전 권역	29	0	0.0	1	3.4	2	6.9	6	20.7	20	69.0	4.55
		부산 권역	12	0	0.0	0	0.0	1	8.3	5	41.7	6	50.0	4.42
		서울 권역	13	0	0.0	0	0.0	2	15.4	8	61.5	3	23.1	4.08
	계		197	1	0.5	1	0.5	15	7.6	78	39.6	102	51.8	4.42
	건설업		22	0	0.0	0	0.0	3	13.6	7	31.8	12	54.5	4.41
	규 모 별	5인 미만	1	0	0.0	0	0.0	0	0.0	0	0.0	1	100	5.00
		5~1 9인 미만	19	0	0.0	0	0.0	3	15.8	6	31.6	10	52.6	4.37
		20인 이상	2	0	0.0	0	0.0	0	0.0	1	50.0	1	50.0	4.50

만 주 도	계		22	0	0.0	0	0.0	3	13.6	7	31.8	12	54.5	4.41
	지 역 별	경기 권역	5	0	0.0	0	0.0	0	0.0	3	60.0	2	40.0	4.40
		광주 권역	7	0	0.0	0	0.0	2	28.6	3	42.9	2	28.6	4.00
		대구 권역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대전 권역	1	0	0.0	0	0.0	0	0.0	0	0.0	1	100	5.00
		부산 권역	0	0	0	0.0	0	0.0	0	0.0	0	0	0.0	0.00
		서울 권역	7	0	0.0	0	0.0	1	14.3	1	14.3	5	71.4	4.57
	계		22	0	0.0	0	0.0	3	13.6	7	31.8	12	54.5	4.41
	제조, 서비스		197	0	0.0	1	0.5	34	17.3	92	46.7	70	35.5	4.17
	규 모 별	5인 미만	87	0	0.0	0	0.0	13	14.9	43	49.4	31	35.6	4.21
		5~1 9인 미만	79	0	0.0	1	1.3	13	16.5	32	40.5	33	41.8	4.23
		20인 이상	31	0	0.0	0	0.0	8	25.8	17	54.7	6	19.4	3.94
	계		197	0	0.0	1	0.5	34	17.3	92	46.7	70	35.5	4.17
	업 종 별	제조 업	149	0	0.0	1	0.7	25	16.8	64	43.0	59	39.6	4.21
		서비 스업	48	0	0.0	0	0.0	9	18.8	28	58.3	11	22.9	4.04
	계		197	0	0.0	1	0.5	34	17.3	92	46.7	70	35.5	4.17
	지 역 별	경기 권역	26	0	0.0	0	0.0	4	15.4	11	42.3	11	42.3	4.27
		광주 권역	90	0	0.0	1	1.1	13	14.4	46	51.1	30	33.3	4.17
		대구 권역	27	0	0.0	0	0.0	7	25.9	13	48.1	7	25.9	4.00
		대전 권역	29	0	0.0	0	0.0	5	17.2	11	37.9	13	44.8	4.28
		부산 권역	12	0	0.0	0	0.0	1	8.3	5	41.7	6	50.0	4.42
		서울 권역	13	0	0.0	0	0.0	4	30.8	6	46.2	3	23.1	3.92
	계		197	0	0.0	1	0.5	34	17.3	92	46.7	70	35.5	4.17
	건설업		22	0	0.0	0	0.0	3	13.6	13	59.1	6	27.3	4.14
	규 모 별	5인 미만	1	0	0.0	0	0.0	0	0.0	1	100	0	0.0	4.00
		5~1	19	0	0.0	0	0.0	3	15.8	10	52.6	6	31.6	4.16

		9인 미만												
		20인 이상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계		22	0	0.0	0	0.0	3	13.6	11	50.0	8	36.4	4.23
	지역별	경기 권역	5	0	0.0	0	0.0	0	0.0	3	60.0	2	40.0	4.40
		광주 권역	7	0	0.0	0	0.0	2	28.6	5	71.4	0	0.0	3.71
		대구 권역	2	0	0.0	0	0.0	0	0.0	1	50.0	1	50.0	4.50
		대전 권역	1	0	0.0	0	0.0	0	0.0	1	100	0	0.0	4.00
		부산 권역	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서울 권역	7	0	0.0	0	0.0	1	14.3	3	42.9	3	42.9	4.29
	계		22	0	0.0	0	0.0	3	13.6	13	59.1	6	27.3	4.14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중요도의 경우, 제조·서비스업에서 평균 점수 3.83점, 건설업에서 평균 점수 3.91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제조·서비스업은 평균 점수 3.65점, 건설업의 경우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설문 결과는 다음 <표 2-35>와 같다.

<표 2-35> 클린사업 산업재해 예방 기여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중요도

구분		표 본 수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 균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제조, 서비스		197	1	0.5	1	0.5	20	10.2	66	33.5	109	55.3	4.43
규 모 별	5인 미만	87	0	0.0	0	0.0	8	9.2	29	33.3	50	57.5	4.48
	5~1 9인 미만	79	0	0.0	1	1.3	9	11.4	27	34.2	42	53.2	4.39
	20인 이상	31	1	3.2	0	0.0	3	9.7	10	32.3	17	54.8	4.35
계		197	1	0.5	1	0.5	20	10.2	66	33.5	109	55.3	4.43
업 종 별	제조 업	149	0	0.0	1	0.7	12	8.1	51	34.2	85	57.0	4.48
	서비스업	48	1	2.1	0	0.0	8	16.7	15	31.3	24	50.0	4.27
계		197	1	0.5	1	0.5	20	10.2	66	33.5	109	55.3	4.43
지 역 별	경기 권역	26	0	0.0	0	0.0	4	15.4	9	34.6	13	50.0	4.35
	광주 권역	90	1	1.1	0	0.0	10	11.1	32	35.6	47	52.2	4.38
	대구 권역	27	0	0.0	0	0.0	3	11.1	6	22.2	18	66.7	4.56
	대전 권역	29	0	0.0	1	3.4	1	3.4	6	20.7	21	72.4	4.62
	부산 권역	12	0	0.0	0	0.0	1	8.3	6	50.0	5	41.7	4.33
	서울 권역	13	0	0.0	0	0.0	1	7.7	7	53.8	5	38.5	4.31
계		197	1	0.5	1	0.5	20	10.2	66	33.5	109	55.3	4.43
건설업		22	0	0.0	1	4.5	0	0.0	6	27.3	15	68.2	4.59
규 모 별	5인 미만	1	0	0.0	0	0.0	0	0.0	1	100	0	0.0	4.00
	5~1 9인 미만	19	0	0.0	1	5.3	0	0.0	5	26.3	13	68.4	4.58
	20인 이상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계		22	0	0.0	1	4.5	0	0.0	6	27.3	15	68.2	4.59

	지 역 별	경기 권역	5	0	0.0	0	0.0	0	0.0	1	20.0	4	80.0	4.80
		광주 권역	7	0	0.0	1	14.3	0	0.0	2	28.6	4	57.1	4.29
		대구 권역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대전 권역	1	0	0.0	0	0.0	0	0.0	1	100	0	0.0	4.00
		부산 권역	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서울 권역	7	0	0.0	0	0.0	0	0.0	2	28.6	5	71.4	4.71
	계		22	0	0.0	1	4.5	0	0.0	6	27.3	15	68.2	4.59
만 주 도	제조, 서비스		197	0	0.0	3	1.5	36	18.3	75	38.1	83	42.1	4.21
	규 모 별	5인 미만	87	0	0.0	1	1.1	14	16.1	36	41.4	36	41.4	4.23
		5~1 9인 미만	79	0	0.0	2	2.5	18	22.8	23	29.1	36	45.6	4.18
		20인 이상	31	0	0.0	0	0.0	4	12.9	16	51.6	11	35.5	4.23
	계		197	0	0.0	3	1.5	36	18.3	75	38.1	83	42.1	4.21
	업 종 별	제조 업	149	0	0.0	3	2.0	27	18.1	53	35.6	66	44.3	4.22
		서비 스업	48	0	0.0	0	0.0	9	18.8	22	45.8	17	35.4	4.17
	계		197	0	0.0	3	1.5	36	18.3	75	38.1	83	42.1	4.21
	지 역 별	경기 권역	26	0	0.0	1	3.8	5	19.2	10	38.5	10	38.5	4.12
		광주 권역	90	0	0.0	2	2.2	13	14.4	36	40.0	39	43.3	4.24
		대구 권역	27	0	0.0	0	0.0	7	25.9	9	33.3	11	40.7	4.15
		대전 권역	29	0	0.0	0	0.0	6	20.7	9	31.0	14	48.3	4.28
		부산 권역	12	0	0.0	0	0.0	2	16.7	5	41.7	5	41.7	4.25
		서울 권역	13	0	0.0	0	0.0	3	23.1	6	46.2	4	30.8	4.08
	계		197	0	0.0	3	1.5	36	18.3	75	38.1	83	42.1	4.21
	건설업		22	0	0.0	0	0.0	3	13.6	10	45.5	9	40.9	4.27
	규 모 별	5인 미만	1	0	0.0	0	0.0	1	100	0	0.0	0	0.0	3.00
		5~1	19	0	0.0	0	0.0	2	10.5	8	42.1	9	47.4	4.37

		9인 미만												
		20인 이상	2	0	0.0	0	0.0	0	0.0	2	100	0	0.0	4.00
	계		22	0	0.0	0	0.0	3	13.6	10	45.5	9	40.9	4.27
	지역별	경기 권역	5	0	0.0	0	0.0	0	0.0	2	40.0	3	60.0	4.60
		광주 권역	7	0	0.0	0	0.0	1	14.3	5	71.4	1	14.3	4.00
		대구 권역	2	0	0.0	0	0.0	0	0.0	1	50.0	1	50.0	4.50
		대전 권역	1	0	0.0	0	0.0	1	100	0	0.0	0	0.0	3.00
		부산 권역	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서울 권역	7	0	0.0	0	0.0	1	14.3	2	28.6	4	57.1	4.43
	계		22	0	0.0	0	0.0	3	13.6	10	45.5	9	40.9	4.27

클린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제조·서비스업은 평균 점수 4.14점, 건설업은 평균 점수 4.18점으로 모든 업종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규모별로는 제조·서비스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높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표 2-36>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2-36> 클린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표본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제조,서비스		197	3	1.5	6	3.0	23	11.7	93	47.2	72	36.5	4.14
규모별	5인미만	87	3	3.4	3	3.4	11	12.6	39	44.8	31	35.6	4.06
	5~19인 미만	79	0	0.0	1	1.3	10	12.7	37	46.8	31	39.2	4.24
	20인 이상	31	0	0.0	2	6.5	2	6.5	17	54.8	10	32.3	4.13
계		197	3	1.5	6	3.0	23	11.7	93	47.2	72	36.5	4.14
업종별	제조업	149	2	1.3	5	3.4	18	12.1	69	46.3	55	36.9	4.14
	서비스업	48	1	2.1	1	2.1	5	10.4	24	50.0	17	35.4	4.15
계		197	3	1.5	6	3.0	23	11.7	93	47.2	72	36.5	4.14
지역별	경기권역	26	0	0.0	2	7.7	4	15.4	14	53.8	6	23.1	3.92
	광주권역	90	2	2.2	2	2.2	9	10.0	37	41.1	40	44.4	4.23
	대구권역	27	0	0.0	0	0.0	2	7.4	14	51.9	11	40.7	4.33
	대전권역	29	0	0.0	0	0.0	3	10.3	17	58.6	9	31.0	4.21
	부산권역	12	0	0.0	2	16.7	3	25.0	3	25.0	4	33.3	3.75
	서울권역	13	1	7.7	0	0.0	2	15.4	8	61.5	2	15.4	3.77
계		197	3	1.5	6	3.0	23	11.7	93	47.2	72	36.5	3.79
규모별	건설업	22	0	0.0	0	0.0	4	18.2	10	45.5	8	36.4	4.18
	5인미만	1	0	0.0	0	0.0	1	100	0	0.0	0	0.0	3.00
	5~19인 미만	19	0	0.0	0	0.0	3	15.8	8	42.1	8	42.1	4.26
	20인 이상	2	0	0.0	0	0.0	0	0.0	2	100	0	0.0	4.00
계		22	0	0.0	0	0.0	4	18.2	10	45.5	8	36.4	4.18
지역별	경기권역	5	0	0.0	0	0.0	0	0.0	2	40	3	60.0	4.60
	광주권역	7	0	0.0	0	0.0	1	14.3	6	85.7	0	0.0	3.86
	대구권역	2	0	0.0	0	0.0	0	0.0	0	0.0	2	100	5.00
	대전권역	1	0	0.0	0	0.0	1	100	0	0.0	0	0.0	3.00
	부산권역	0	0	0.0	0	0.0	0	0.0	0	0.0	0	0.0	0.00
	서울권역	7	0	0.0	0	0.0	2	28.6	2	28.6	3	42.9	4.14
계		22	0	0.0	0	0.0	4	18.2	10	45.5	8	36.4	4.18

나)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용자사업 추진실적은 다음 <표 2-37>과 같이 나타났다. 사업의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약 1,756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표 2-37> 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지원 추이

(단위: 백 만원,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원	86,163	83,034	98,963	89,067	90,160	100,160	175,000	176,350	166,276	122,794
신청금액	121,755	120,657	133,630	114,410	112,782	133,883	232,720	244,330	243,612	172,166
신청사업 장수	962	1,051	1,257	949	1,055	960	1,131	1,354	1,246	941
결정금액	108,601	107,659	119,363	107,679	104,237	128,084	217,298	185,802	222,251	166,022
결정사업 장수	961	1,051	1,236	949	1,038	958	1,082	1,068	1,216	941
지급금액	79,646	76,188	93,811	89,066	86,332	100,160	175,000	174,531	166,054	122,758
누계	1,323,629	1,399,817	1,493,628	1,582,694	1,669,026	1,769,186	1,944,186	2,118,717	2,284,771	2,407,529
지급사업 장수	728	712	954	861	815	769	936	1,055	950	723
누계	17,625	18,337	19,291	20,152	20,967	21,736	22,672	23,727	24,677	25,400

용자사업 지원 사업장과 미지원 사업장을 이용하여 기준년도 전후 간의 재해율 차이로 산출한 DID 분석 결과는 <표 2-38>과 같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DID 계수값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용자사업이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해율 감소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용자사업이 전체 재해자 감소에 기여는 하지만, 클린사업과 비교하여 용자사업의 전체 재해자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8> 용자사업 전체 사업장의 연도별 재해감소 효과(DID 분석)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근로자수	14.33	11.63	29.92	26.93	15.42	5.64	17.22	14.30	10.87	11.05
재해율	-0.13	-0.02	-0.76	-0.56	-0.23	-0.13	-0.21	-0.06	-0.04	-0.28

용자사업의 재해율 감소 성과를 <표 2-39>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타내었다. 클린사업 분석과 동일하게 용자사업의 시행연도의 성과를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사업시행 후연도의 재해율을 사업시행 전년도 재해율 대비 백분율(%)로 나타내고, 연도간 재해율 차이를 %p로 표기하였다. 용자사업의 경우, 대조군 현황과 대비할 때 2009~2010년에 가장 큰 재해율 감소 성과를 나타내고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재해율 차이 및 재해율 증감 수준은 대조군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용자사업의 재해율 감소성과가 가장 적은 2017년의 경우, 사업시행전 재해율이 1.02%에서 사업시행 후 1.03%로 0.01%p 증가하여 2016년도 대비 100.98% 수준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조군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연도에 산업 전반에 나타난 재해율 증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39> 용자사업의 재해율 감소 성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용자 사업장	%	89.40	95.88	63.09	68.37	81.41	82.95	77.68	93.54	100.98	81.82	83.51
	%p	-0.15	-0.07	-0.86	-0.62	-0.29	-0.22	-0.25	-0.08	0.01	-0.22	-0.28
대조군	%	97.18	92.86	85.51	90.77	89.83	84.75	92.45	96.00	110.20	111.74	95.13
	%p	-0.02	-0.05	-0.10	-0.06	-0.06	-0.09	-0.04	-0.02	0.05	0.06	0.03

<표 2-40>은 용자사업 지원 사업장의 재해율 감소 효과와 연도별 추이를 규모별로 나타내고 있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사업시행 후 재해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재해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해감소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인 이상 규모의 전 사업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재해율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의 효과 미약하게 나타났다.

<표 2-40>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감소 효과(용자사업, DID)

년도	사업장 규모	근로자수	재해율
2009	5인 미만	-8.27	-2.21
	5-9인	-10.94	-0.70
	10-29인	13.84	0.43
	30-49인	71.47	-0.49
	50인 이상	8.01	-0.01
2010	5인 미만	-18.63	-3.37
	5-9인	-7.23	1.11
	10-29인	19.59	0.11
	30-49인	3.87	0.06
	50인 이상	16.57	0.06
2011	5인 미만	-24.12	-3.41
	5-9인	33.69	0.30
	10-29인	14.40	-0.87
	30-49인	21.13	0.11
	50인 이상	72.18	-0.48

년도	사업장 규모	근로자수	재해율
2012	5인 미만	-10.34	-3.31
	5-9인	7.30	-0.76
	10-29인	9.01	-0.25
	30-49인	33.60	-0.58
	50인 이상	63.63	0.21
2013	5인 미만	-34.75	-0.55
	5-9인	-7.32	-0.03
	10-29인	21.74	-0.14
	30-49인	18.04	-0.09
	50인 이상	14.70	-0.11
2014	5인 미만	-34.98	-1.31
	5-9인	4.37	-0.55
	10-29인	5.75	0.08
	30-49인	11.39	0.00
	50인 이상	10.41	-0.10
2015	5인 미만	-27.89	-0.30
	5-9인	-7.24	0.68
	10-29인	8.23	-0.35
	30-49인	16.38	-0.36
	50인 이상	46.72	0.04
2016	5인 미만	-30.53	-1.22
	5-9인	6.40	0.48
	10-29인	14.15	-0.14
	30-49인	8.15	0.21
	50인 이상	38.29	0.07
2017	5인 미만	-19.33	-0.45
	5-9인	-8.07	-0.04
	10-29인	23.72	-0.13
	30-49인	-5.48	0.29
	50인 이상	27.73	-0.01
2018	5인 미만	-17.75	0.17
	5-9인	3.97	-1.66
	10-29인	13.13	-0.12
	30-49인	5.24	0.24
	50인 이상	29.96	-0.23

용자금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 <표 2-41>과 같이 전체 평균 점수 4.28점으로 전반적으로 용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모두 평균 점수를 분석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1> 용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표본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응답 수	응답 률 (%)	
전체 사업장		87	0	0.0	0	0.0	10	11.5	43	49.4	34	39.1	4.28
규모 별	5인미만	28	0	0.0	0	0.0	5	17.9	14	50.0	9	32.1	4.14
	5~19인 미만	45	0	0.0	0	0.0	4	8.9	23	51.1	18	40.0	4.31
	20인 이상	14	0	0.0	0	0.0	1	7.1	6	42.9	7	50.0	4.43
계		87	0	0.0	0	0.0	10	11.5	43	49.4	34	39.1	4.28
업 종 별	제조업	77	0	0.0	0	0.0	8	10.4	40	51.9	29	37.7	4.27
	서비스업	10	0	0.0	0	0.0	2	20.0	3	30.0	5	50.0	4.30
계		87	0	0.0	0	0.0	10	11.5	43	49.4	34	39.1	4.28
지역 별	경기권역	25	0	0.0	0	0.0	3	12.0	12	48.0	10	40.0	4.28
	광주권역	18	0	0.0	0	0.0	2	11.1	10	55.6	6	33.3	4.22
	대구권역	7	0	0.0	0	0.0	0	0.0	5	71.4	2	28.6	4.29
	대전권역	13	0	0.0	0	0.0	2	15.4	6	46.2	5	38.5	4.23
	부산권역	18	0	0.0	0	0.0	1	5.6	9	50.0	8	44.4	4.39
	서울권역	6	0	0.0	0	0.0	2	33.3	1	16.7	3	50.0	4.17
계		87	0	0.0	0	0.0	10	11.5	43	49.4	34	39.1	4.28

융자금 지원사업을 받은 후 산재예방 기여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표 2-42>와 같이, 전체 평균점수 4.15점으로 융자사업을 지원받은 후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모두 평균 점수를 분석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2> 용자사업 지원 후 변화 - 산재예방기여

구분		표본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응 답 수	응 답 률 (%)	
전체 사업장		87	0	0.0	0	0.0	21	24.1	32	36.8	34	39.1	4.15
규모 별	5인미만	28	0	0.0	0	0.0	8	28.6	9	32.1	11	39.3	4.11
	5~19인 미만	45	0	0.0	0	0.0	10	22.2	17	37.8	18	40.0	4.18
	20인 이상	14	0	0.0	0	0.0	3	21.4	6	42.9	5	35.7	4.14
계		87	0	0.0	0	0.0	21	24.1	32	36.8	34	39.1	4.15
업종 별	제조업	77	0	0.0	0	0.0	19	24.7	27	35.1	31	40.3	4.16
	서비스업	10	0	0.0	0	0.0	2	20.0	5	50.0	3	30.0	4.10
계		87	0	0.0	0	0.0	21	24.1	32	36.8	34	39.1	4.15
지역 별	경기권역	25	0	0.0	0	0.0	6	24.0	8	32.0	11	44.0	4.20
	광주권역	18	0	0.0	0	0.0	4	22.2	6	33.3	8	44.4	4.22
	대구권역	7	0	0.0	0	0.0	1	14.3	2	28.6	4	57.1	4.43
	대전권역	13	0	0.0	0	0.0	3	23.1	6	46.2	4	30.8	4.08
	부산권역	18	0	0.0	0	0.0	4	22.2	8	44.4	6	33.3	4.11
	서울권역	6	0	0.0	0	0.0	3	50.0	2	33.3	1	16.7	3.67
계		87	0	0.0	0	0.0	21	24.1	32	36.8	34	39.1	4.15

용자금 지원사업을 받은 후 산재예방 기여 효과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전체 표본의 76.2%가 용자사업을 지원받은 후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평균 70.14%의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집계되었다. 규모별, 업종별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권역에서 예방효과 없음이 50%로 높게 집계되었다. 세부적인 설문 결과는 다음 <표 2-43>과 같다.

<표 2-43> 용자사업 지원 후 변화 - 산재예방 기여 효과

구분		표본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응답수	응답률 (%)	응답수	응답률 (%)
전체 사업장		87	68	78.2	19	21.8
근로형태	5인미만	28	22	78.6	6	21.4
	5~19인 미만	45	35	77.8	10	22.2
	20인 이상	14	11	78.6	3	21.4
	계	87	68	78.2	19	21.8
업종별	제조업	77	59	76.6	18	23.4
	서비스업	10	9	90.0	1	10.0
	계	87	68	78.2	19	21.8
지역별	경기권역	25	18	72.0	7	28.0
	광주권역	18	14	77.8	4	22.2
	대구권역	7	6	85.7	1	14.3
	대전권역	13	11	84.6	2	15.4
	부산권역	18	16	88.9	2	11.1
	서울권역	6	3	50.0	3	50.0
	계	87	68	78.2	19	21.8

7. 소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 및 분류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와 고용을 이끌고 있는 주요 주체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고용효과, 국제화 전략 등 경제 및 경영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까지 탄생할 정도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고용전략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안전보건정책이나 경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미비하다.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활동 외에 투자할 예산이 없는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이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특히, 50인 미만 업종에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이 기간산업으로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뿌리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뿌리기업 위주로 산업안전보건강화지원책을 우선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5인 미만 : 선박건조 및 수리업(3.38), 도금업(3.22),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2.19)
- 5인~9인 이하 : 도자기·기타요업제품(5.62), 식료품제조업(1.63), 펄프,지류제조업(1.45)
- 10인~19인 이하 : 금속제련업(19.8),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10.9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2.04)
- 20인~29인 이하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10.27), 도자기·기타요업제품(4.77), 전기가스수도업(3.41)
- 30인~49인 이하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1.84), 목재 및 나무제

품제조업(1.61), 고무제품제조업(1.38)

이에 더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 기술지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과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 민간위탁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중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이 지원 규모가 크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두 지원사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효과(최근 10년)

- 5인 미만 사업장 효과 극대화 : 다른 규모에 비해 재해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14년 이후 재해율 감소효과가 점차 커짐
- ※ 5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재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함
- 수혜 사업장의 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 제조·서비스업은 5점 만점에 평균 4.14점, 건설업은 4.18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서비스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조사됨

○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효과(최근 10년)

-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원을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다소 감소
-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해율 감소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전체 재해자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특히, 2017년의 경우 재해율 감소성도가 가장 적으며, 2016년과 대비했을 때, 100.98% 수준으로 재해율이 높아짐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효과 극대화 : 사업 시행 후 재해율이 꾸준히 감소
-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사업장 : 재해율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남
- 수혜 사업장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5점 만점에 4.28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모두 큰 차이는 없음

결과적으로, 재원이 가장 많은 지원사업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이지만,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재해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효율성이 좋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도 살펴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품목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용자 등 금전지원은 비교적 규모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규모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수준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문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 항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비롯하여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포럼(IV장 참고)을 실시하여 설문의 항목을 개발하였다.

설문의 형태는 기존에 문항에 대해 순위나 정도를 파악하는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형태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나, 리커트 척도의 경우 설문 문항 자체보다는, 문항을 대하는 응답자의 정성적인 정도(degree)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으로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는 살펴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설문 문항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태도와 반응 즉, 설문 문항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에 대한 응답 결과보다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보다 깊이 있기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응답자들이 상세하게 이유나 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응답형태의 설문항목(부록 가. 참조)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설문항목과 세 부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조사 항목 및 세부설문

항목	세부설문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인지여부 •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 이유 또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 •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에 대한 실행의 정도 •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항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영역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도 및 준수도에 관한 사항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방법)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인지에 따른 사업운영상의 도움이 되는 부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제하는 항목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영역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이유 또는 노력하지 않는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 또는 직원의 유무 •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 정도 및 준수를 못했을 경우 주어지는 처벌 정도

항목	세부설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이해, 경험, 애로사항 및 필요사업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 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의 인지여부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활동지원 등 정부와 기관의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 •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했을 경우 신청의향 •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 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 중 신청하거나 수혜 받은 경험 여부 •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 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 중 신청한 적 없거나 수혜 받은 후 다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이 현장에 도움(관리 또는 재무 등)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안전보건활동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만족도

2. 설문조사 방법

설문은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 안전보건강화지원의 이해, 경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하였다.

<표 3-2> 설문방법

설문배포 형태	대상	설문 실시 기간	설문이 배포된 사업장수	회수된 설문사업장 및 회수율(%)
온라인 설문 (E-mail 또는 모바일)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2020.11월 9일 ~ 11월 17일	90개소	34개소 (37.8%)

설문대상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신속한 수집과 응답을 위해, 구글설문지(Google forms)를 통해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다. 이후, 대상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의 E-mail과 모바일(SMS 또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온라인 형태로 전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90개소의 사업장에 전달하여 34개소(회수율 37.8%)의 사업장에서 응답되었다.

3. 설문조사 결과

1) 사업장 전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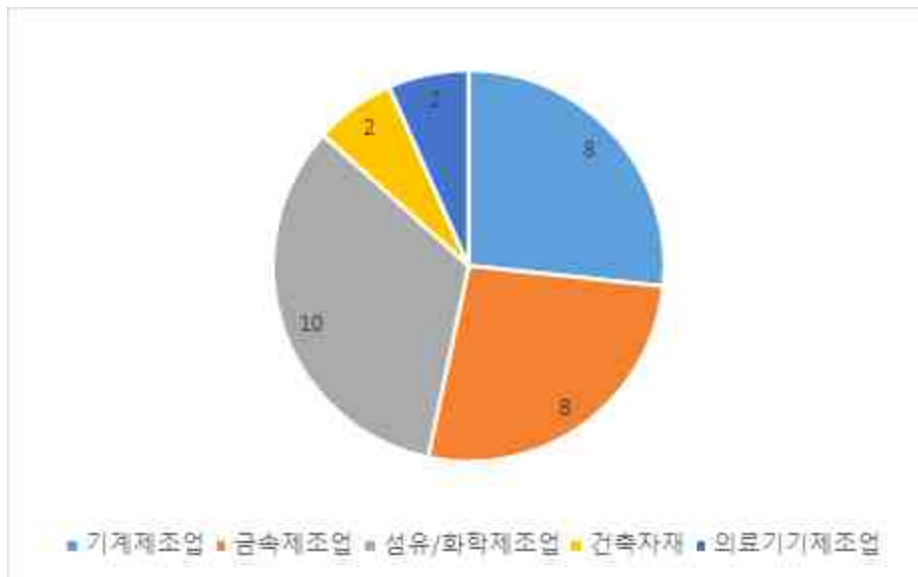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해당 설문대상인 중소기업의 기본정보 관련항목,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에 대한 항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도 및 준수도에 관한 항목, 정부차원의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경험에 관한 항목, 안전보건지원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에 관한 항목 그리고 중소기업의 규모별 매출액에 따른 설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본정보

중소기업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항목에는 제조산업의 종류, 주요 생산품, 사업장 규모, 연간 매출액 사업장 주요 소재 지역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산업의 종류

회수된 설문 34부의 제조산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섬유/화학제조업’이 전체 1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제조업’과 ‘섬유/화학제조업’이 10건(27%)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의료기기제조업’이 8건(7%) 그리고 ‘건축자재업’이 2건(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제조산업 종류

나) 사업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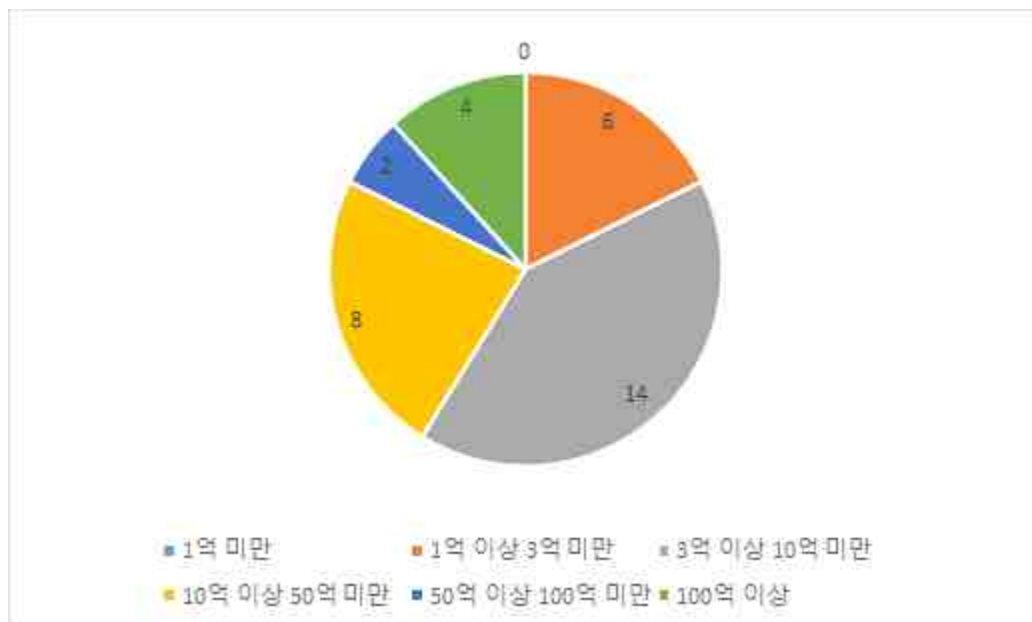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이 전체의 24건(70%)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6건(18%), ‘5인 미만’ 사업장이 4건(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제조산업 규모

다) 최근 사업장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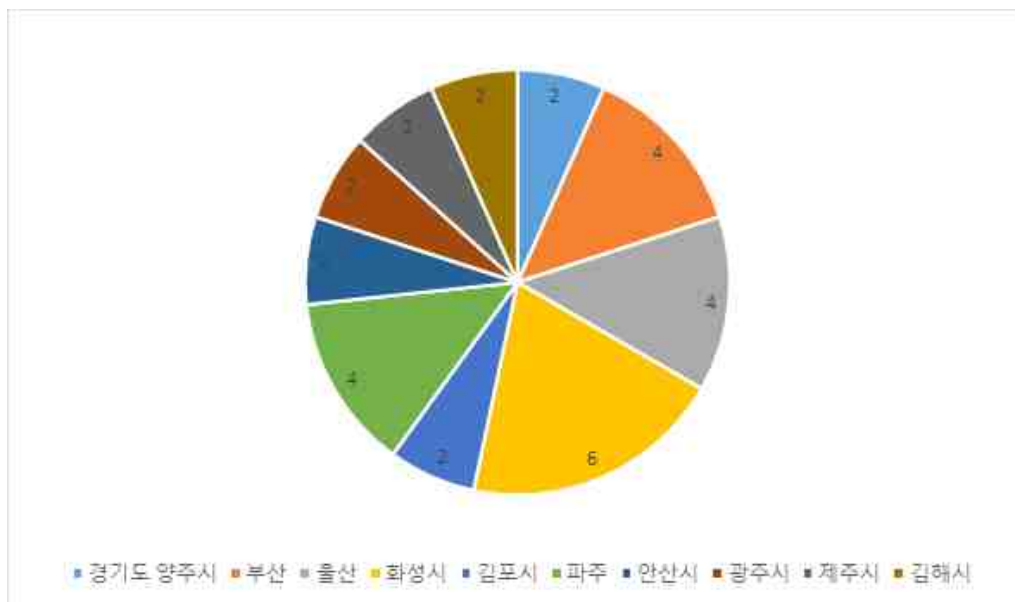
최근 사업장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이 ‘3억 이상 10억 미만’ 이 전체의 14건(41%)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8건(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매출액별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의 결과와 같다.



[그림 3-3] 사업장 연간 매출액

라) 현재 사업장의 주요지역(소속 시 단위)

현재 사업장 주요지역(소속 시 단위)은 [그림 3-4]와 같이 ‘화성시’가 6건(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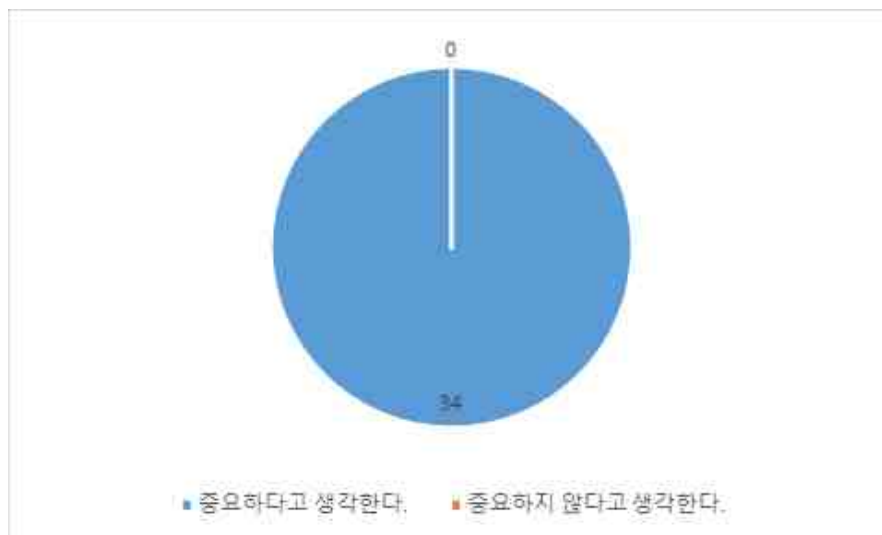
[그림 3-4] 사업장 소속 지역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 여부와 이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항,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 시 하는 관리 항목 그리고 안전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영역에 관한 항목으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의 중요성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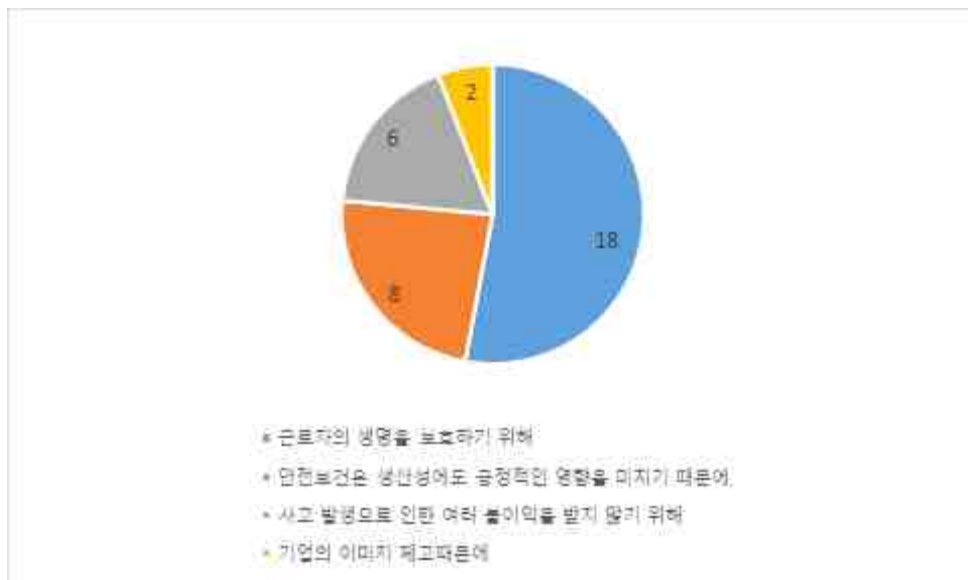
회수된 설문 34부를 분석한 결과 본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래 [그림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과 의지는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본 설문의 결과만으로 비춰봤을 때 안전보건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의 중요성 인지 여부

나)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 이유

앞서 설문지 결과에서 [그림 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지 응답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18건(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8건(23%), ‘사고 발생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가 6건(18%)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때문에’ 가 2건(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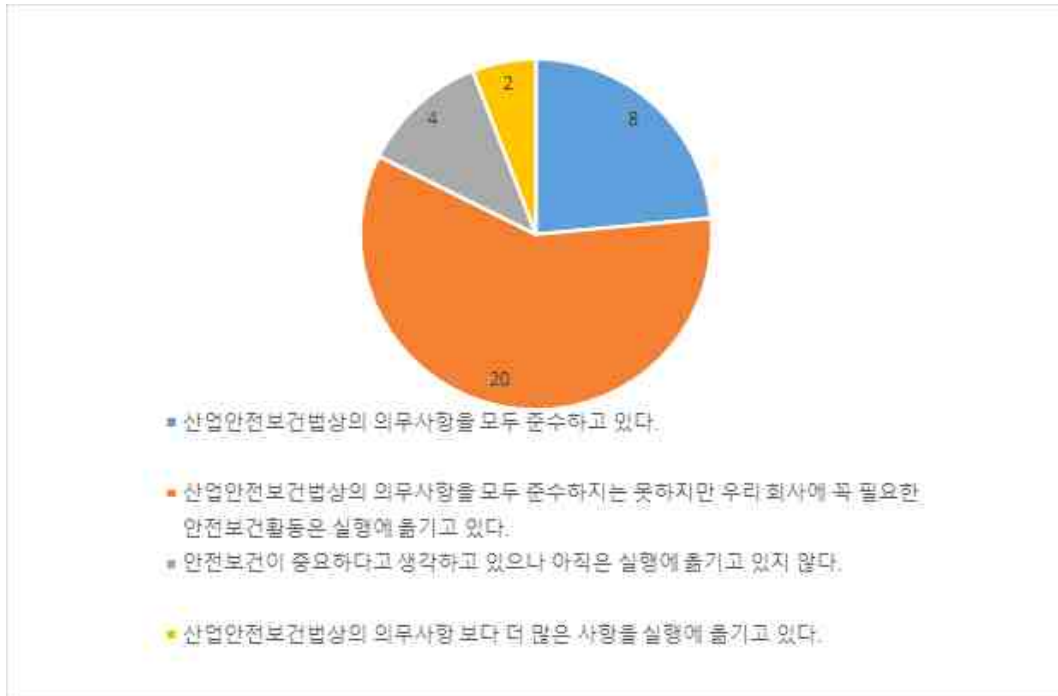


[그림 3-6]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 이유

다)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사항

앞서 설문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지 응답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7]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은 실행에 옮기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건(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8건(23%)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은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다’ 가 4건(1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 보다 더 많은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건(6%)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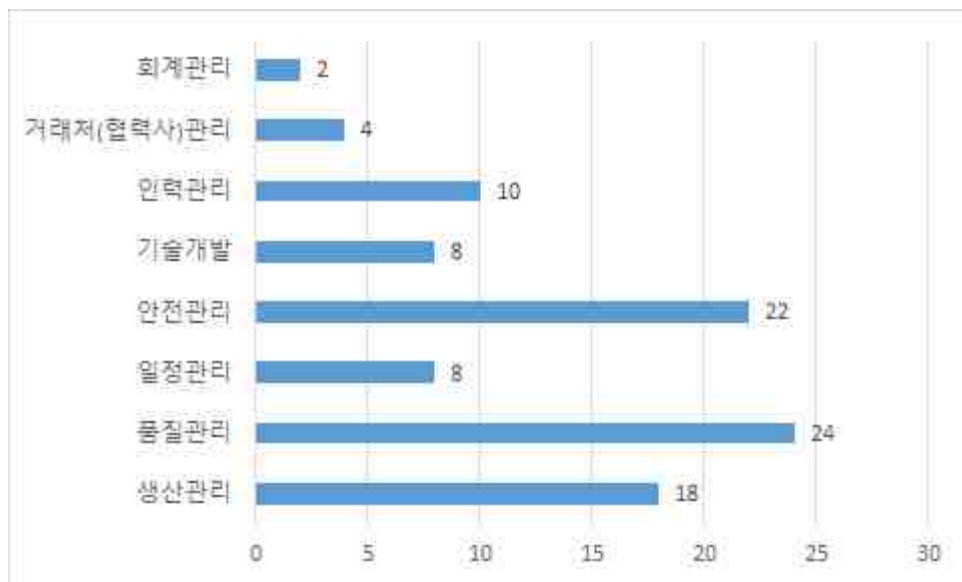
설문결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준수(8건(23%))하거나 그 이상을 실행에 옮기는 비율(2건(6%))은 10건(2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문결과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34건(100%)),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18건(53%))이라고 응답한 것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실행에 잘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안전보건을 위한 실행하고 있는 사항

라)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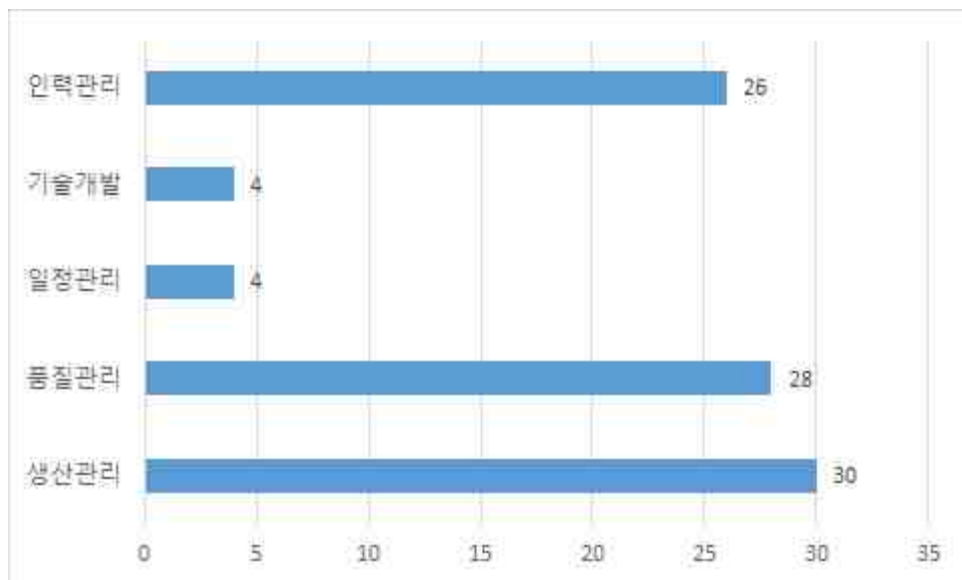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과 관련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8]과 같이 ‘품질관리(2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생산관리’, ‘인력관리’, ‘일정’ 및 ‘기술개발’, ‘거래처 관리’ 그리고 ‘회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사업장 운영에 중요한 관리 항목

마)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영역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관련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9]와 같이 ‘생산관리(3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품질관리(28)’, ‘인력관리(26)’, ‘기술개발(4)’ 및 ‘일정관리(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관리’, ‘품질관리’, ‘인력관리’의 경우 ‘기술개발’과 ‘일정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와 비교적 연관성이 있음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생산관리’의 경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을 위한 작업수칙 및 매뉴얼을 잘 준수하는 것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문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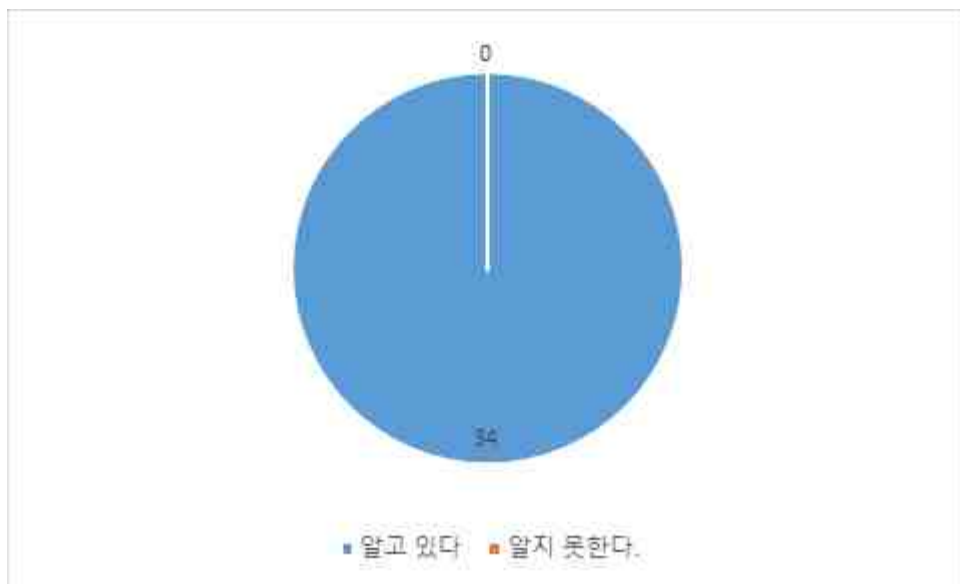
[그림 3-9]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영역

(3)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관한 항목으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 여부

회수된 설문 34부를 분석한 결과 본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래 [그림 3-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모두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0]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여부

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

앞서 설문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지 응답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설문지 결과는 [그림 3-11]과 같이 ‘공문, 우편, 이메일 등 공공기관의 전달을 통해’라는 응답이 12건(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을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건(29%),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 언론 등 홍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6건(18%), 그 밖에 ‘관계자의 직접방문’, ‘처벌사례를 듣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가 각각 2건(6%)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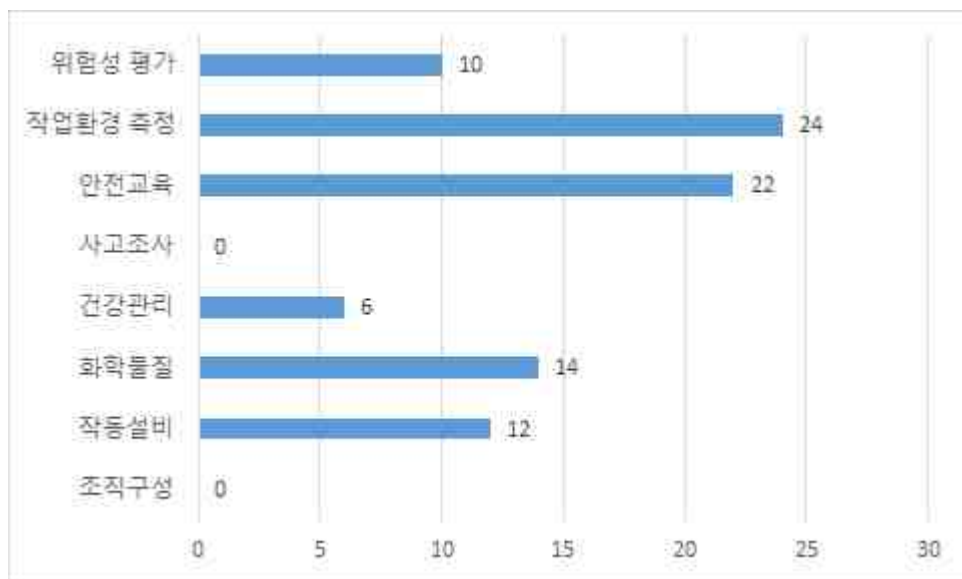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있을 경우 사업장 운영에 도움 되는 부분 앞서 설문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사업장 운영에 어떤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 [그림 3-12]와 같이 ‘각종 불이익(과태료, 작업중지)등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각각 12건(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 준수 및 이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건(18%), 그 밖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와 ‘근로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건(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시 이점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제하는 항목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는 항목 대한 설문 [그림 3-13]과 같이 ‘작업환경 측정(24)’이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안전교육(22)’, ‘화학물질(14)’, ‘작동설비(12)’, ‘위험성 평가(10)’, 그리고 ‘건강관리(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는 보건측면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안전측면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해 실행에 많이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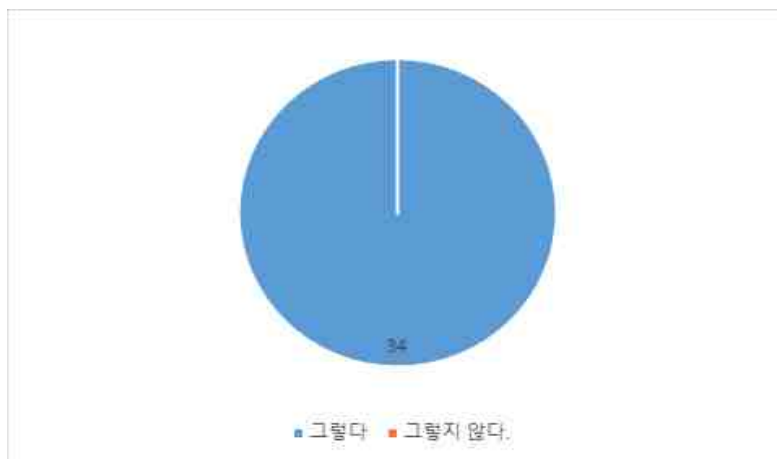
[그림 3-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하는 항목

(4)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사항의 사업장 준수 노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 또는 직원의 유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통해 바라는 혜택, 산업안전보건법의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의 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노력 여부

회수된 설문 34부를 분석한 결과 본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래 [그림 3-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장에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4]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노력 여부

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이유

앞서 설문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지 응답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요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 [그림 3-15]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건(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불이행으로 인한 각종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건(29%),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생산 및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응답’이 각각 2건(6%)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이유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관리하는 부서나 직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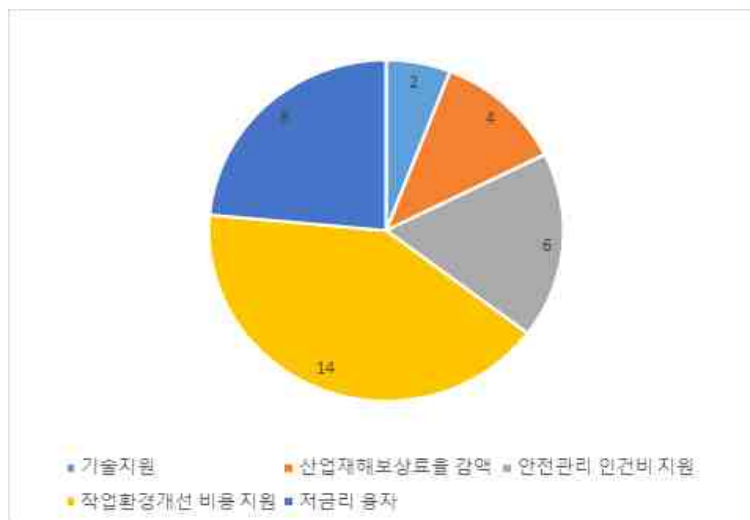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그림 3-16]과 같이 ‘위탁을 주고 있다’라는 응답이 20건(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원은 있으나 부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건(23%), 그 밖에 ‘대표자가 담당’, ‘모두 있다’, ‘무응답’이 각각 2건(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관리하는 부서가 없거나 위탁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16] 산업안전보건법 전담부서 및 직원 유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할 경우에 대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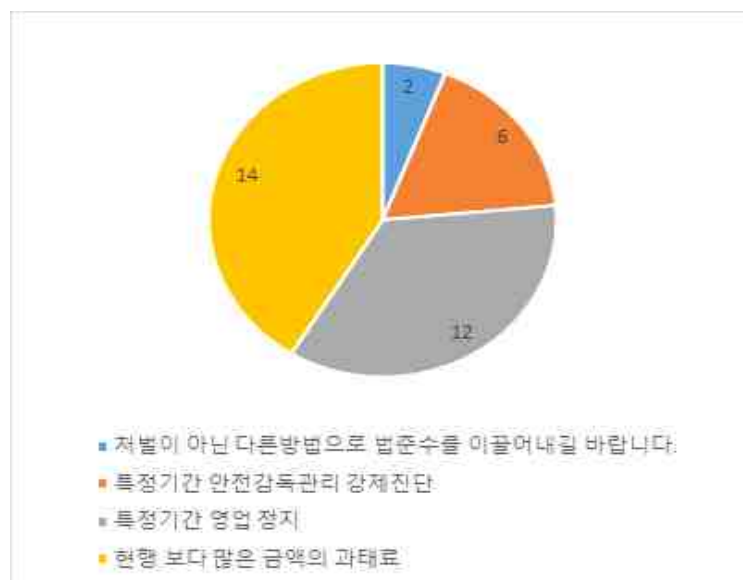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였을 경우 우수기업지원혜택이 주어질 경우 원하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 [그림 3-17]과 같이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이 14건(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금리 융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건(23%), 그 밖에 ‘안전관리 인건비 지원’이 6건(18%), ‘산업재해보상료율 감액’이 4건(12%), ‘기술지원’ 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혜택으로 원하는 것은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14건(41%))’ 과 ‘저금리 융자(8건(23%))’ 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도도 높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가 사업장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실행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시 요구혜택

마)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시 처벌 정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 정도일 경우에 잘 준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그림 3-18]과 같이 ‘현행 보다 많은 금액의 과태료’라는 응답이 14건(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기간 영업 정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12건(35%), 그 밖에 ‘특정기간 안전감독관리 강제진단’이 6건(18%)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 준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로 2건(6%)을 차지하였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했을 때의 혜택에 금전적인 혜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처벌의 정도에서도 금전적인 제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혜택이든 처벌이든 금전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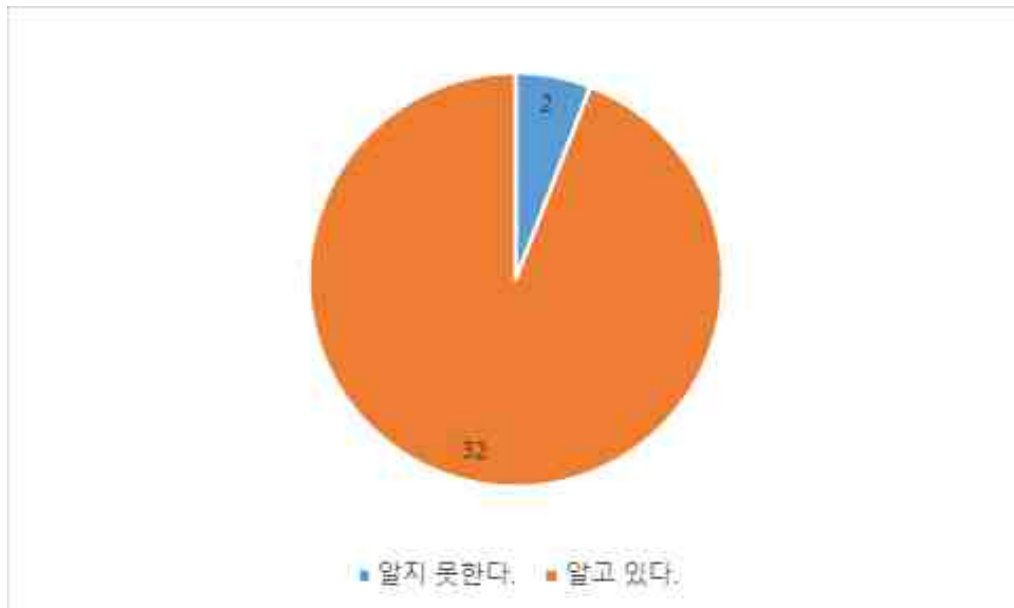
[그림 3-18]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시 처벌

(5)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이해 및 경험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이해 및 경험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기술지도, 클린사업장, 융자 등)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보건지원활동 사업을 알게 된 경위나 경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장, 융자 등) 중 신청하거나 수혜 유무, 신청한적 없거나 수혜 후 다음부터 신청하지 않는 이유, 신청 및 수혜를 받은 경우 만족도,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이 현장 관리적으로나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유무,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 형태, 안전보건지원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항목으로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 인정, 교육, 기술지도, 클린사업장, 용자 등)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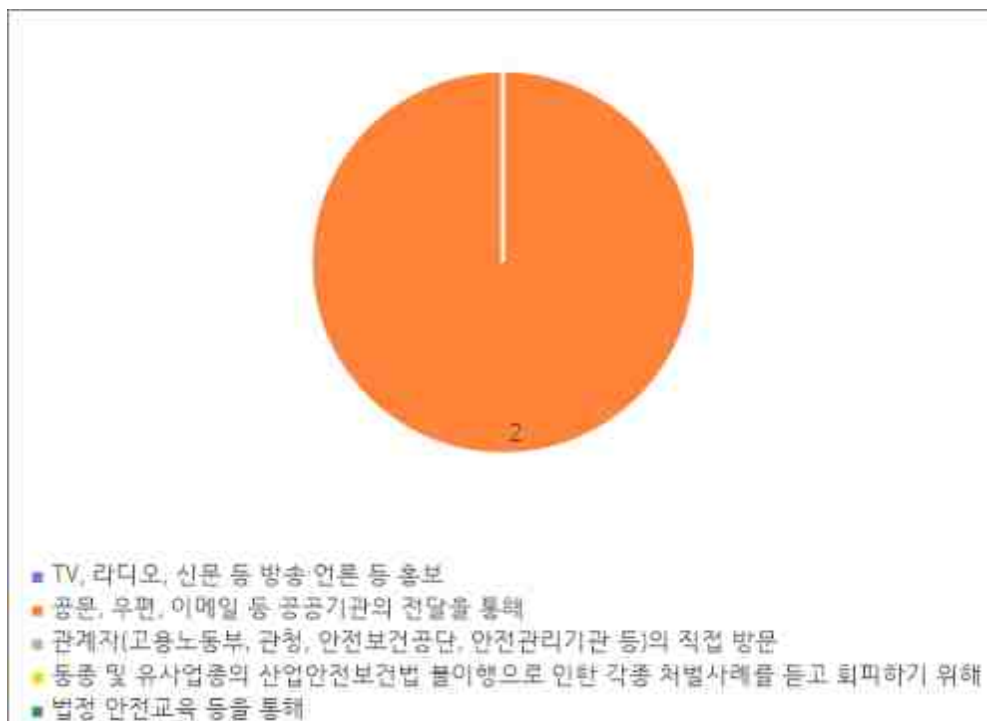
회수된 설문 34부를 분석한 결과, 먼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기술지도, 클린사업장, 용자 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그림 3-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한 중소기업 사업주들 가운데 32건(94%)은 알고 있고, 나머지 2건(6%)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이해 및 경험

나) 지원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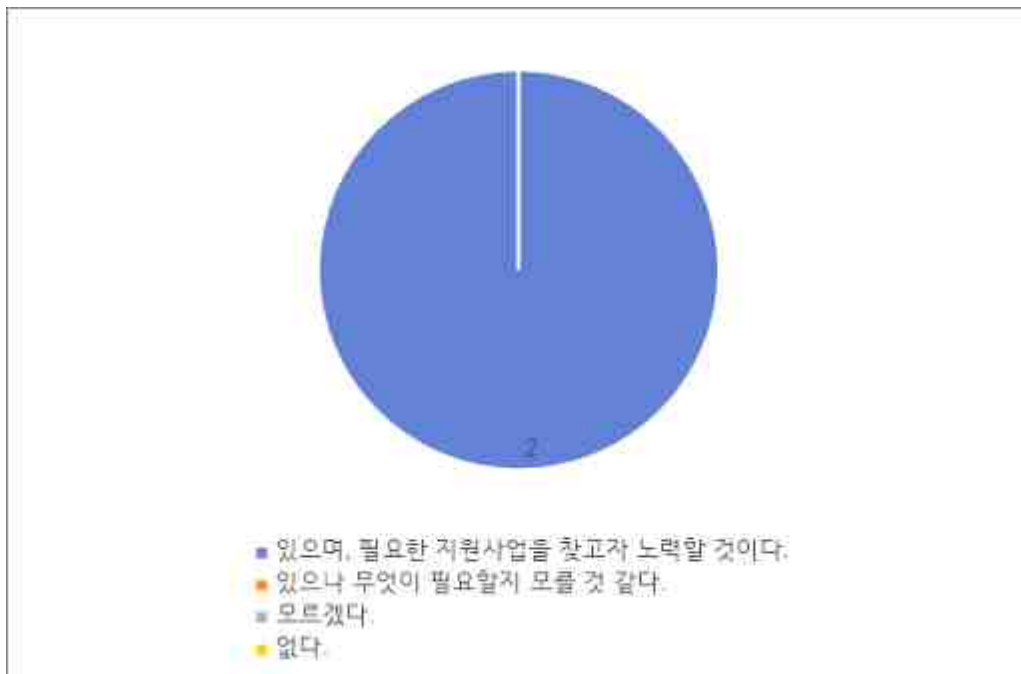
가)문항에서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2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활동지원 등 정부와 기관의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음 [그림 3-20]과 같이 공문, 우편, 이메일 등 공공기관의 전달을 통해 사업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20]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 방법

다) 지원사업을 알았을 경우의 신청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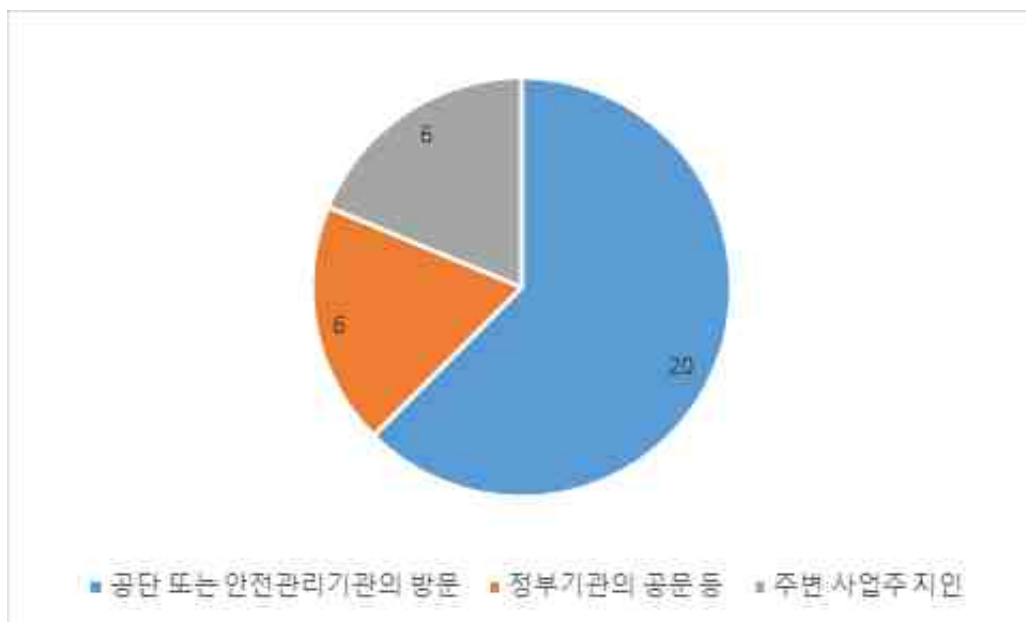
지원사업을 미리 알았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그림 3-21]과 같이 신청할 의향이 있으며,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21] 지원사업을 알았을 경우 신청 의향

라)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위나 경로

앞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94%)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를 알게 된 경위나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림 3-22]와 같이 ‘공단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방문’이라는 응답이 20건(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기관의 공문 등’과 ‘주변 사업주 지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건(19%)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마)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의 신청 및 수혜 경험 유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 중 신청하거나 수혜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에 [그림 3-23]과 같이 ‘여러 번 수혜를 받았으며, 계속 신청하고 있다’와 ‘한 두 번 수혜 받았지만 지금은 신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각각 10건(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들어본 적만 있고 신청한 적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건(25%)로 나타났고, 그 밖에 ‘신청은 해봤으나 수혜 받지를 못했다’가 4건(13%)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신청 및 수혜 경험 유무

바) 신청한 적이 없거나 수혜 후 신청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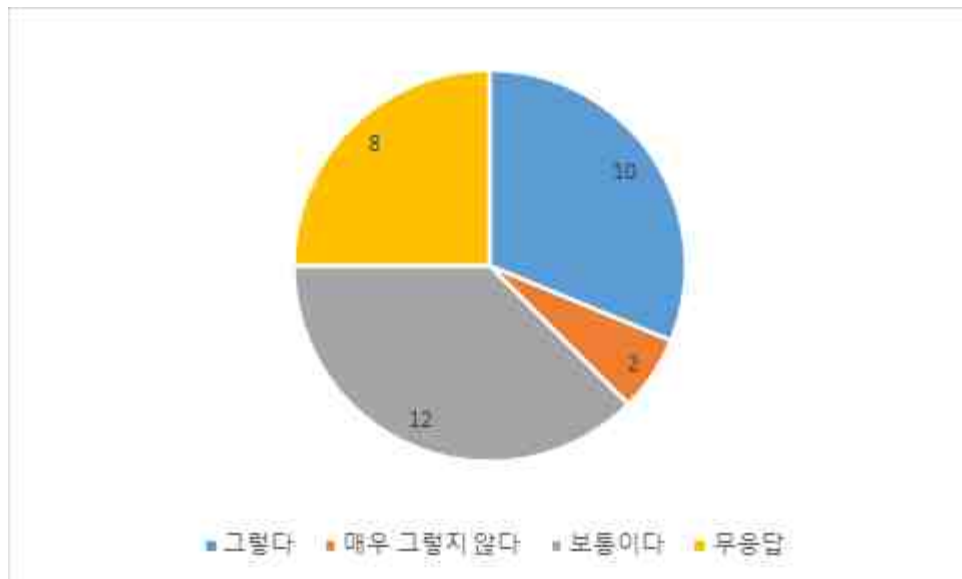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수혜 후 다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에 [그림 3-24]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품목이나 기술지도) 지원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2건(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응답’ 비율이 10건(31%)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지원서류, 접수 등 신청이 복잡하고 많아서’가 6건(19%), ‘중개자의 부도덕성(모럴해저드)’와 ‘지원자격, 대상 등 사업내용설명이 어려워서’가 각각 2건(6%)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통해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있다하더라도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거나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진다.



[그림 3-24]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혜 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 신청 및 수혜 받은 후 만족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용자 등)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수혜를 받은 후 만족하느냐에 대한 설문에 아래 [그림 3-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건(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가 10건(31%), ‘무응답’이 8건(25%), ‘매우 그렇지 않다’가 2건(6%)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신청 및 수혜 만족도

아) 지원사업이 현장관리 및 재무적 측면에서의 도움 여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이 현장관리적으로나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설문에 [그림 3-26]과 같이 ‘기업 생산성 향상 및 재무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10건(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응답’ 비율이 8건(25%)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둘 다 도움이 되었다’가 6건(19%), ‘현장관리에만 도움이 되었다’가 4건(13%),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4건(13%)로 나타났다.



[그림 3-26] 현장관리 및 재무적 측면에서의 도움 여부

자)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 대상기업과 향후 지원되는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그림 3-27]과 같이 ‘기업 재정성이 부족한 기업에게 재정지원 형태로’라는 응답이 14건(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처음인 기업에게 재정 및 지도지원 형태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건(29%)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안전보건활동을 시도했으나 미진한 기업의 재정 및 개선 형태로’가 6건(18%), ‘안전보건활동이 훌륭한 기업의 인센티브 형태로’가 4건(12%)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차)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그림 3-28]과 같이 ‘소액지원(1억원 이하)으로 많은 기업에게’라는 응답이 20건(59%)으로 ‘고액지원(1억원 이상)으로 소수기업에게’라는 응답이 14건(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서로 잘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서로 더욱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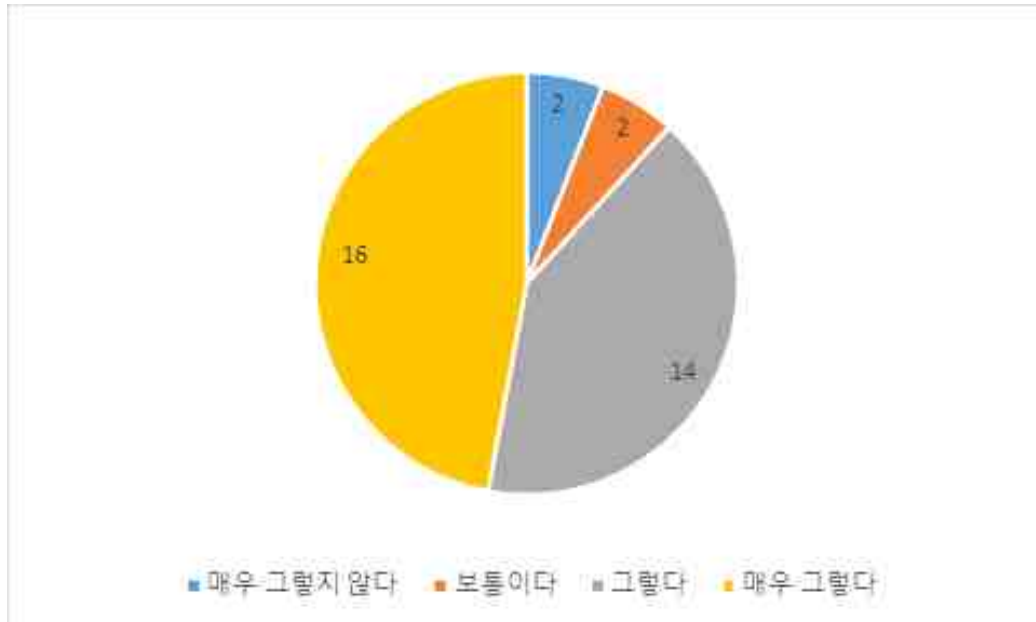
[그림 3-28]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

(6)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기술지도, 클린사업장, 용자 등)의 필요성 여부, 중소기업 안전보건향상을 위해 제일 필요한 부분,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중 필요한 사항, 지원 받은 후 안전보건활동이 계획기준에 비교하여 미비할 경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위 정도, 지원 받은 후 안전보건활동이 계획기준에 비교하여 훌륭할 경우 인센티브 수위의 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및 공공행정기관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의 필요성 여부

회수된 설문 34부를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 및 공공행정기관의 안전보건지원사업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그림 3-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한 중소기업 사업주들 가운데 16건(47%)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4건(41%)이며, ‘보통이다’ 와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건(6%)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로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자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필요한 것(20건(88%))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9] 안전보건지원사업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나)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제일 필요한 부분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문 [그림 3-30]과 같이 ‘안전보건활동이 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가 14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원받은 품목의 항목(현금, 현물, 인력 등)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가 8건(24%)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가 8건(23%),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가 4건(12%)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

다)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필요 사항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그림 3-31]과 같이 ‘안전교육’이 28건(3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안전검사 및 진단’이 20건(24%)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작업환경 진단’과 ‘전문화된 기술지도’가 각각 12건(15%)으로 나타났으며, ‘설비교육’이 10건(12%)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필요 사항

라)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중 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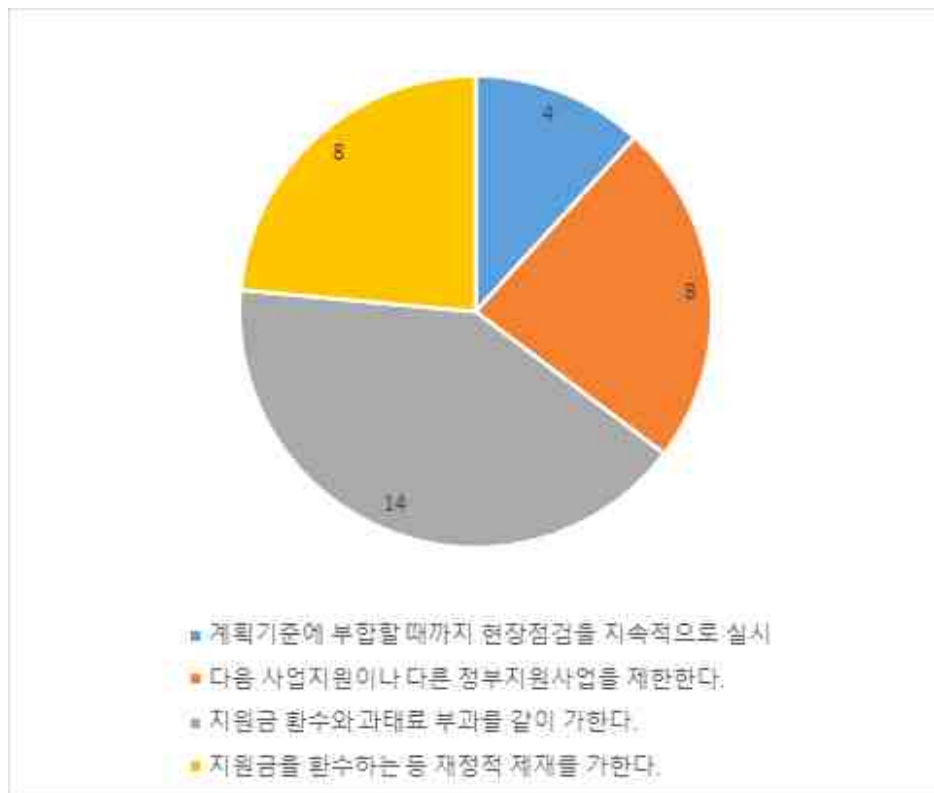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중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예 [그림 3-32]와 같이 ‘현물’이 22건(2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저금리, 장기간 현금 대출’과 ‘안전보건공단 보증(신용, 설비구매 등)사업’이 각각 18건(20%)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산업재해 보험요율 우대’가 16건(17%), ‘안전관리자 선임시 임금 지원’이 12건(13%)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자 선임시 임금 지원’이 6건(6%)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 재정지원 중 필요 사항

마) 지원 받은 후 계획기준에 미비할 경우의 후속 조치 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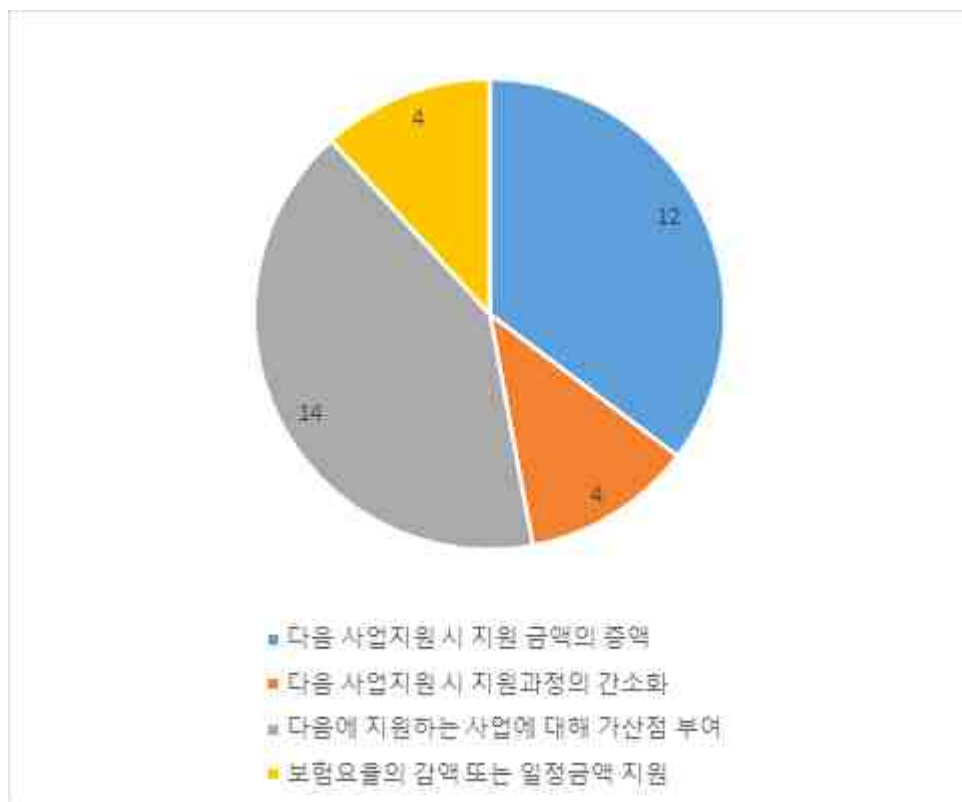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은 후 안전보건활동이 계획기준에 비교하여 미비할 경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위에 대한 설문에 [그림 3-33]과 같이 ‘지원금 환수와 과태료 부과를 같이 가한다’가 14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가 8건(24%)으로 나타났고, ‘다음 사업지원이나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제한한다’가 8건(23%), 그 밖에 ‘계획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지원 후 미비할 경우 후속 조치 수위

바) 지원 받은 후 계획기준에 훌륭할 경우의 인센티브 수위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은 후 안전보건활동이 계획기준에 비교하여 훌륭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의 수위에 대한 설문에 [그림 3-34]와 같이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가 14건(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다음 사업 지원 시 지원 금액의 증액’이 12건(35%)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다음 사업 지원 시 지원 과정의 간소화’와 ‘보험요율의 감액 또는 일정금액 지원’이 각각 4건(12%)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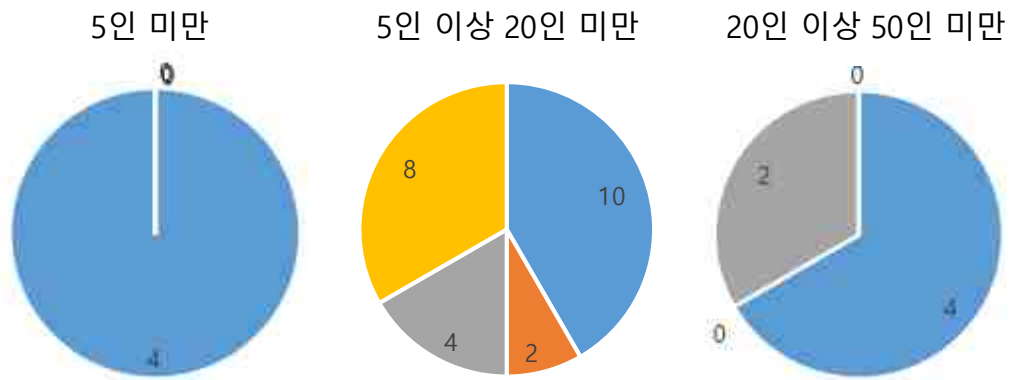
[그림 3-34] 지원 후 훌륭할 경우 인센티브 수위

2) 사업장 규모별 비교분석

중소기업의 법적규제는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지원사업도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규모별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도 중기업과 소기업 차원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결과로부터, 해당 설문대상인 중소기업의 기본정보 관련항목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규모(인원)에 따른 차이를 추가분석하였다. 규모의 분류기준은 5인 미만, 5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확인하였다. 설문항목은 앞서 분석한 설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에 대한 항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도 및 준수도에 관한 항목, 정부차원의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경험에 관한 항목, 안전보건지원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에 관한 항목에 따른 설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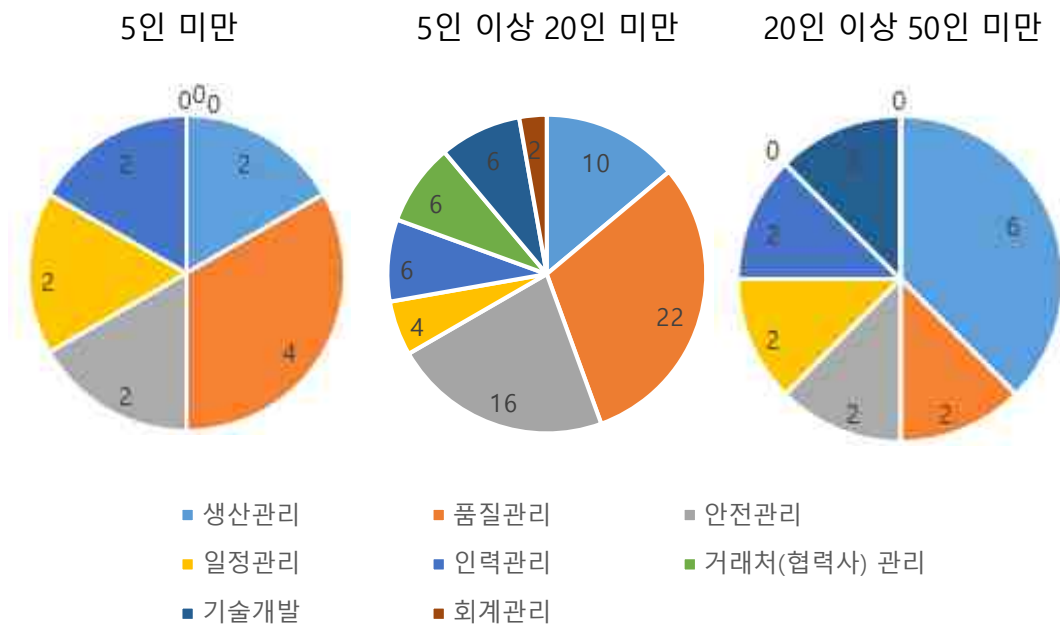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경우, [그림 3-35]와 같이 규모와는 큰 상관없이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 2. 기업의 이미지 제고때문에
- 3. 사고 발생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산재요율 상승, 사업장 재해율 상승, 과태료, 작업중지 등)
- 4. 안전보건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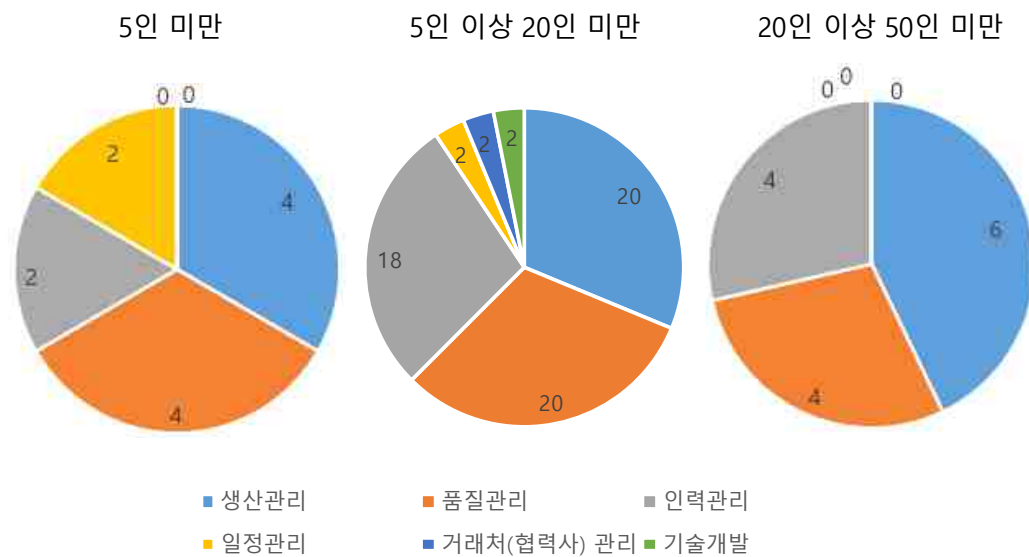
[그림 3-35]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가 중요한 이유

또한, 사업장의 주요 관리항목은 [그림 3-36]과 같이 5인 미만과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품질관리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하는 반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생산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사업장 주요 관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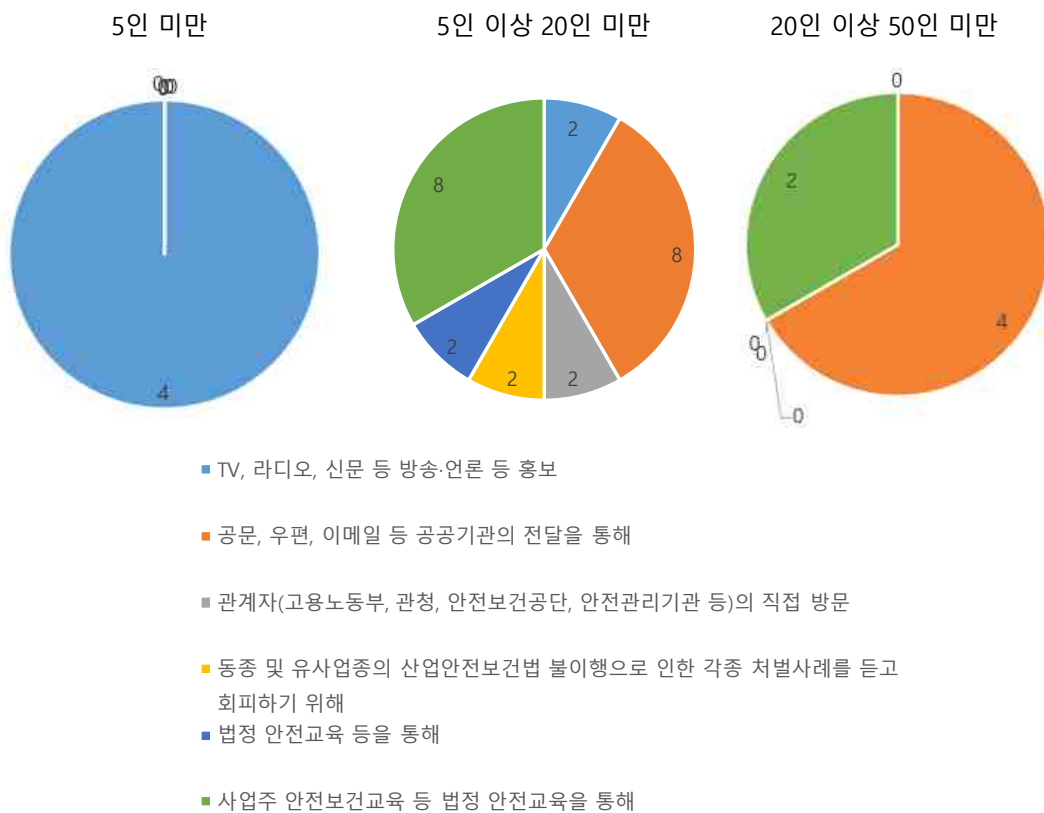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그림 3-37]과 같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생산관리인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품질관리 또한 규모에 상관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37] 안전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관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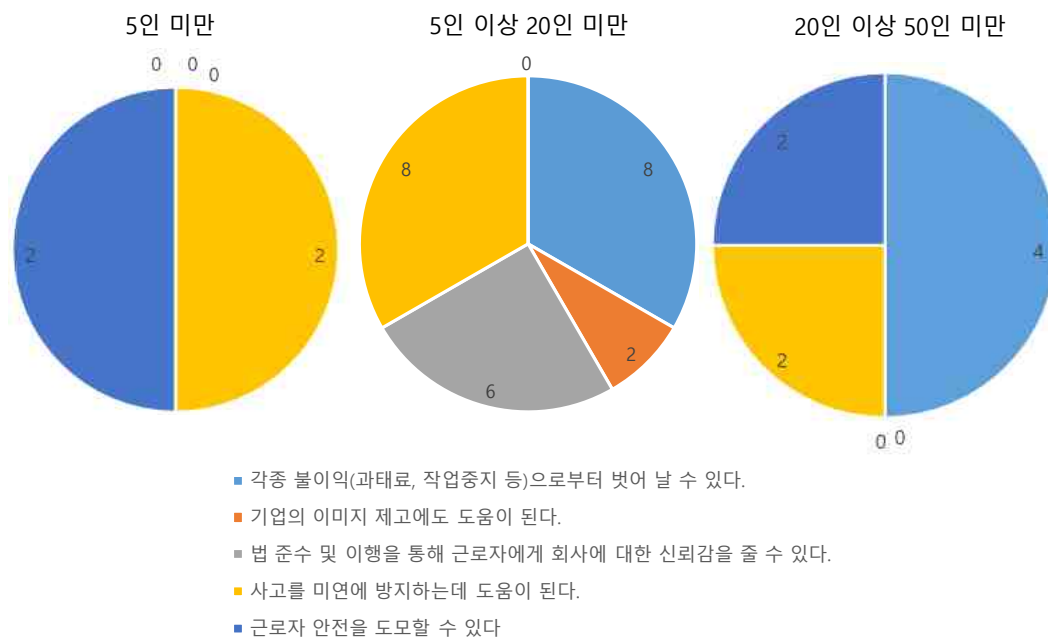
(2)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위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에서 나타나듯이 특히, 5인 미만의 경우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공문, 우편, 이메일 등 공공기관의 전달’ 또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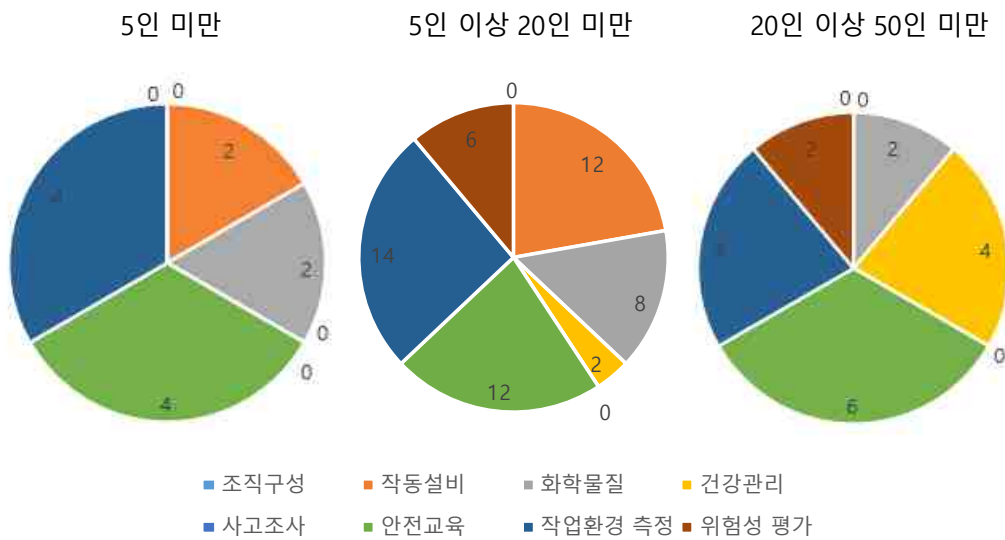
[그림 3-38]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이해한다면 사업장 운영상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그림3-39]에서와 같이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의 경우 사고방지와 근로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각종 불이익(과태료, 작업중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9] 산업안전보건법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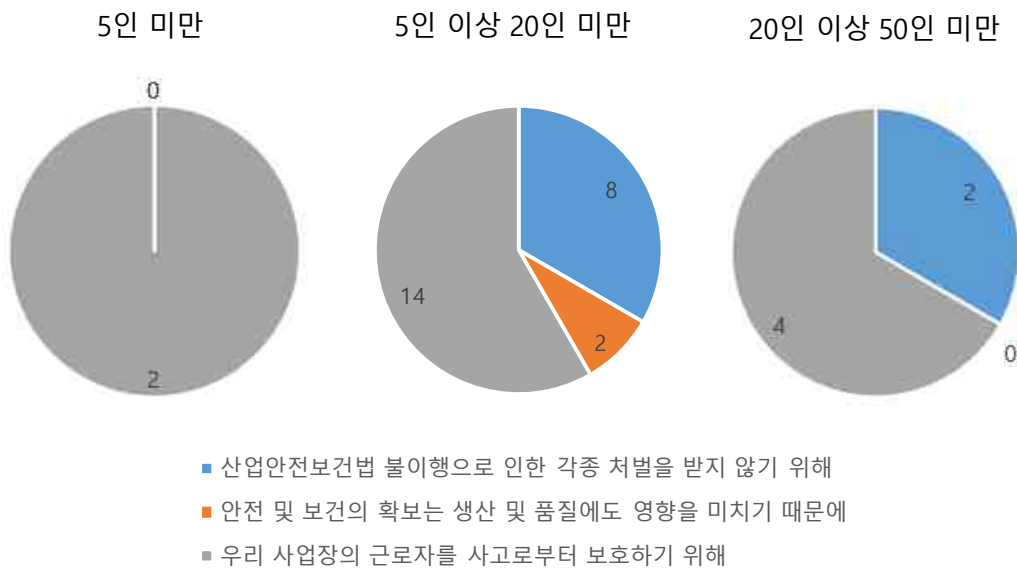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제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림 3-4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작업 환경 및 안전교육에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건강관리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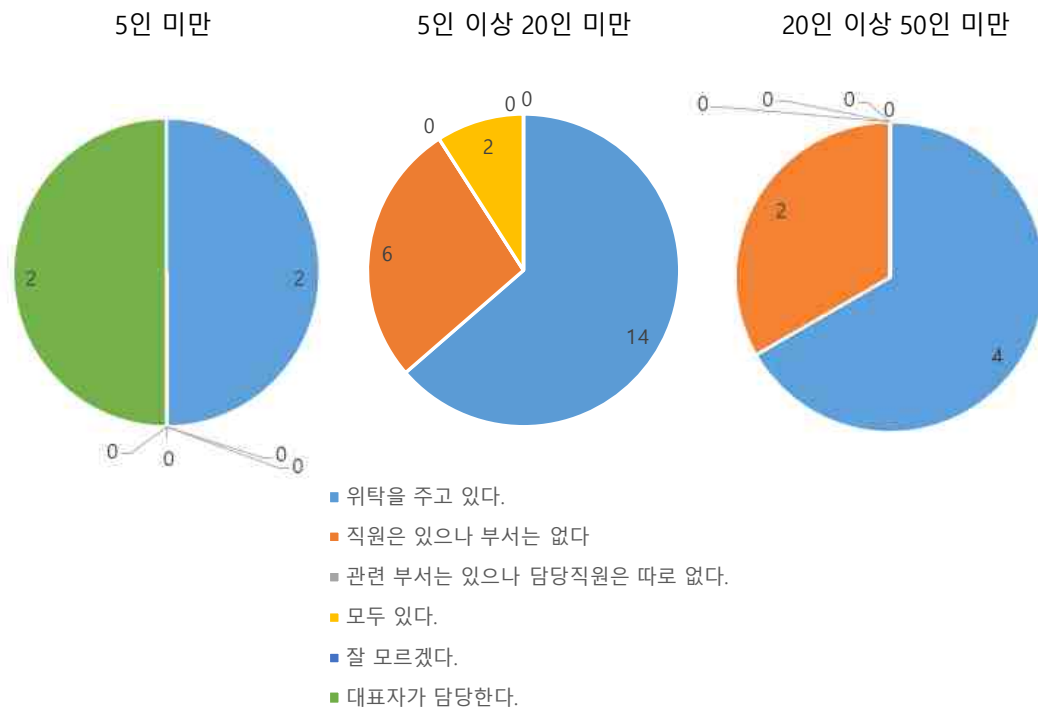
(3)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 3-4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규모에 큰 상관없이 대부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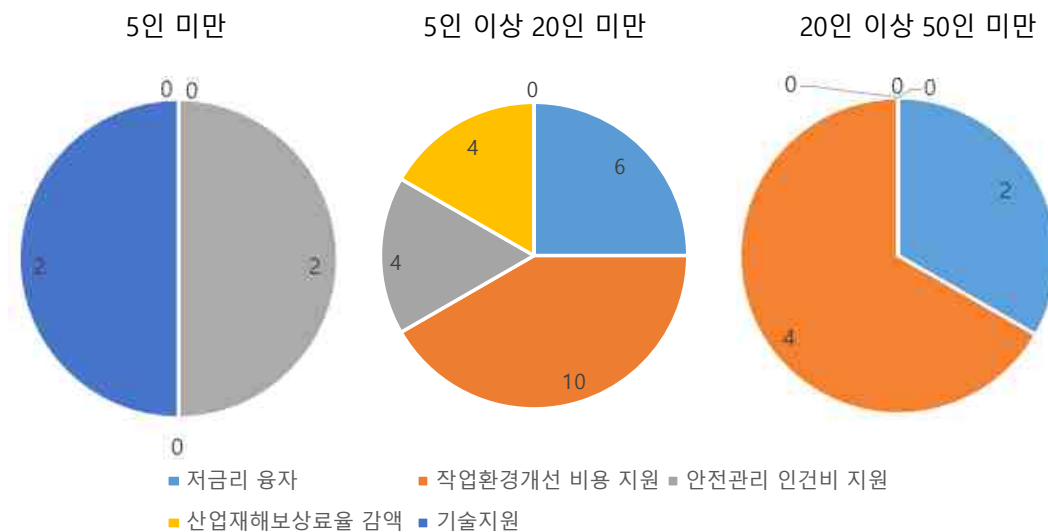
[그림 3-41]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 직원의 유무에서는 아래의 [그림 3-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모에 큰 상관없이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의 경우 대표자가 2건(50%)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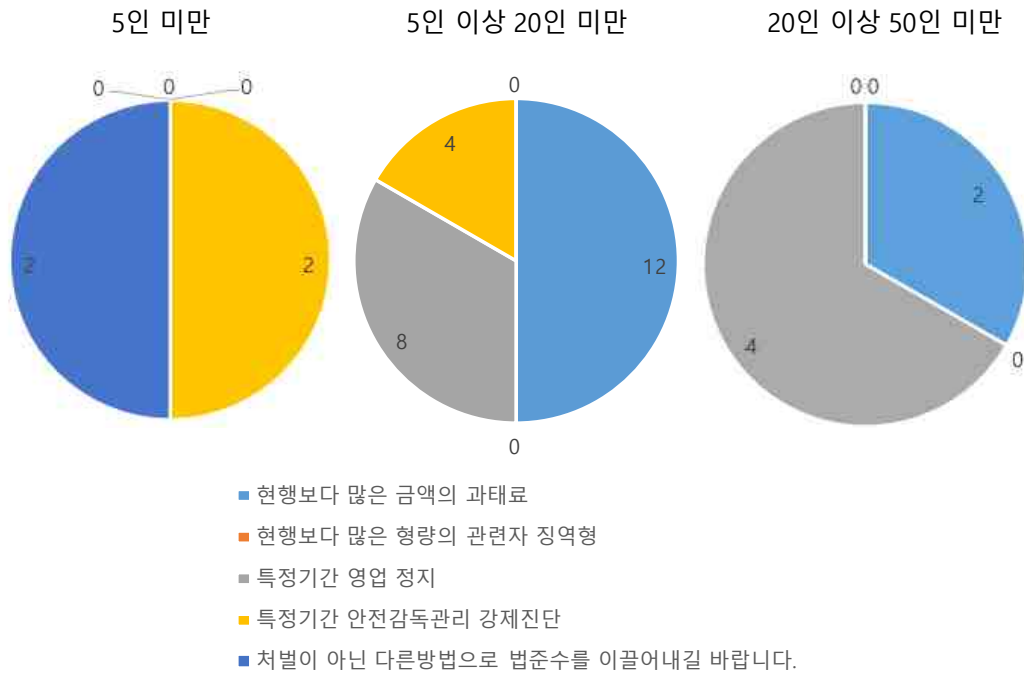
[그림 3-42]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담 부서 및 담당 직원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여 우수기업지원혜택 받을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3-43]에서와 같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의 경우 ‘기술지원’과 ‘안전관리 인건비 지원’을 선호하는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저금리 융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3] 사업주가 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지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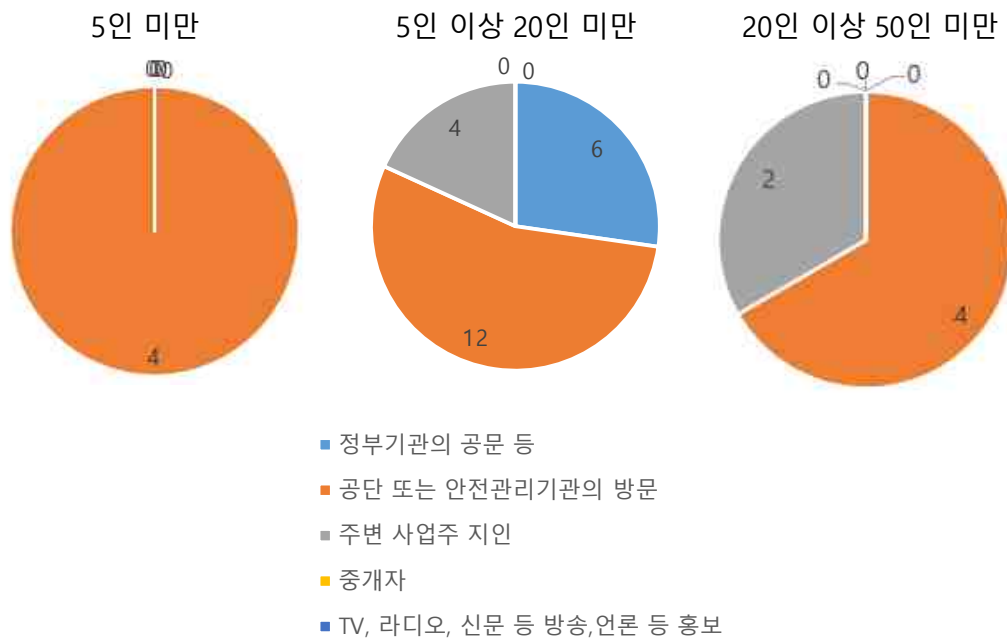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3-44]에서와 같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의 경우 ‘특정기간 안전감독관리 강제진단’과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 준수를 이끌어내기 바라는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특정기간 영업정지’와 ‘현행보다 많은 금액의 과태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따른 처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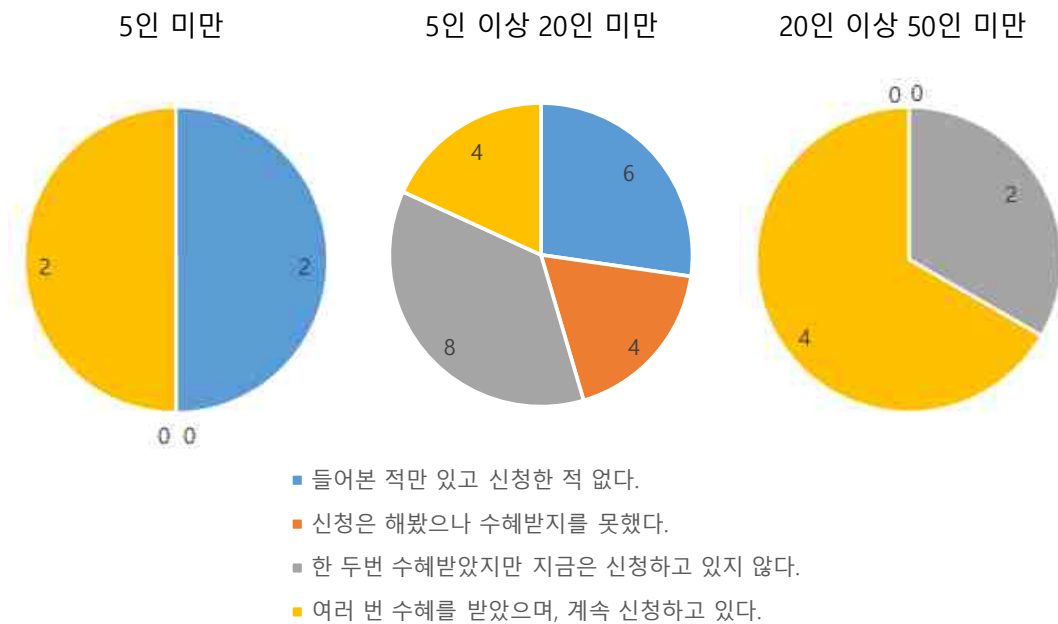
(4) 안전보건지원사업 이해 및 경험

안전보건지원 활동 사업을 알게 된 경위나 경로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 3-45]에서와 같이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공단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방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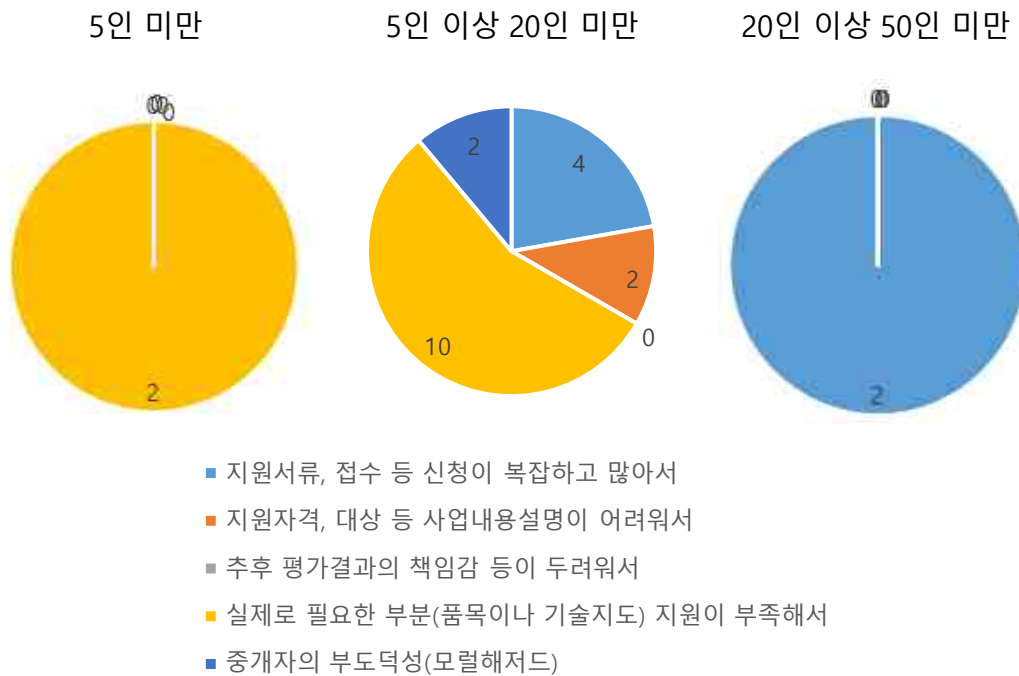
[그림 3-45]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지원 활동 사업을 신청하거나 수혜를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46]에서와 같이 5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여러 번 수혜를 받았으며, 계속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 ‘한두 번 수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신청하고 있지 않다’거나 ‘들어본 적만 있고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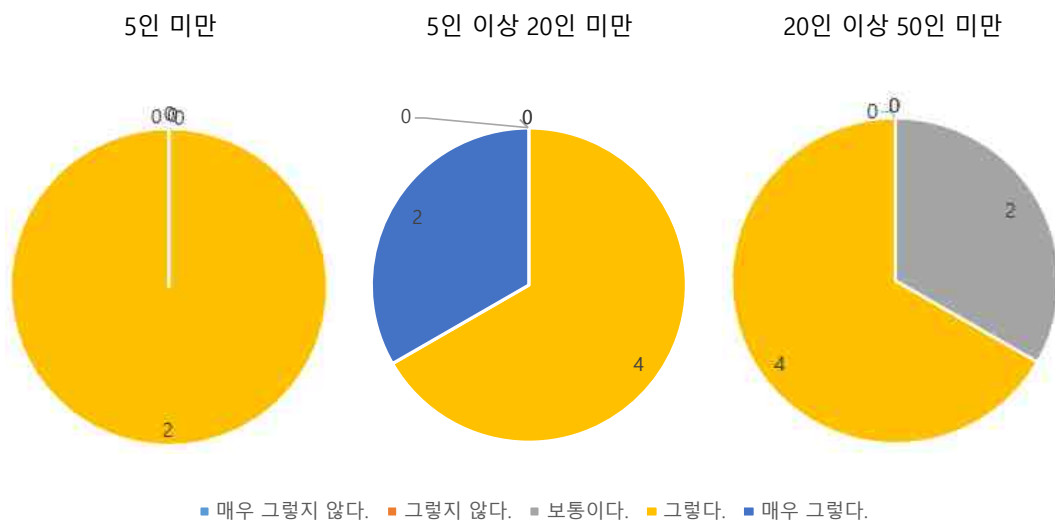
[그림 3-46]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 지원 및 수혜 여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지원 활동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수혜를 받은 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 3-4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부분(품목이나 기술지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며, 반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지원서류, 접수 등 신청이 복잡하고 많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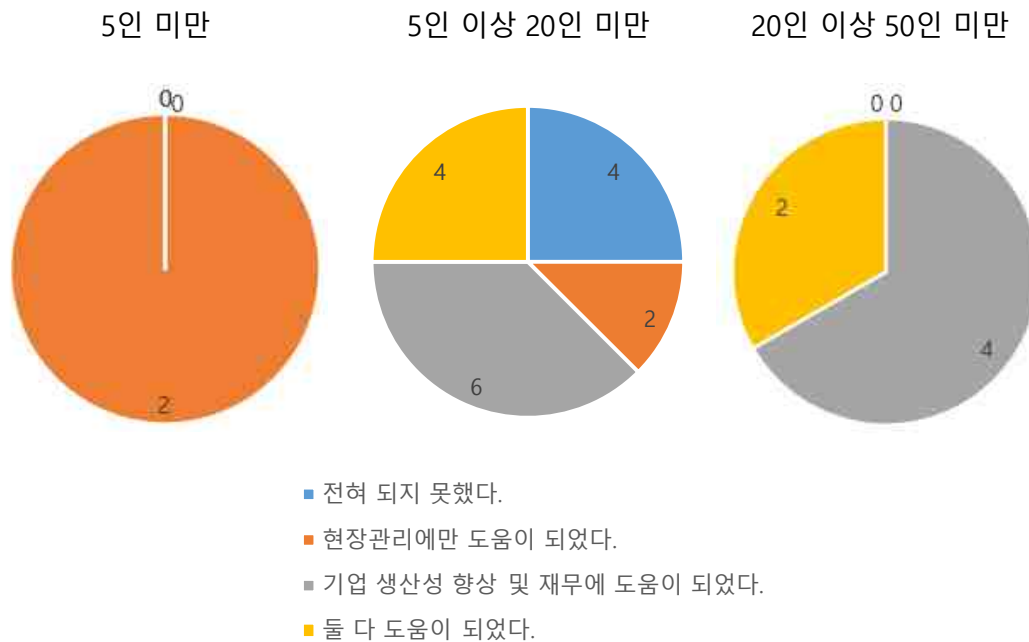
[그림 3-47]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지원 활동 사업을 신청 및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48]에서와 같이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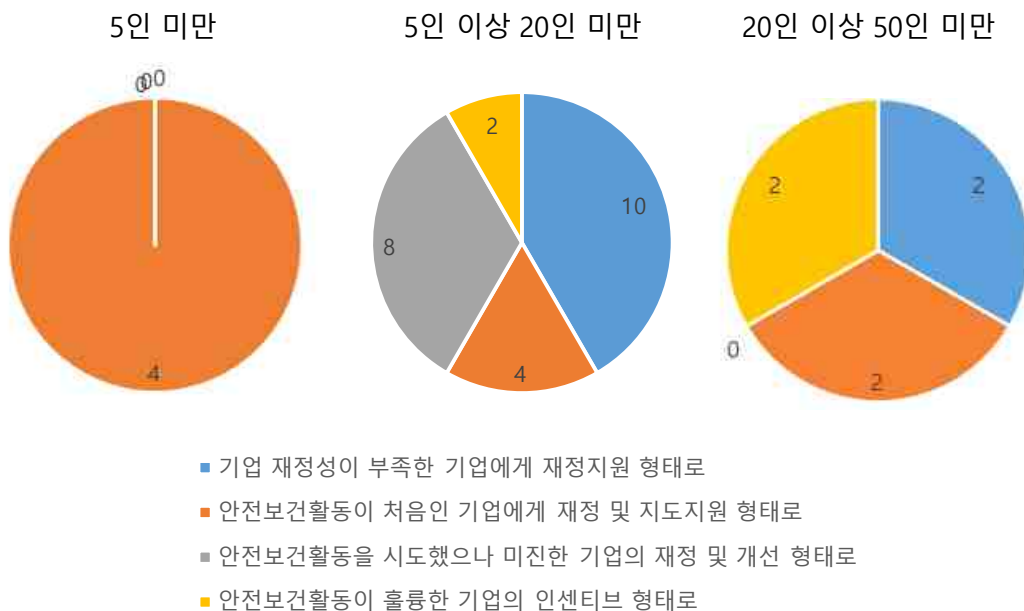
[그림 3-48]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지원 활동 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 융자 등)이 현장관리적,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현장관리에만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한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기업 생산성 향상 및 재무에 도움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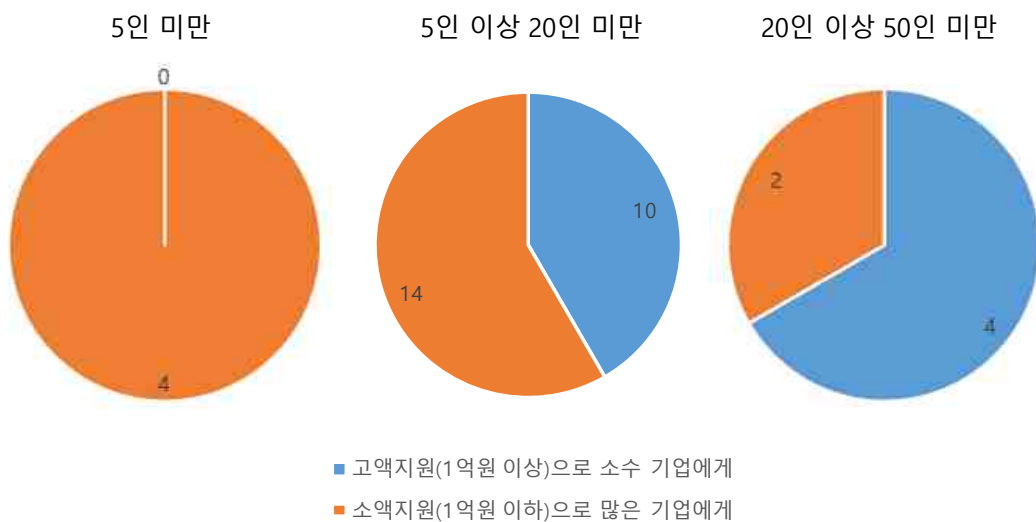
[그림 3-49] 지원사업의 도움 정도

안전보건공단 지원(컨설팅, 용자 등) 대상기업과 지원형태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활동이 처음인 기업에게 재정 및 지도지원 형태’로 응답한 반면 5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기업 재정성이 부족한 기업에게 재정지원 형태’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



[그림 3-50]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과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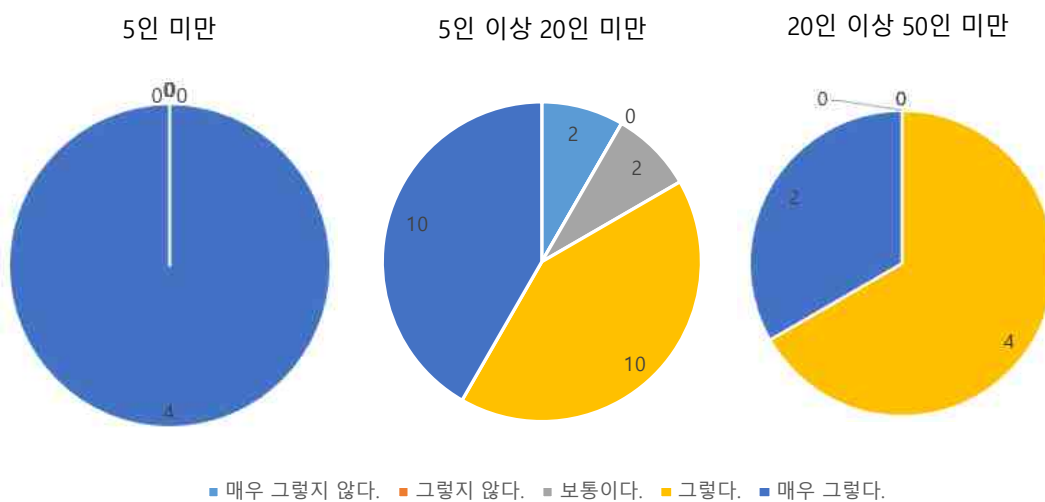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과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 ‘소액지원(1억 원 이하)으로 많은 기업’에게로 응답한 반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고액지원(1억 원 이상)으로 소수 기업’에게가 응답이 높게 나왔다.



[그림 3-51] 지원사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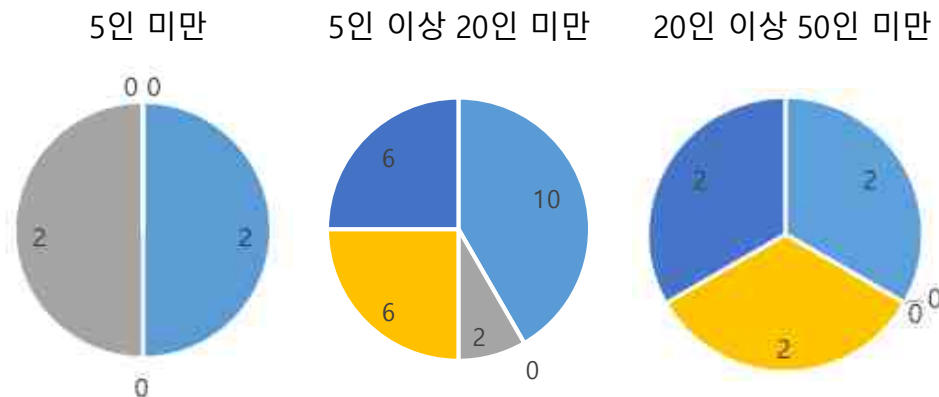
(5) 안전보건지원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정부 및 공공행정기관의 안전보건지원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림 3-5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52] 안전보건지원사업의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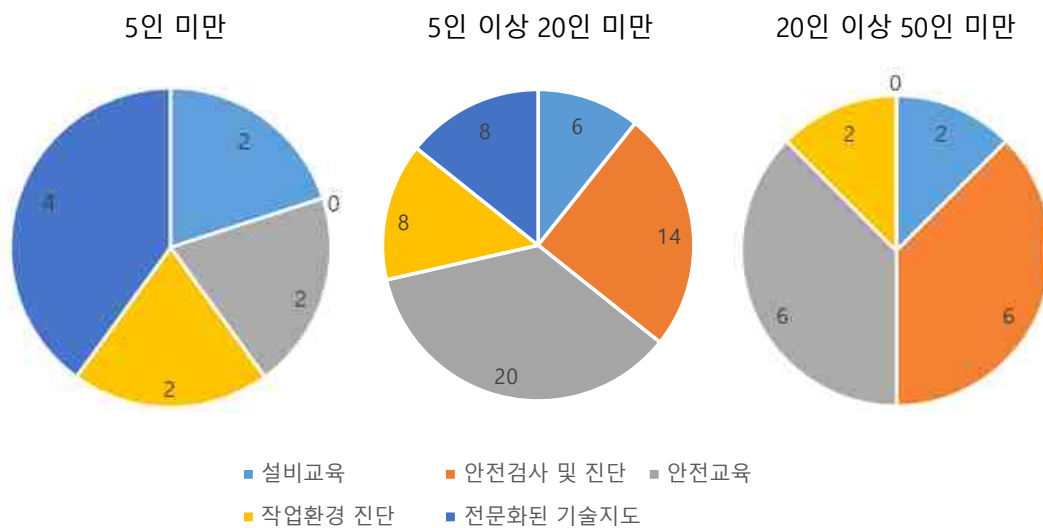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활동이 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지원받은 품목, 항목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보건활동이 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활동을 잘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해야한다.
-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받은 품목,항목(현금, 현물, 인력 등)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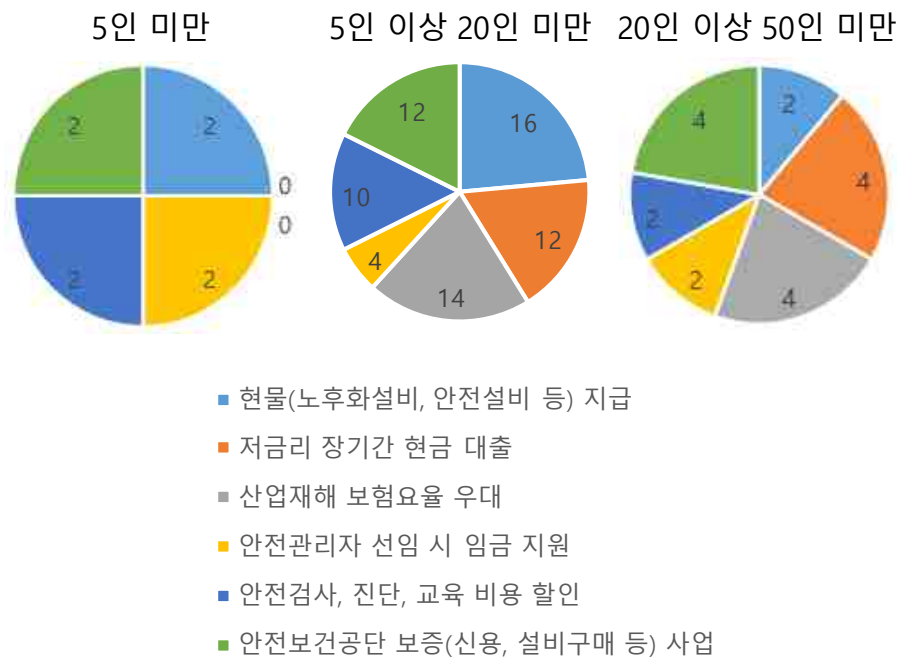
[그림 3-53]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전문화된 기술지도’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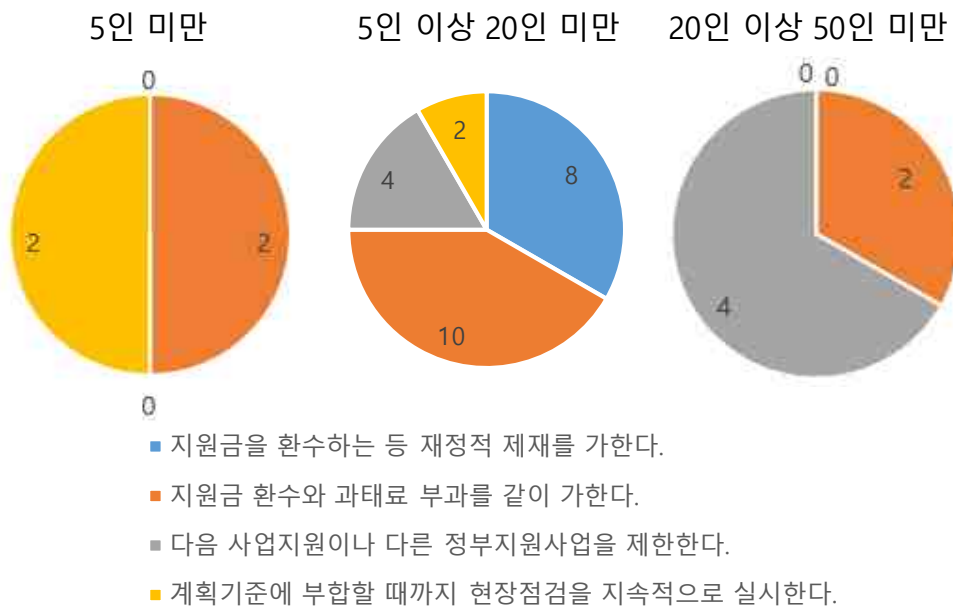
[그림 3-54]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여건상 다양한 부분에서의 재정지원을 골고루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인 이상 20인 미만에서는 ‘저금리 장기현금 대출’을 가장 필요로 하고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현물(노후화 설비, 안전설비 등) 지급’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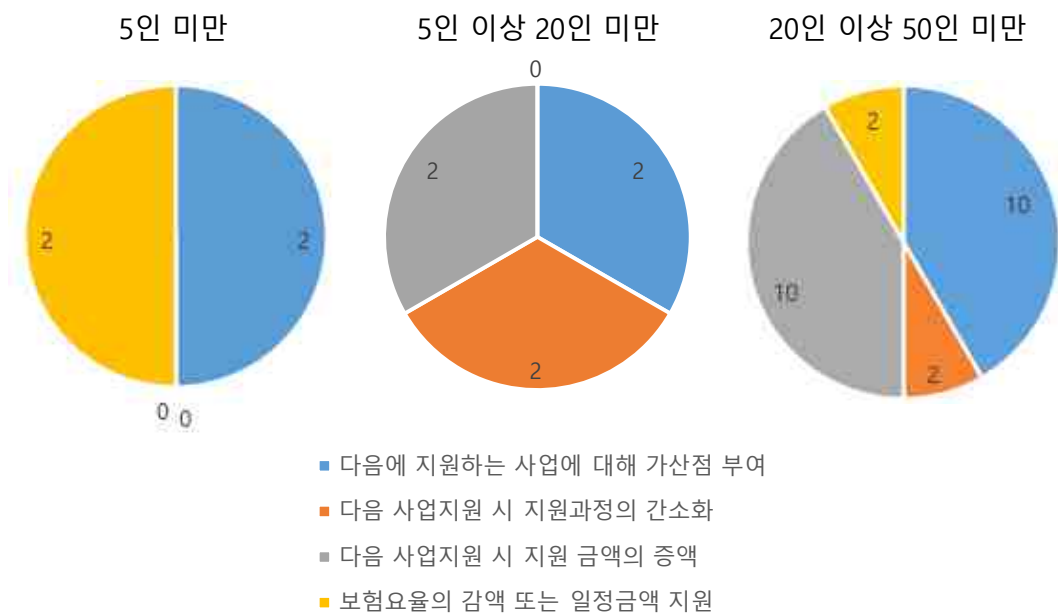
[그림 3-55]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중 필요 사항

안전보건활동 지원을 받은 후 계획기준과 비교하여 미비할 경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위의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지원금 환수와 과태료 부과를 같이’ 하거나, ‘계획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 ‘지원금 환수와 과태료 부과를 같이’ 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다음 사업지원이나 다른 정부 지원사업을 제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6] 안전보건활동의 후속조치 수위 정도

안전보건활동 지원을 받은 후 계획기준과 비교하여 훌륭할 경우 인센티브 수위의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경우 ‘보험요율의 감액 또는 일정금액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나, 5인 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다음 사업지원 시 지원 금액의 증액’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는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3-57] 안전보건활동의 인센티브 수위 정도

(6) 안전보건강화 자유 제언

- 클린사업 등 제한된 제품과 업체는 조정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규모별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확대 희망합니다.
- 보다 많은 교육활동이 필요하고 안전보건지원 사업 범위가 보다 폭넓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장 대표나 안전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이상 의무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공단 대행업체에서 분기별 근로자 안전교육을 한다면 산업재해를 방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 안전공단 저리 자금으로 업체에 꼭 필요한 설비라면 지정된 품목에 관계없이 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처벌되고 누구는 운 좋게 안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품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은 여건 상 모든 부분이 열악하여 정부, 기관의 교육이 필요함. 교육, 담당 인원 지원이 필수적으로 병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동화기기 교체와 관련된 제품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소기업 재정지원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4. 소결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도 및 준수도,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와 중소기업 규모(인원)에 따른 각 설문 항목별 차이점을 토대로 한 소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 및 의지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안전보건 노력과 의지가 사업장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에 따른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준수(23%)하거나 그 이상을 실행에 옮기는 비율(6%)은 29%에 그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비율(50%)이 타 규모의 사업장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설문결과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100%),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53%)이라고 응답한 것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실행에 잘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도 및 준수도

설문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문, 우편, 이메일 등 공공기관의 전달을 통해서가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으나,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전체 설문결과와는 달리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 및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5인 미만의 사업에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채널(공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과태료, 작업중지)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별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방지와 근로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담당관리하는 부서가 없거나(23%) 위탁(59%)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의 운영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제3자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했을 때의 혜택에 금전적인 혜택(64%)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처벌의 정도에서도 금전적인 제재(41%)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혜택이든 처벌이든 금전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의 성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대부분(94%)은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안전보건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공단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방문(62%)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단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방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향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수혜 후 다음부터 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품목이나 기술지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원서류, 접수 등 신청이 복잡하고 많아서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필요한 부분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신청과정에서의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거나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전보건지원 대상기업과 지원형태와 관련된 설문결과에서는 소액지원(1억원 이하)으로 많은 기업에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오히려 고액지원(1억원 이상)으로 소수 기업에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지원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형태에 대한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정부 및 공공행정기관의 안전보건 사업이 필요하다(88%)고 인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규

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5이상 20인 미만과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안전보건활동이 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지원받은 품목, 항목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중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은 안전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교육 보다는 전문화된 기술지도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받은 후 계획기준에 미비할 경우의 후속조치에서는 지원금 환수와 과태료 부과를 같이 가한다에 대한 의견(4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 했을 경우의 인센티브 수위에 대한 결과에서는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에 대한 의견(4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평가관리 및 처벌과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더불어 규모에 따른 차등화 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중소기업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이해관계자 포럼 개요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문 중 하나인 노사정-전문가 TF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과 함께 실제 사업주를 초청하여 노사정-전문가 사전포럼을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노력의지와 안전보건법규 이해도 및 준수도,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수혜경험 및 문제점, 만족도를 논의하였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노사정-전문가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노사정 전문위원이 참석한 포럼에서 안전으로 활용될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포럼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어려움, 현재 안전보건 노력 정도와 안전보건 강화지원 사업의 경험과 문제점 위주로 토의하였고,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그 이유, 안전보건 강화지원 사업의 경험과 문제점을 공유하였다. 즉, 주요 의견 및 발언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하고, 노사정 위원은 발제, 질의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FGI의 방법과 가까운 포럼으로 진행하였다.

포럼을 주최하기 위해서, 사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안전보건활동 현황과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학계 전문가와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등 4명을 대상으로 포럼개최에 필요한 주요 토의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중소기업 안전보건 노사정-전문가 포럼 주요내용

주제	이슈
사업주의 안전보건 노력 및 의지	• 바쁜 생산 및 사업 활동 • 안전규제 비대상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애로사항	• 어려운 법적 내용 • 과도한 안전보건 기준 및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력 및 애로사항	• 바쁜 생산 및 사업활동 • 낮은 범칙금 • 여력(시간, 인력 등) 없음
안전보건지원사업 이해 및 경험	• 홍보 부족 • 자발적인 지원 어려움 • 생산과 상관없는 용자지원사업 • 실행없는 문제지도 및 교육 • 단편적 지원
안전보건지원사업 문제점 및 필요사업	• 달성요구사항에 대한 부담감 • 상보다는 별 위주의 최종평가 • 생산과 상관없는 용자지원사업 • 실행없는 문제지도 및 교육 • 단편적 지원

포럼 방법으로는 분야의 균형을 위해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학계 전문가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배분과 업종배분을 위해 3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여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고자 하였다. 3차에 걸친 포럼 진행의 일시 및 과정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노사정-전문가 포럼 개최 및 구성

구분	1차 포럼	2차 포럼	3차 포럼
일시	2020.10.16	2020.11.5	2020.11.16
장소	울산	서울	울산
대상지역	부산·양산	서울·경기	울산
업종	기계부품제조업 금속가공업 조선기자재	금형제조업 도금업 도료·도장업	열처리사업 용접업 금형제조업
노동자위원	한국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한국노총 1명
사용자위원	중소기업중앙회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
정부위원	고용노동부 2명	고용노동부 2명	고용노동부 1명
전문가공익위원	부경대학교 2명 (포럼위원장 겸임)	부경대학교 2명 (포럼위원장 겸임)	부경대학교 2명 (포럼위원장 겸임)
중소기업 사업주	4명	4명	4명

앞서 주지했듯이, 본 포럼은 사업장 현장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는 주요 논의 발제를 위주로 하였고, 실제 논의내용 및 발언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IV장의 포럼 주요 논의내용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추후 V장에서 노사정-전문가가 협의한 사업주 안전보건법규 준수향상 및 안전보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2. 포럼 주요 논의내용

1) 안전보건활동 노력 및 의지

1~3차에 걸친 포럼 과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안전한 사업장 운영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길 바라는 사업주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는 생산활동 없이는 기업활동이 없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는 생산과 품질 분야이지만 가급적 생산 및 품질과 관련한 안전 활동은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교육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등¹⁰⁾에서 배포하는 안전교육자료 등에 관심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전보건활동이 주요활동이 아니며, 자발적·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하기 위해 시간이나 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안전한 사업장 운영 노력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해야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식적인 안전수칙은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인력·자본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안전활동 촉구 노력이 어려워지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등한시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 자체적인 노

10) 본 보고서는 법정용어인 안전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이라고 작성하였지만, 실제 중소기업 사업주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포함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이해도 부족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력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 생산활동과 관계된 안전활동에 주로 노력

자체적으로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작업 전 및 작업 중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도지만, 생산활동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에 연계되지 않는다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중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은 결국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이 가장 중요하며, 교육과 훈련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수행의지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장소 부재, 이동시간 부족, 비용증가 등의 어려움을 제안하였다.

2)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규에 대한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준수라기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상식선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안전법규와 관련된 자발적인 조사 및 준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로는 하나 주요 관심사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주 대상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령 의무사항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규제를 받은 경험이 많이 없으며,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이 없지만, 알고 있는 사업주도 생산 및 작업환경 구축을 규칙과 같이 세세하게 수행하기에는 무리라고 제안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사항 파악 어려움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어 규제를 받은 경험이 많이 없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장에 도입한 시도는 대부분 없었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적 내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으며, 자격이나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 부개정과 같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해줬으면 하는 바람¹¹⁾을 나타냈다.

○ 사업등록이나 운영과는 관계없는 법령으로 인지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사업행위를 위한 신고·등록 또는 허가과정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항목은 전혀 없으며, 생산제품납품이나 하청계약 등에 있어서도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아닌 소비자안전 부분과 관련한 품질인증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니 과정으로서의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관련 법규는 사업장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인지한 사례도 나타났다.

○ 근로환경개선보다도 우선되는 다른 법 조항 규제에 따른 어려움

사업장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간이휴게소 및 샤워장 등을 자발

1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미 전부개정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아직 모른다는 점에서 기관과 사업주 모두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현재도 웹페이지에서 검색이 되고 있다). 홍보는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추후 서술한다.

적으로 건축하려고 할 경우, 건축법 등에 대한 행정규제를 받아 제지는 당하였어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제로 이를 통과시켜주는 법적 체계가 없음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개선요소에 대한 조치는 없는 법 또는 다른 법보다 약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별개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수행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작업 전 준비체조, 작업내용파악, 휴식시간 준수 등 간단한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당연히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에 해당하는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조치는 어려운 측면이 따른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주장한 많은 부분은 사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기관에서는 고려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자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고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가져야 한다.

3) 안전보건지원사업 경험 및 만족도

세 차례의 포럼에 참석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업 자체보다는 사업의 행정·운영·홍보 부분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신청과정의 어려움, 일정·시기적 문제, 비용적 문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 및 교육의 질, 제3자(브로커 또는 민간기관)의 사업개입, 지원품목의 제한, 안전보건지원활동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필요한 안전보건지원사업 검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없는 신규사업의 필요성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의 현실화 및 추가구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 안전보건지원사업 혜택 및 만족

안전보건의식이 있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클린사업장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에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이수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을 통한 산업재해보상료를 혜택 지원은 사업내용 자체도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운영도 함께 큰 도움이 된다고 1~3차 포럼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 행정부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현재 재정지원사업 등 필요사업은 대부분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예산이 소모 시 더 이상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이 많아 기존의 지속사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배분과 수혜기업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정기예산의 경우는 체계적인 연간(반기, 분기, 월별 등)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예산의 경우는 적시·적소의 신속한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의 이름만으로는 필요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찾아보려 하더라도 사업주가 본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 자체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제시하였다.

○ 운영부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운영부문에 있어서는 1~3차 포럼에 걸쳐 모두 현장 요구와 맞지 않는

개별품목 단위의 재정지원(특히,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문제 삼았다. 사업장 작업이나 공정이 단순히 작업단위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공정단위로 이루어진 생산현장이 있음에도 개별품목 단위지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¹²⁾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로 함에도 품목 리스트에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신청 후 수령 기간과 품목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실무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수령 기간에 있어서는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고서야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경험도 있다고 하며, 품목비용 역시 등록업체를 이용¹³⁾해야 하고 조달청 가격 기준이 시장가(인터넷 최저가 등)보다 월등히 높아 일부 보존에 대해 혜택이 없다¹⁴⁾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기술지도와 교육과 관련한 민간위탁기관 등의 일부 능력 부족 및 불신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현장 지식이 부족한 민간위탁기관의 일부 기술요원으로 인해 기술지도 및 교육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점과 매년 동일한 민간위탁 안전보건교육 및 지도를 개선사항으로 제시¹⁵⁾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등을 빙자¹⁶⁾해 교육과 지도와 함께 다른 영

12) 생산관리에서 작업단위 생산을 job shop, 공정단위 생산을 flow shop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단일작업이 최종 제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러 단일작업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서는 공정단위 연속작업에 대해서 공정 자체에 대한 신청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다.

13) 2020년 클린사업장 지원사업부터 등록업체사용은 제외되었다.

14) 예를 들어, 3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할 때, 인터넷 최저가는 100만 원이고 가격 기준이 150만 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실제로 105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5) 민간위탁지원사업(급고)은 안전관리전문기관 B등급 이상 기관에게 주어지며, 1명당 30개소 제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다만, 1개소당 해당 급여가 적어, 가급적 많은 사업개소를 돌아다니게 되어 기술지도 및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16) 일부 장비판매업체가 클린사업장 지원에 대해 알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이 교육 및 지도 중의 영업활동 부분은 지정기관인지, 아니면 비

업활동을 하는 등 사업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홍보부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홍보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 강화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산활동에 바쁜 특성 때문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자료, 안전보건지원사업, 근로자 건강센터 활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공해주거나 혹은 사업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 안전보건지원사업 중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예방요율 할인 지원(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사업에 대해서도 포럼에서 알고 갈 정도로 유효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아예 무지한 경우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역할홍보와 함께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지적자(superviser)가 아닌 지원자(supporter)로의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요역할이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개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로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나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목적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지원에 있듯이 보다 지원자의 역할을 보다 홍보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와의 관계개선도 요구하였다.

지정민간기관에서 불법으로 행하는 사항인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3. 소결

중소기업 안전보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결과 주요 내용은 결국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려움이나 복잡함으로 개별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안전보건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만족도도 있으나, 사업 자체보다는 행정, 운영, 홍보 측면에서 사업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전보건활동 노력 및 의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 ① 안전한 사업장 운영 노력
- ② 생산활동과 관계된 안전활동에 주로 노력
- ③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중시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사항 파악 어려움
- ② 사업등록이나 운영과는 관계없는 법령으로 인지
- ③ 근로환경개선보다도 우선되는 다른 법조항 규제에 따른 어려움
- ④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별개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수행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는 사업자체보다는 행정·운영·홍보의 비효율성 문제를 다루었다.

- ① 안전보건지원사업 혜택 및 만족

- ② 행정부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 ③ 운영부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 ④ 홍보부문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V.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제언

1. 중소기업 안전보건 실태 및 문제점

지금까지 수행한 중소기업 특징 조사, 안전보건지원사업 성과분석, 설문조사 분석, 포럼 분석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핵심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태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포럼을 위해 사용할 중소기업 안전보건 정책방향 및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표 5-1> 중소기업 안전보건 실태 및 문제점 정리

조사유형	주요 도출 이슈
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조사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강화 필요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 이상 재해 발생 ○ 기간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인 뿌리기업 위주의 안전보건강화지원책 마련 - 선박건조 및 수리업, 도금업, 금속제련업, 도자기·기타요업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에서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2018년 기준)이 높게 도출됨
현행 안전보건지원사업 성과분석	○ 중소기업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보건지원사업 마련 필요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은 5~9인 사업장에서 효과가 극대화됨

설문조사 및 분석	○ 재정부족, 인력부족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불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정보전달 공식채널 미비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 및 언론 등의 홍보로 알게 된 경우가 많음 ○ 안전관리전문기관(위탁)에 의존 ○ 금전적인 재정지원 및 차별조항에 민감 ○ 필요품목신청에 대한 현실화 필요 ○ 안전보건지원사업 신청 간소화 필요 ○ 기업규모에 따른 재정지원규모 차별화 필요 -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고액지원으로 소수 기업 지원 의견이 67%로 나타남 ○ 안전교육 및 전문화된 기술지도 활성화 필요 ○ 지원사업에 대해 차기 지원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연계를 위한 단계적 사업 고려
포럼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살펴볼 유인정책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로는 생산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개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주로 수립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을 기회나 적용할 상황이 없음 ○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내용 자체보다도 행정·운영·홍보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행정) 연간계획이 없는 등 신청일정 체계가 없음 - (행정) 필요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움 - (운영) 품목이 고정적이고 단위제품 위주임 - (운영) 신청가격기준이 시장가보다 높음 - (운영) 기술요원의 수준 부족 - (홍보)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시기나 내용 등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홍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소통이 어려움

2.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방안

1) 안전보건지원사업 강화 필요성

현행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정성 평가, 중소기업 사업주 설문조사, 노사정-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원사업에 대해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고 산업재해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정부의 안전보건활동지원 노력을 경험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도 언급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다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적합한 사업지원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규 인지 촉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수준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확대 및 개선, 신규사업개발 등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족도가 높은 현행지원사업은 유지 혹은 확대하고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인지되는 사업은 개선하여 현장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 셋째,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와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을 위한 운영상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용하고 효과적이더라도, 실제 행정·운영·홍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책과 사업의 현장 적용성 및 성과 효용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정책과 사업개편,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정부지원을 발판으로 초기에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사업혜택을 받으면서, 그 경험을 궁극적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 자율안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방안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화

설문조사 및 포럼 과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계획서 제출의 교육 만족도도 높았으며, 산업재해보험요율 할인도 부가적으로 큰 혜택이었다고 논의하였다. 특히,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 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소개와 강의를 받은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의견을 모았고, 주변에 추천한 경우도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업주 등의 의무 또는 안전보건교육 법조항에 중소기업 규모(특히, 사업주이면서 근로자 성격이 강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화하고 산업재해예방요율제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¹⁷⁾. 즉, 안전보건교육 등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외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¹⁸⁾을 법정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규모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사업자등록 시 안전보건활동 계획 포함

중소기업을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있어 신고·등록·허가단계에 사업장 현황에 업종·사업장·소비세·과세 등과 관련한 부분만 있

17) 대부분의 제조업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자를 맡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주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18)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동시에 일을 하는 근로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외 조항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으며, 사업장의 시설안전이나 안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위험업종 여부나 기업규모에 따라 창업이나 사업인수인계과정에서 사용기계기구안전(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이나 운영관리(보호구,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물질 검사) 등 안전보건계획 수립여부를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사업주가 창업하고 업종을 등록하면서 본 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위험이나 개선 방향, 교육내용 등을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사업활동에 안전보건의 중요하다는 인식을 처음부터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 등 창업 및 사업등록 활동에 직접적인 법적규제 권한이 있는 부처 또는 지방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책임기관과 행정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조례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절차를 포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된다.

유사한 사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규제되는 다중이용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개시할 때, 면적 등 규모에 따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소화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를 해당 소방청에 제출하고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여 초기부터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식을 가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3) 사업주와 정부기관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긴밀한 연계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중 하나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알려줄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보건지원사업에 대해 시기에 맞춰 소개받을 채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부 등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공문이나 방문 등으로 최신 법규 정보나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 공문을 등록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개선효과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고 설명하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직접 방문(찾아가는 서비스)은 인력이 부족하고 실제 기업과의 친밀성에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관리, 인증, 검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위탁기관이다. 한 달에 2회 직접 방문이 원칙으로 이미 여러 차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방문하여 대행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에 적합하다. 따라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중소기업 방문 시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이나 그 기업에 적합한 안전보건지원사업 추천 및 설명 업무를 시행하면 사업주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고려된다. 앞서, 신뢰성이 낮은 외부기관이 방문하여 영업활동이나 브로커 활동을 하는 부분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적발, 감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지도, 교육지도에 더해 법규와 지원사업까지 포괄하는 교육지도를 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¹⁹⁾.

19)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 평가함에 따라 관련 항목을 넣으면서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이 가중되는 만큼 현재 적다고 알려진 위탁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 맞춤형 자료 제공 및 배포

일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게시자료인 동영상 자료 및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일반안전보건자료는 물론 프레스, 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 및 방호지침 등 구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자료도 안전교육이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자발적인 자료 수집이나 활용이 어렵고, 위와 같이 자율적으로 찾아보는 기업도 산업안전보건법규 내용이나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업종 혹은 사용설비에 따라 맞춤형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는 자료들을 편집하여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서들을 발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대행기관에게 필요한 법규 내용이나 시기에 맞는 알림 사항들을 지침서 또는 매뉴얼로 제작하게 하여 사업현장에 배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5)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집중점검 및 처벌사례 전파

중소기업은 생계형 사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형사처벌, 과태료 처벌 등의 사례가 적다는 것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인지도가 낮고 법규준수를 무시한다는 의견도 설문과 포럼 과정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로 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을 집중단속기간을 매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것도 고려된다. 이 가운데 소수의

안전보건 불량사업장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벌을 확실히하고, 이를 중소기업에게 공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언론에 전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정기기간을 두어, 시설물 안전의식 개선에 대한 국민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소기업 산업안전강화 주간 등을 두어 일제 집중점검 기간을 두는 정책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방안

(1) 기존사업 확대 및 개선

①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다양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감면 및 할인 혜택에 대해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인다. 현재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후 안전보건계획서 제출(1년간 10% 할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수행(3년 인정, 20% 할인), 근로시간단축(10% 할인) 등의 산재예방요율 적용 활동²⁰⁾이 있지만,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활동과 더불어 통합 또는 확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계획서를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등과 연계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활동 위주로 산재예방요율제를 연계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업주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노력에 따른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1항의 1에서 3호.

장기간 무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요율 할인 사업도 일부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개별실적요율제로 산업재해 발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요율을 감면하고도 있는 사항이지만, 업종별로 기준년도 3년을 일괄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장 규모,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많은 동기부여가 되리라 기대된다.

② 단위제품이 공정/시스템 제품 위주 지원

주요 재정지원사업인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청품목에 대해서 단위제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생산시스템의 대부분은 연속적인 공정을 지니므로, 선후 공정까지 살펴보아 신청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후 공정분석과 함께 다수의 품목과 제반 시설(품목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부품들)까지, 즉, 품목에 없더라도 품목의 제반비 항목(품목비용의 120% 책정 등)을 따로 두어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청과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승인을 하면 비용지원을 해주고, 사용기간 이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감사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③ 품목 자율화 및 유연화

클린사업장 지원의 경우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에 대한 기초 제한을 푸는 사업확대도 일부 요구되었다. 즉, 신청항목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사업주가 증명만 한다면, 품목 구매나 사용 등 모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이후 엄격한 심사와

감사로 부적절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여 품목사용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④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시설 보증사업

현행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의 기존의 금리지원, 장기상환 기간의 혜택을 주던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안전시설투자에 보증서를 작성해주는 보증제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안전과 생산과 관련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신규사업 개발

① 기간산업(뿌리기업)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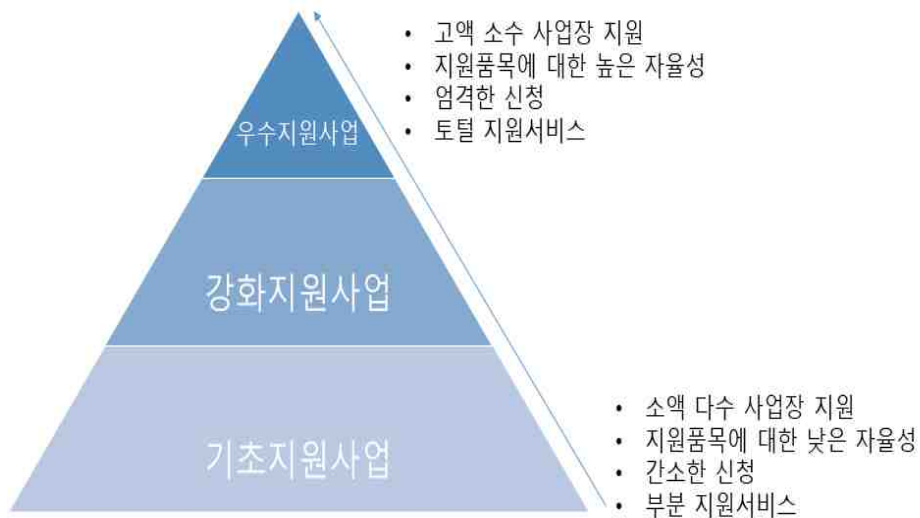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업종별 재해율과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 및 수리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도금업, 도자기·기타요업제품, 금속제련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 등 동력산업, 금속산업, 화학공업인 기간산업의 중소기업, 즉, 뿌리기업²¹⁾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뿌리기업은 4M 측면에서, 프레스, 거푸집 등 거대설비를 사용하는 기계(Machine) 측면의 위험성과 화학원료, 석탄·석유, 금속용융 등 원재료를 고열로 처리하는 재료(Media) 측면의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뿌리산업과 관련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

21) 여기서는 기간산업 중 중소기업으로서,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6가지 공정기술로 정의되는 뿌리기술을 활용한 뿌리기업을 의미한다(「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통계청 KOSIS 뿌리산업실태조사 : 종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뿌리기업의 사업체 수는 32,606개소이며, 정규직은 523,65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 대비 0.9%, 종사자 수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다.

과 연계성이 높아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임에도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구조, 생산인력의 고령화와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 열악한 산업환경으로 인하여 자력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안전보건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실제로 포럼 과정에서도 프레스, 용접기, 주물, 거푸집, 용융로 등 설비와 금속, 화학원료 등 재료 측면의 위험성이 많이 언급됐다는 점에서도 뿌리산업의 안전보건활동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화학분야와 서비스분야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기술단위로 내려가면 기간산업인 뿌리기술 활용 기업들의 안전보건문제가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및 기술지도 사업이 신규로 개설될 필요가 있다.

② 단계적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현재 기업 규모 및 수준이 사업마다 모두 다르며, 대부분 50명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부재로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효과에서 클린사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용자지원사업은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석했다시피, 기업 규모와 특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사업이라도 안전보건강화 노력 및 의지 수준에 따라 비용과 품목 자율화 등을 조절하는 [그림 5-1]과 같은 기초지원사업, 강화지원사업, 우수지원사업으로 구성된 단계적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이 요구된다.



[그림 5-1] 단계별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 기초지원사업 : 기존의 클린사업장 재정지원 사업같이 운영하여, 소액으로 다수사업장 지원, 지원품목항목 내에서 부분지원하도록 하는 반면, 간소한 신청으로 일회성으로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강화지원사업 : 기초지원사업의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품목의 자율화 정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품목 또는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편
- 우수지원사업 : 기초 또는 강화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서, 안전보건노력 의지가 크고 장기적인 안전개선계획을 지닌 안전혁신기업에게 재정지원을 고액으로 지원하고, 지원품목에 대해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토탈서비스*를 지원. 엄격한 신청과정과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모범기업을 육성. 이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우수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고픈 동기부여, 관심, 그리고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생산설비용자, 작업환경개선, 안전관리 인건비 지원, 법적규제조
 언 등 사실상 전범위라는 점에서 사업장 전범위를 개선시키는 사업
 (대규모 예산편성, 생산+안전+교육+법 등 필요활동 모두 지원)

③ 수급업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인력지원사업

도급-수급 관계에서 수급업체에 있는 중소기업 역시 지원대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특별한 지원없이 수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키도록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사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급업체는 인력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요구된다. 현재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4)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방안

(1)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표준 정립

현재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문제는 시스템 표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의 정의, 분류, 대상 사업 등이 모두 다른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수요자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 규모 또는 업종을 토대로 사업을 찾아볼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 지원사업들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시스템이 행정-운영-홍보 기능 표준이 정립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해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2) 행정상의 사업시스템 표준 개선

① 연간 일정계획 표준화

안전보건지원사업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예산소요 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대한 연간 일정계획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많고 수시신청을 받을 사업의 경우는 월별 신청(월초 또는 월말)을 받아 혜택의 기회를 넓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표준을 정립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주기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장 중심의 품목인정 검사

지원품목 유연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해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품목 인정 검사를 수행할 행정인력과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품목이라는 것은 정의와 용도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완벽하게 적합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신청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③ 수요자 중심 사업 추천서비스

중소기업 사업주의 기업 규모(근로자 수, 매출액 등), 업종, 지원 내용 키워드 등 현황과 필요내용을 위주로 해당되는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 시스템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 자체를 알기 어려워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홈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하여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을 별도로 소개하여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확인하는 추천행정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3) 운영 상의 사업시스템 표준 개선

① 부적정 기업 적발 및 신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 표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필요품목지원이나 민간위탁사업 과정에 있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제외한 기관 방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여 사업주가 피해를 입거나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마크 등을 발급하여 민간위탁사업 기관에 배포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빙자한 영업활동 역시 신고제도를 받아 피해가 없도록 신뢰성 확보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② 지원품목 단가 조정 표준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품목의 등록단가가 시장가보다 너무 높아 지원에 따른 비용 절감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등록단가보다 낮을 경우,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 등 계약조건을 다양화하여 정부재원 효율성도 달성하고 사업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 표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지원사업 수혜 검토 및 감사, 성과평가 과정 표준화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지원사업을 받은 후, 수혜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평가, 감사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부에서 최종감사까지 진행하여 수혜적격/비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사항 등을 보고받거나 조사하는 과정 등이 부재하다. 따라서 검토 및 감사, 성과평가 과정을 표준화하여 운영 시스템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기술요원 능력향상, 업무확대, 정당한 보상체계 표준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속한 기술요원들의 능력향상과 관련한 운영 표준과 함께 앞서 언급했던 기술요원들의 업무확대(법규교육, 안전보건지원사업 추천 등)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및 지도 콘텐츠에 대한 직무표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를 육성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지도교육을 하기위한 강의법 등 교육내용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등에 포함하여 시스템 표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향상 및 업무확대는 정당한 보상체계가 주어져야 하며, 기술요원 인건비 책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표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4) 홍보 상의 사업시스템 표준 개선

현재 안전보건지원사업 등의 대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시스템 표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시기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소개받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공문, 이메일 등 기관-기업 간 정보전달 외에도 TV·라디오를 통한 언론홍보, 우수사업사례 홍보 등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교류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이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거나 지원기관이 고용노동부인지 중소기업벤처부인지,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인지도 확인 없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모두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것보다도 보다 중소기업 사업장을 개선시키고 안전성과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사업주-정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많은 지원사업을 신청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기관 역할 조정 및 협력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주체 및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원의 역할을,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지원을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지원사업은 생산-품질-안전-근로자 건강 등 사실상 중소기업벤처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역할과 범위를 정의하고 서로 연계하여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소요하는 계획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토털서비스의 경우,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가 통합사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도 적합한 방안이라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한 경우, 다른 법에서 안전보건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산업안전보

건법의 행정규칙이나 지방기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주가 간이휴게실이나 샤워실 등 근로자 건강 및 복지를 위한 활동들이 다른 건축법이나 지방기관 조례 등으로 인해 제지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안전보건지원수요통계조사 시행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수준과 안전보건지원 경험 및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살펴봄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 수요를 발견하였다. 현장 수요 중심의 요구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촉진방안과 안전보건지원사업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 중심의 정책개발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산업별·규모별로 안전보건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회성이고 단발성인 경사노위의 위원회 활동이나 노사정-전문가 포럼 등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다. 법적 또는 고시로 정기적인 “안전보건지원수요통계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고용노동부 고유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또는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시행한다면, 지속적인 안전보건 이슈도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제약사항

현재 앞서 제시한 내용은 사업주 설문조사와 포럼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주 위주의 강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실제 적용하기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여러 제약사항이 따른다. 즉, 사업주만의 의견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개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노사정 포럼을 통해 노동자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려할만한 제약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제시한 다양한 강화 및 개선방안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선결요소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미리 살펴보아 제약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율안전개선노력 의지 촉구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자율개선노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지키고 관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당연히 지키고 해야할 업무인 법규내용 및 안전활동임에도 정부가 이를 잘 지킬 경우 혜택을 주는 유인책이다. 앞서 홍보부족이라는 측면이 사업시스템 개선으로 제시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의무이다. 즉, 중소기업은 언제까지고 정부의 지원받기만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인 안전개선활동을 미루게 된다면, 지속적인 자율안전을 기대하는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안전활동을 정부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안전이 조화를 이루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재정혜택 후, 재정을 받은 활동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활동 및 문화로 이

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이행사업점검 및 감독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정직한 지원사업이행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을 한다하여도, 중소기업에게 계속 지원만 하고 성과를 점검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자율개선노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중소기업 사업주들 역시 제시한 여러 강화 또는 개선책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안전활동수준 향상을 저해한다거나 단순히 재정지원만 받고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정부는 지원이 아닌 규제와 처벌 위주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재정지원품목을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주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안전보건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확인하거나 안전활동을 지속이행하는 등 안전보건활동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장 안전보건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먼저 갖추는 것이 선행조건이 될 필요가 있다.

2) 자율안전활동을 위한 재정확보 및 투자계획 활성화

중소기업 사업주는 안전보건지원에 있어 재정지원사업이 가장 요구되고 민감한 사업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할인, 보증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의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설문이나 포럼 시 우려되는 점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와 같은 정책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촉진하는 활동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안전활동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란 것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이 지원사업의 혜택들을 생산활동이나 복지수단으로만 인식할 뿐, 지속적인 안전활동 추구 노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정부의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의 혜택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이 활동을 자율적으로 개별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활동을 확보하고 노력할 지에 대한 점검 및 감독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제시한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예산투자를 안전이 아닌 생산이나 다른 프로젝트 등 이질적인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생산활동과 안전활동이 완전히 이질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나 다른 브로커를 통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받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사업과 같은 경우,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고 이를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 예산을 안전에만 활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생산이나 인력투자에만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하는 활동들은 안전보건강화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는 재정지원 사업을 받은 후, 자율안전활동을 위한 안전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더라도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안전과 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설비투자나 작업환경개선, 연구개발활동들을 포함한 안전개선투자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즉, 정부는 사업주에게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지원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는 재정지원을 통한 안전보건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활동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협조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정립

1) 노동자의 역할 정립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는 국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설비보다는 설비숙련공과 같이 근로자 위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자본부족, 인력부족, 불안정한 수급으로 작업관리나 생산관리, 일정관리 등이 어려워 사실상 안전까지 확보하면서 생산활동을 하기에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안전보건지원을 하지만 사실상 법정선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생산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기본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준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자율안전보건활동이라는 것이 사업주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표준 및 절차준수, 근로자 간 의사소통, 주변 정리, 정돈, 청소 등부터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기준준수와 조치 협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항이다. 또한, 중간관리자나 사업주 간의 소통에 적극적이고 상호합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서로 합의하는 공생 체제를 같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자의 역할 정립

사용자인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을 제공하고 예방과 사고 시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성 최대화라는 목표에 따라 안전성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규에 포함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관리, 작업환경개선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주들의 자본부족과 인력부족을 이해하기에 여러 다양한 안전보건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을 받아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작업표준이나 절차 등을 포함한 약식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방활동을 점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역할 정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제·개정하고 시행하는 관계자로, 사업주들에게 법규를 준수시키기 위해 행정지원과 처벌을 수행한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강화와 안전보건지원사업 제공을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유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법규 미준수 시 처벌과 법규 준수 촉진을 위한 지원을 동시에 하기 위함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데 현실적이 않으며, 사업주 스스로도 생산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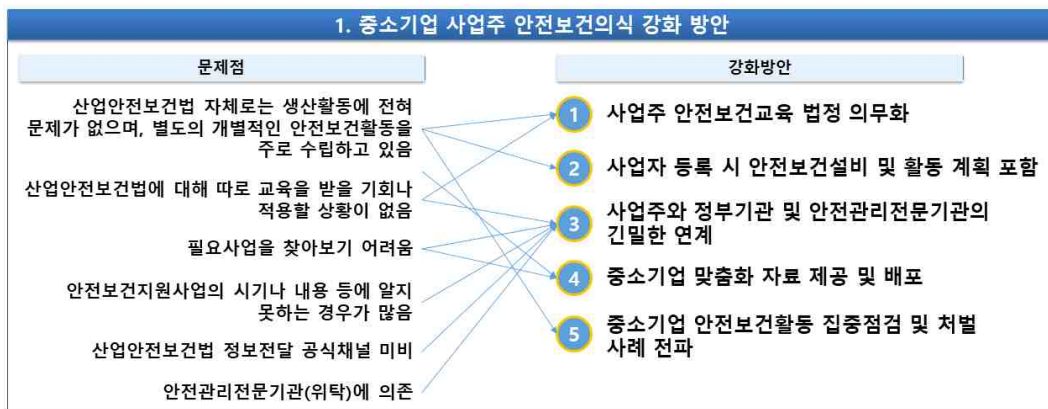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첫째, 행정지원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예를 들어, 50인 미만 안전관리자 미선임)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안전보건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조사-기획-시행-점검-감사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표준화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수요조사는 산업별로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만 있을 뿐, 사업주들의 안전보건지원 수요조사 관련한 통계 및 정책조사활동이 없다. 산업재해통계조사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통계조사이고,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가 현재 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라고 한다면, 수요조사는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사업주들이 혹은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수집·분석방법으로 국가 예방안전활동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기획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개선 또는 신규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시행·점검하는 과정을 정책화하고 감사하는 과정까지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벌책으로서, 중소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처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파하는, 행정규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시 과태료를 집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작업중지, 형사처벌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처벌 후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계획 등을 확인받아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후속조치도 진행되어야만 정부의 행정규제 역할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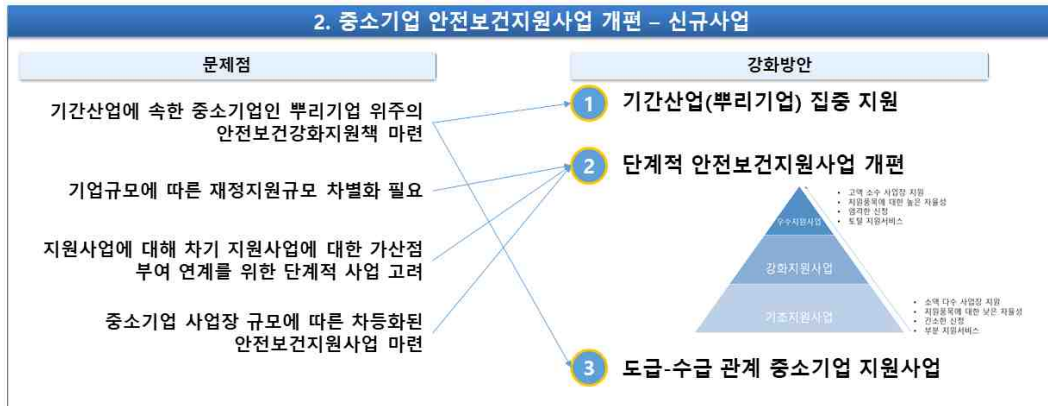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통계분석, 현행 안전보건지원사업 성과 분석,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설문조사, 노사정-전문가 및 중소기업 사업주 포럼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방안([그림 5-2]), 안전보건지원사업개편(안)([그림 5-3], [그림 5-4],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그림 5-5])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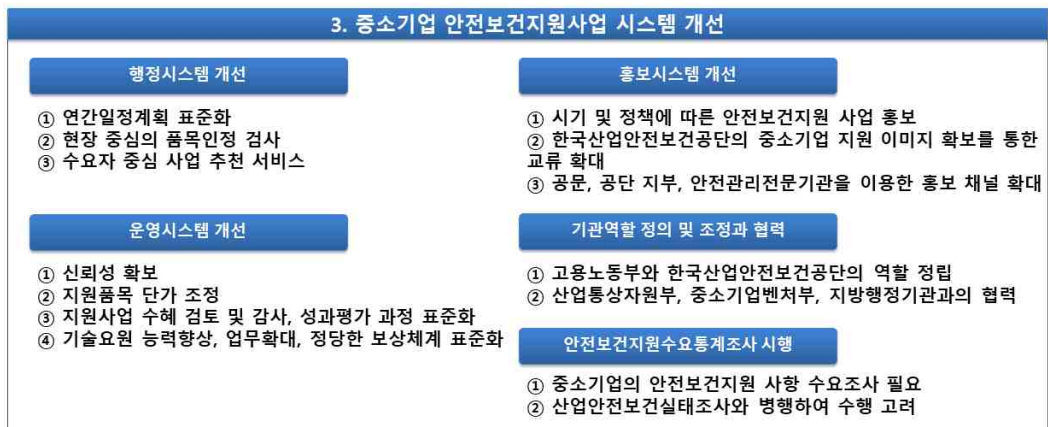
[그림 5-2]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문제점 및 강화방안



[그림 5-3]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안) - 기존사업 개선 및 확대



[그림 5-4]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안) - 신규사업



[그림 5-5]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안)

중소기업은 생산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기업유형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위험성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제약점과 노-사-정의 역할 정립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VI. 결론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 및 기술혁신활동에 따른 경제성장은 국가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활발한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으로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면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거나,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며 상생협력관계를 맺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재정적·인력적으로 불안정하며, 경제환경과 정부정책변동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산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버티기 힘든 재정상황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정부정책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 재무건전성 보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나 보증기금사업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국가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활동 뒷면에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체라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민첩한 기술개발, 납품일정관리, 유통망관리, 작업일정관리 등 생산활동투자만으로도 버거워 안전에 소홀해지는 전형적 특징때문이기도 하며,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인 특성도 지님에 따라 인력구조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재정지원·기술컨설팅지도 등의 안전정책으로 중소기업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정부지원 아래 초기생산활동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방법 및 노하우를 배우고, 기업성장 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자율화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기업에 도입하는 것을 기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재해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주로 50인 미만의 제조업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위해, (1) 현행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2)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노력의지 및 노력,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도 및 준수도, 안전보건지원사업 경험 및 애로사항, 필요성을 분석한 뒤, (3) 중소기업 안전보건 이해관계자인 노사정-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법규 강화와 안전보건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화, (2) 사업자등록 시 안전보건 활동 계획 포함, (3) 사업주와 정부기관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긴밀한 연계, (4) 중소기업 맞춤형 자료 제공 및 배포, (5)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집중점검 및 처벌사례 전파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을 위해 (1) 기존사업을 확대 및 개선하는 방법과 (2)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접근으로 (1) 안전보건지원사업의 행정·운영·홍보시스템의 표준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방안과 (2) 기관 역할 조정 및 협력, (3) 안전보건지원수요통계조사 정기적 시행을 제시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과 체계적인 사업시스템 표준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안전보건지원사업의 혜택으로 사업장 안전성을 개선하고 생산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연구분석, 설문조사,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에 대한 VOC를 얻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검증을 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였지만, 제조업의 구체적인 업종별로 나누어서 성과평가를 했다는 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효과 등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실태조사 위주로 재정지원사업 단위가 아닌 재정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품목지원, 기술지원 등)을 위주로,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작업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노사정 위원과 학계 전문가, 중소기업 사업주들과의 대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정리하여 필요사업을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제시한 사업에 대한 가능성 또는 적정성 확인 및 검증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분석해야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제시한 중소기업 사업주의식강화와 안전보건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체계적인 사업과 그 사업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보고서(2018.7.-2020.3.);2020.
- 고용노동부,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2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
석;2017.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태와 역량 평가;2009.
- 우지환, 김영준. 한국 중소기업의 혁신 저해 요인이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산화기술학회논문지 2018;19(8):115-126.
- 최종민.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특성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018;56(2):213-248.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바라보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2014.
- 한국노동연구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
부;2014.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성재해예방 사업 평가;2016.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 분
석;2015.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예방 성과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모
색;201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고서 자료;2019.
- 한국지식경영연구원, 산재기금 재정투자에 따른 산재예방사업 효과분
석;2010.

Suh, Y. and Kim, M.-S. Internationally leading SMEs vs. Internationalized SMEs: Evidence of success factors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014;23(1):115-129.

부 록

가. 설문조사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안전보건강화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항목은 20개 정도로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를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아래 시행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서용윤 교수(010-1234-5678, 010-1234-5678)

기본정보

1. 현재 해당하는 제조산업은 어디십니까?

- ① 기계제조업(기계부품제조 등) ② 식품제조업
 ③ 인쇄업 ④ 금속제조업(주물제조, 금형 등)
 ⑤ 비금속제조업(비철금속, 유리제조 등)
 ⑥ 전자/컴퓨터 제조업
 ⑦ 섬유/화학제조업(플라스틱, 도장 등)
 ⑧ 기타 _____

2. 현재 생산하는 주요물품 또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십니까?

3. 현재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인 미만 ② 5인 이상 20인 미만 ③ 20인 이상 50인 미만
 ④ 50인 이상 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⑥ 300인 이상

4. 최근 사업장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① 1억 미만 ② 1억 이상 3억 미만 ③ 3억 이상 10억 미만
 ④ 10억 이상 50억 미만 ⑤ 50억 이상 100억 미만 ⑥ 100억 이상

5. 현재 사업장 주요지역(소속 시 단위)은 어디십니까? (예시: 수원시, 안산시, 울산시, 창원시 등)

1.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

1.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질문 1-1로) ②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질문 1-2로)

1-1

1-1(a).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② 안전보건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③ 사고 발생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산재요율 상승, 사업장 재해율 상승, 과태료, 작업중지 등)
 ④ 기업의 이미지 제고 때문에
 ⑤ 과거 경험상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⑥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좋은 사례를 수차례 보거나 들어서
 ⑦ 기타 ()

1-1(b).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를 위해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 보다 더 많은 사항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은 실행에 옮기고 있다.
 ④ 안전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은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다.
 ⑤ 모르겠다.
 ⑥ 기타 ()

1-2

1-2(a).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산활동이 바빠서
- ② 법적 준수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 ③ 인력이 부족해서
- ④ 재정이 부족해서
- 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 ⑥ 과거 경험상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⑦ 동종 및 유사 업종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들 관심이 없어서
- ⑧ 기타 ()

1-2(b). 사업장 운영에서 안전보건노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사업장 컨설팅 및 점검 등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만 하고 있다.
- ② 동종 및 유사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만 하고 있다.
- ③ 사업장 특성상 자주 점검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 ④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⑤ 기타 ()

2.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세 가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 생산관리 ☐ 품질관리 ☐ 일정관리 ☐ 안전관리
- ☐ 기술개발 ☐ 인력관리 ☐ 거래처(협력사) 관리 ☐ 회계관리
- ☐ 기타 ()

3.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생산관리 ☐ 품질관리 ☐ 일정관리 ☐ 기술개발
- ☐ 인력관리 ☐ 거래처(협력사) 관리 ☐ 회계관리
- ☐ 기타 ()

⑨ 기타()

1-2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 자체가 없다.
- ② 관심은 있으나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 ③ 도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귀찮고 신경 쓸 일만 많아 질 것 같아서
- ④ 기타 ()

III.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도

1.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업장에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질문 1-1로)
- ② 그렇지 않다. (질문 1-2로)

1-1

1-1(a)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요하고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② 과거 경험을 통해 안전 및 보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 ③ 산업안전보건법 불이행으로 인한 각종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 ④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생산 및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⑤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 ⑥ 기타 ()

1-1(b)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로 전담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 ① 위탁을 주고 있다.
- ② 직원은 있으나 부서는 없다.
- ③ 부서는 있으나 전담직원은 없다.
- ④ 모두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1-1(c)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잘 하여, 우수기업지원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떤 혜택을 원하십니까?

- ① 저금리 융자
- ②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 ③ 안전관리 인건비 지원
- ④ 산업재해보상료율 감액
- ⑤ 기타 ()

1-2

1-2(a)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 자체가 없다.
- ② 법 자체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 ③ 법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 ④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 ⑤ 동종 및 유사업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 ⑥ 법을 준수하다 보면 오히려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 ⑦ 법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기타 ()

1-2(b)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못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 정도일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현행 보다 많은 금액의 과태료
- ② 현행 보다 많은 형량의 관련자 징역형
- ③ 특정기간 영업 정지
- ④ 특정기간 안전감독관리 강제진단
- ⑤ 기타 ()

IV. 안전보건지원사업 이해 및 경험

1.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클린사업장, 융자 등)을 알고 있으십니까?

- ① 알지 못한다. (질문 2-1로) ② 알고 있다. (질문 2-2로)

2-1.

2-1(a).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활동지원 등 정부와 기관의 지원사업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공문, 우편, 이메일 등 공공기관의 전달
 ② 관계자(고용노동부, 관청,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기관 등)의 직접 방문
 ③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언론 등 홍보
 ④ 사업주 혹은 근로자 지인을 통한 입소문
 ⑤ 지원사업 민간 중개자
 ⑥ 기타 ()

2-1(b). 지원사업을 미리 알았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으나 무엇이 필요할지 모를 것 같다.
 ③ 있으며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2-2(a). 안전보건지원활동 사업을 알게 된 경위나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부기관의 공문 등 ② 공단 또는 안전관리기관의 방문
 ③ 주변 사업주 지인 ④ 중개자
 ⑤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언론 등 홍보

2-2(b).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위험성평가인정, 교육,

① 기업 재정성이 부족한 기업에게 재정지원 형태로

- ② 안전보건활동이 처음인 기업에게 재정 및 지도지원 형태로
 ③ 안전보건활동을 시도했으나 미진한 기업의 재정 및 개선 형태로
 ④ 안전보건활동이 훌륭한 기업의 인센티브 형태로
 ⑤ 기타 ()

4. 안전보건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액지원(1억원 이하)으로 많은 기업에게
 ② 고액지원(1억원 이상)으로 소수 기업에게
 ③ 기타 ()

V. 안전보건지원 애로사항 및 필요사업

1. 정부 및 공공행정기관의 안전보건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중소기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보건활동이 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활동을 잘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③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⑤ 지원받은 품목·항목(현금, 현물, 인력 등)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⑥ 기타 ()

3.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중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설비교육 ☐ 안전검사 및 진단 ☐ 안전교육 ☐ 작업환경 진단
☐ 기타()

4. 안전보건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중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ABSTRACT

Study on Enhancing Capabilit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e business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Es is investigated in terms of strategic concept and economic performance. Second, the effort and intent of SMEs' owners is investigated. Finally, the business is improved and newly developed to make SMEs' owners comply with the law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o provide SMEs with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 survey, and forum. First, we conduct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olicy and business performance of government and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Es. Second, the questionnaire survey i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effor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SMEs' owners, experience on

business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business required by SMEs' owners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ult

We propose alternatives and solutions to enhanc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Es. First, awareness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SMEs' owners should be improved by supporting education, planning, and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KOSHA, and institute on safety management. Second, the business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Es is modified by expanding prior business and developing new businesses. Finally, the system of providing the business appropriately is ameliorated in terms of administration, operation, and promotion of business for supporting activiti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SMEs.

Keywor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nhancement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장성록 (교 수, 공학박사, 부경대학교)

연 구 원 : 서용윤 (교 수, 공학박사, 부경대학교)

이종빈 (전임연구원, 공학박사, 부경대학교)

강성식 (보조원, 부경대학교)

정인재 (보조원, 부경대학교)

연구상대역 : 박장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연 구 기 간〉〉

2020. 9. 15 ~ 2020. 11. 3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0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
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방안 마련 연구

2020-산업안전보건연구원-858

발 행 일: 2020년 11월 30일

발 행 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고재철

연구책임자: 부경대학교 장성록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052) 703-0846

F A X: (052) 703-0334

Homepage: <http://oshri.kosha.or.kr>
